

## 머릿말

저의 공탁법 기본서는 법원공무원교육원 실무교재를 토대로 출발하였습니다. 그 후 2022. 4. 법원행정처에서 공탁실무 편람이 출간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2022년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가 이미 출간된 상태라서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던 관계로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저의 교재에 반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교재 내용이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지엽적인 부분까지 수록된 경향이 있었고 교재 분량도 상당부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형사공탁 제정 등 크고 작은 공탁관련 법령과 예규 및 선례 등이 추가되면서 교재분량이 조금더 늘어나서 2025년 교재기준 366페이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중복되거나 지엽적인 부분 등을 정리할 필요를 느껴 오던 중, 이제는 2022. 4. 공탁실무 편람이 출간된지도 3년이 지나 어느정도 법원공무원교육원 실무교재에도 반영이 되었을 것 같고, 법원공무원교육원 실무교재 내용도 매년 업그레이드 되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래 공탁관련 개정사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금년 2025년 법원공무원교육원교재를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참고해서 새롭게 교재를 출간한다는 마음으로 교재를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공탁부분은 종전 예규와 형사공탁 Q&A 내용을 원문대로 중복해서 수록하던 방식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를 참고해서 해당부분 부분마다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중복되었던 부분을 정리하였고, 담보공탁과 집행공탁 이하의 각론 부분은 아예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를 전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대폭 정리하였습니다. 그결과 한편으로는 최근까지 추가된 선례는 물론 최근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정예규(2025. 10. 21. 시행) ” 까지 반영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교재분량을 종전보다 50-60여 페이지 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교재 수록내용은 거의 전면 개정인 상태라 분량이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서울법학원 홈페이지 지 1차 자료실에 추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시 여러모로 배려하고 준비해주시는 서울법학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늘 감사드리고,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출간을 해주시고 정성스럽게 편집은 물론 교정까지 도와주신 박문각 노일구 부장님과 김민정 주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재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서울법학원 홈페이지(www. seoulsla.com)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정부의 바른법무사사무소에서

편저자 이천교법무사

\*\*\* 25 페이지

원인사실에 공통성이 있는 경우(형사사건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주소지가 모두 같은 공탁소 소재지로 되어 있는 경우의 손해배상공탁 등)에는 1통의 공탁서를 작성·제출하여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25호). 이를 통상 일괄공탁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동일한 공탁원인사실에 의한 경우라도 공탁물의 종류가 다르거나 일부는 변제공탁, 일부는 집행공탁과 같이 공탁의 성질이 다를 때에는 별도로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적차에 의하여 하는 호환공탁은 인정된다.

- ③ 우편에 의한 공탁신청은 할 수 없다(공탁선례 제2-24호). 공탁신청이 수리된 경우 공탁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도중 분실되거나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공탁관은 공탁수리 후 공탁서를 공탁자에게 내주어야 하므로(공탁규칙 제26조 제1항) 공탁신청은 공탁자 본인이 공탁소에 출석하여 하거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출석하여 하여야 한다. 변호사·법무사를 대신하여 그 사무원이 사자(使者)로서 공탁신청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2. 전자공탁

**이 부분에 아래 공탁선례 추가**

금전공탁이전에 관한 규정 또한 하기는 계속해서 공탁을 하는 데에 있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선례)

공탁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하는 경우,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고,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로서 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소장 등에 피해자들의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예시: 홍길동(가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피해자에 대한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시점, 피해장소, 채무의 성질)이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는 일괄하여 1건의 공탁서로 작성·제출 할 수 있다.
3. 이와 달리 ① 각 피해자들의 성명이 실명 또는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공탁원인사실(피해 발생시점, 피해 장소, 채무의 성질)이 다른 경우, ② 피해자의 성명이 비실명 처리되어 공탁서 기재에 의하여 피공탁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각 1건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2024. 6. 13. 사법등기심의관-3074 직권선례).

- ① 금전공탁 신청사건
- ②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
- ③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청구
- ④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청구
- ⑤ 전자신청에 대하여 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법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 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

위 내용을 아래 내용으로 교제

- 1. 금전공탁 신청사건
- 2. 5천만 원 이하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회수청구
-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된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청구
- 4.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한 사실증명 청구
- 5. 전자신청에 대하여 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공탁법]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
- 6.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건에 대한 정정신청 또는 보정(규칙 76조)

3) 사용자등록

- ①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신청주체 유형별(개인회원, 법인회원, 변호사회원, 법무사회원)로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해당란에 입력한 후 대법원에규로 정하는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법인용 인증서를 이용하는 법인회원은 공탁소에 출석하여 법인사용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상업등기법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공탁관으로부터 전자공탁시스템에서의 사용자등록을 위한 접근번호를 부여받아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개인회원이나 법인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는 법인회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고타스크 바르찬키 아구드 사요키드로의 하 스 이다

이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

.....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법인용 인증서, 법인 전자증명서, 개인용 안증서)...

## 2. 공탁서의 기재사항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 등 공탁의 종류를 선택하여 할 수 있다(대판 2005.5.26, 2003다12711; 2008.5.15, 2006다74693 참조).

이 부분 삭제

### 3) 공탁원인사실

- 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공탁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해당 공탁근거법령의 공탁요건 사실을 적어야 한다. 공탁원인사실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것이나 출급절차를 적정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변제공탁의 전형적인 예는 “공탁자(채무자)는 피공탁자(채권자)에게 ○○○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채권발생원인, 채무액, 이행기, 이행지, 특약유무 등), 변제기에 채무를 현실 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므로 공탁함” 등으로 적는다.
- ② 제3자에 의한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제3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 제3자로서 채무자를 갈음하여 공탁한다고 기재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서 채무자를 갈음하여 공탁한다고 적는다.
-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에 의하여 출급절차의 적정을 기할 수 있으므로 기재를 간략하게 하도록 양식을 마련하였다.

### 4) 공탁근거 법령조항(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4호)

- ① 공탁서의 “법령조항”란에는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한 공탁근거법령의 조항을 적어야 한다. 이는 공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특정하여 공탁원인사실과 공탁근거법령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경우 법령 조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방향을

이 부분에 아래 내용 추가

- ④ 형사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는 0000. 0. 0. 00:00경 0시 00분 00초 0. 00식당 앞에서 피해자 홍길0을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피해보상금, 형사위로금, 위자료 등)을 홍길0에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이라고 적는다.

(2) 채권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나타난 최후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판결문이나 등기부 등의 주소를 기재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29호).

(3) 형사공탁의 특례(공탁법 제5조의2)의 경우

형사공탁이 개정된 공탁법 제5조의2의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동조 제2항).

(4)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①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도 피공탁자는 토지소유자이므로 피공탁자란에는 토지소유자만 기재하면 되고 담보물권자, 가압류채권자, 경매신청인 등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공탁선례 제2-164호).

② 수용보상금 공탁에서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는 때에는 「피소유자 부면, 피소유자가 사망하여」나 그 사소한 부분을 알 수 없는 때에는 「망 ○○○( )」의 공탁을 하고, 「망 ○○○의 상속인 주소 □□○○○」의 공탁을 하도록 기재하면 된다.

**이 부분 아래내용으로 교체**

형사공탁의 경우,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공소장, 조서, 진술서, 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의 성명(성·가명을 포함한다)과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공소장에 기재된 검찰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탁자는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고, 공소장 등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법 동조 2항, 규칙 81조 3호, 82조, 형사공탁지침 4조).

(관련선례)

공탁자가 형사공탁을 신청하면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첨부서면으로 별지 범죄일람표가 포함된 공탁규칙 제83조 제2호의 서면(공소장 등)을 제출하였고, 위 범죄일람표에 피해자 성명 일부가 비실명화 또는 가명처리된 다수의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서의 피공탁자 기재 방법 (공탁선례 202404-1)

1. 공탁자는 공소장·조서·진술서·판결서(이하 “공소장 등”이라 한다)에 피해자의 성명 중 일부가 비실명 처리되어 있거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서에도 그대로 기재하되, 가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괄호를 하여 가명임을 표시한다(행정예규 제1362호 제4조 참조).
2. 위 1.에서 공탁자가 공소장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를 함께 제출하였고, 범죄일람표에 피

해자 성명 일부가 비실명화 또는 가명처리된 다수의 피해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괄호를 하여 범죄일람표의 순번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예시) 이○호(범죄일람표 1. 10번 피해자)

예시) 이도령(가명, 범죄일람표 1. 15번 피해자)

3. 형사공탁사실통지서는 피공탁자별로 작성하되, 피공탁자 기재 방법은 위 1. 2.와 같다.

한편, 위 형사공탁의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의 성명과 관련하여,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아래 각 호의 방식으로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피공탁자의 성명을 비실명 처리한다(형사공탁지침 7조).

1.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성만 입력하고 이름은 입력하지 아니한다.

2.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 중 일부가 기호처리 방식(o, □, △, ◇ 등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방식)으로 비실명 처리된 경우 공탁관은 전산시스템에 공탁서에 기재된 대로 입력한다.

3. 공탁서에 피공탁자 성명 대신 가명이 기재된 경우에 괄호하여 가명임을 표시하여 입력한다.

11) 공탁신청연월일(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11호)

공탁서의 “신청연월일”란에는 공탁서를 현실로 제출하는 연월일을 기재한다.

12) 기명날인

① 공탁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이 공탁하는 때에는 그 사람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인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표시를 하고 성명을 적고, 주소란에는 사무소 소재지를 적으면 된다. 법인이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도 대리인의 자격, 성명, 주소를 적을 것이지 대표자의 주소, 성명을 적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명과 그 직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② 공탁물 지급청구서와는 달리 공탁서에 공탁자 또는 대리인 등이 날인하는 인영은 인감증명법이나 상업등기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된 인감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위 날인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할 수 없는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 날인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이 부분 아래내용으로 교체**

공탁서에는 위 사항을 적고 공탁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표자나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때에는 그 자의 주소를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그 직무상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직·소속관서명을 쓰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규칙 20조2항). 공탁신청시는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날인은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날인이나 서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으로 할 수 있다(규칙 11조). 날인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직 후견개시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 선임심판서등본을 첨부한다. 성년에 대하여 후견이 개시된 경우(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

■ 2014.8.29. 업무연락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 없으나 위임인, 위임하는 공탁사건과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되도록 기재하여야 하고,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위임의 취지(공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수여한다는 등)도 기재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탁사건을 처리할 때, 전자이미지 관인이 날인된 "공탁사무위임"의 공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명확히 기재가 되어 있다면, 위 공문도 위임장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소소명서면 등

1) 의의

변제공탁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주소증명서면 등도 관공서에서

이 부분에 아래 내용 추가

4) 형사공탁의 경우

형사공탁(공탁법 5조의 2)을 하는 경우에 공탁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분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이란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공소장, 재판장에 의하여 불허가된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 사본 등),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에 해당함을 공탁관이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규칙 83조, 형사공탁지침 6조).

세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사로 기재된 사 보누의 주소소명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2) 원칙 -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이어야 한다. 재결서나 판결문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고 표시된 주소가 주민등록표등·초본상의 주소와 일치된다 하더라도 재결서나 판결문은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있어도 직접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3)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①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경증서를, 재외국민의 경우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다만, 주재국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

이 부분에 아래 공탁선례 추가

(관련선례)

민집 248조 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으로 볼 수 없고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 소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276).

\*\*\* 38 페이지

시를 최종주소시도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시에 피공탁사가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외국 공문서 등이 제출된 경우

외국 공문서나 공정증서가 제출된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문서를 발급한 공무원이나 공증한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영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서 정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8 PART 01 총론

이 부분 삭제(중복내용)

경우에는 가입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할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7.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①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를 없으면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위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③ 그러나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무자가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할 때에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첨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 8. 첨부서면의 생략

- ①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을 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만 첨부한다. 다른 공탁서에는 그 뜻을 적어야 한다. 예컨대 첨부서면이 생략된 다른 공탁서의 비고란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년 금제○○호 공탁서에 첨부한 것을 위요함”이라고 기재한다.

이 부분 삭제

\*\*\* 42 페이지 아래 판례 삭제

①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가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탁관은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다(공탁선 **삭제** 그러나 유효한 공탁이 되려면 채무자의 채무변

\*\*\* 43 페이지 아래 판례 모두 삭제

제와 채권자의 반대급부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가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공탁하는 것이 채무의 본질에 적합할 것이 요구되므로 명백하게 동시이행조건이 아닌 조건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하여 공탁신청하는 것은 공탁관이 불수리할 수 있고, 설령 이를 간과하고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공탁이 된다.

② 근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그 공탁은 효력이 없지만(대판 1975.12.23, 75다1134 등), 공탁관으로서는 그러한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대판 2016.5.17, 2015마1933 참조). 근저당권자는 특약이 없음은 이유로 변제공탁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뿐이다. **삭제**

③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공탁금 회수청구권과 같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추심능능에 대한 압류'와 같이 압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임은 압류통지만으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더라도 압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결 2016.5.17, 2015마1933 참조). 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령되어 채무자와 채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가진다. 따라서 형식적 심사권박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 없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④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회수청구권'과 같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추심능능에 대한 압류'와 같이 압류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임을 압류통지만으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더라도 압류는 무효로 보아야 한다(대결 2016.5.17, 2015마1933 참조).

⑤ 공탁물을 회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물 회수청구서에 공탁서뿐만 아니라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공탁금 회수청구서 및 그 첨부서면의 확인을 통하여 공탁금 회수청구의 절차법적 요건은 물론 실체법적 요건도 함께 심사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러한 심사를 통하여 진정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자가 아닌 무권리자에게 공탁금이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대판 2010.2.25, 2009다82831).

⑥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심사 결과 공탁금 회수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불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2010.2.25, 2009다82831; 2017.4.28, 2016다277798).

⑦ 공탁제도를 활용하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공탁이 허용되어야 하고 처음부터 공탁제도를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까지 공탁을 허용하여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하고 채권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관/관/관

- ① 법령의 해석이 복잡·비묘하여 어렵고 학설·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공탁관이 신중을 기하여 합리적 근거를 찾아 결정을 하였다면 이후 그 결정이 대법원의 판단과 달라 결과적으로는 위법한 것이 되더라도 공탁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3.10.10. 72다2583; 2014.5.16. 2013다21849 등 참조).
- ② 공탁사가 甲·乙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가진 자를 공탁금의 출금 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기를 부여 공탁을 하였음에도 공탁관이 공탁법 제10조, 공탁규칙 제33조 등의 규정에 위 **삭제**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가집행선고부 甲 승소의 판결을 첨부하였음에 불과한 **삭제** 출금인가를 하였다면 직무상의 중과실이 있다(대판 1968.7.23. 68다1139).
- ③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탁금 출금청구를 한 압류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면 공탁관에게 과실이 있다(대판 2002.8.27. 2001다73107).
- ④ 재외국민의 위임장에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의 직인은 날인되어 있으나 재외공관 공증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증담당영사의 인증 문언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일본국 행정청 명의로 위조된 공탁금 출금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믿고 출금을 인가한 공탁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2002.11.28. 2002다49200).
- ⑤ 공동공탁자 중 1인이 다른 공동공탁자에게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그 후 제3자가 위 공동공탁자의 공동명의로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작성한 후 위조하거나 부정발급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한 경우 공탁공무원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통지 사실이 기재된 공탁사건기록과 공동공탁자 공동 명의의 위 공탁금 회수청구서를 대조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위 공탁금 회수청구가 진정한 권리자에 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절차적 요건이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 공탁금 회수청구를 인가한 공탁관에게는 공탁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집행을 그르친 과실이 있다(대판 2010.2.25. 2009다82831).
- ⑥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금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 출금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 다음 각 청구에 부합하는 첨부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행정예규 **삭제** 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대로 **삭제** 공탁금을 지급하였다면 공탁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17.4.28. 2016다277798 참조).

이것만 남기고



삭제

삭제

## 2. 공탁의 불수리

- ①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8조 제1항).
- ②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은 신청인에게 불수리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 ③ 공탁관이 불수리결정을 한 때에는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 그 밖의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 다만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다.
- ④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한편 전자신청에 대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그 이의신청서가 공탁규칙 제73조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는 경우 공탁관은 전자문서로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출력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처리한 공탁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한 경우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⑥ 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불수리결정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이의신청 취하 포함)한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이 부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교체**

## 2 공탁의 불수리

### 가. 의의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규칙 48조).

### 나. 불수리결정 방식 및 고지방법

- ① 공탁관이 불수리결정을 할 경우에는 별지양식에 따라 이를 적은 결정으로 하고, 규칙 55조 2항의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② 공탁관은 신청인이나 청구인에게 불수리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 가액의 우표를 납부한 경우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하며, 결정원본의 '결정의 고지'란에 해당사항을 적고 날인하여야 하고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공탁기록에 철한다. 결정등본이 반송되는 경우 이를 공탁기록에 철하고 기록표지 비교란에 그 뜻을 적는다.

### 다. 신청서류의 보관 및 원본환부

- ① 공탁관이 불수리결정을 한 때에는 불수리결정원본과 공탁서(2부), 그 밖의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
- ② 위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복사본과 영수증을 공탁기록에

철하고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다.

**라. 공탁기록의 보존기간**

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불수리결정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이의신청 취하 포함)한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은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4) 공탁의 동일성 유지

- ① 일단 성립한 공탁의 법률관계는 공탁서 기재사항을 기초로 하여 형성되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파생되므로 후에 공탁서의 기재사항에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함부로 그 정정을 허용하여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경우에는 공탁당사자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탁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 ② 예컨대 특정채권의 귀속에 관하여 甲과 乙 간에 다툼이 있지만 채무자가 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고, 甲의 채권자 丙이 甲의 출급청구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피공탁자를 乙로 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여 이를 허용할 경우 ㉠ 현재 채무자(공탁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甲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절차를 취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 丙이 얻은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무용화되며, ㉢ 乙의 입장에서조차 공탁서 정정의 소급효로 인하여 채무자(공탁자)로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등으로 甲, 乙, 丙 모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말하면 종전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제관계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③ 한편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확정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삭제

② 한편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금전채권 전액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한 후에 공탁신청 당시 누락한 (가)압류를 추가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이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가령 누락한 (가)압류를 추가함으로써 압류경합이 발생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이 배당재단이 되어 신청 시 피공탁자를 기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공탁자 기재란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공탁서 정정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 부분 삭제

(5) 절대적 불확지공탁에서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정정신청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받을 자를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련/판/례**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정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4.23. 2013다207774).

2)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량자’ 등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 부분 삭제 (중복)**

2)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공탁자’, ‘공탁금액’, ‘공탁물수량자’ 등 공탁의 요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다음 다시 공탁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1)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①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甲 및 乙 2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 명의를 甲 1인으로 정정하거나(피공탁자 일부 삭제) 甲 1인으로 되어 있는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로 정정하는 것(기존의 확정공탁을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정정)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에 의하여 형성된 실체관계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② 피공탁자 “○○규찬”을 “규찬”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은 일체의 창씨개명에 의한 것으로 공탁의 실체관계에 부합되므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여 가능하다. “○태원(○규찬의 손자)”으로의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이 되어 불가능하다(공탁선례 제2-46호).

③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치분의 피보전권리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정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공탁선례 제2-191호).

**이 부분 삭제**

④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상대적 불확지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공탁 당시 사업시행자가 착오로 '토지소유자'로 기재하였고 공탁관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수리한 것이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하다면 비록 피공탁자가 토지소유자만으로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위 공탁은 피공탁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착오 기재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토지소유자'에서 '가처분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정정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186호). 이 선례는 피공탁자를 변경하는 공탁서 정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공탁서 기재 자체에 의하여 그 착오가 명백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2)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공탁자에 관한 사항은 공탁의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공탁자를 변경하는 정정 역시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공탁원인을 주

**이 부분 삭제하고 아래 공탁선례로 교체**

(관련선례)

집행공탁을 혼합공탁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한 착오 기재의 정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는 내용의 정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공탁선례 201211-2).

(관련선례)

갑→을→병으로의 순차적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를 기업자가 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피수용자인 병에게 지급하기 전에, 갑이 병의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을 및 병'을 상대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따른 예고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기업자는 위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보상금을 공탁(피공탁자를 병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후 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을과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업자가 토지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권한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즉 '기업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토지수용법 61조 2항 2호)'에 해당하여 피공탁자를 상대적 불확지로 하여 '갑 또는 병'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공탁 당시 기업자가 착오로 병으로 기재하였고 공탁공무원도 이를 간과한 채 공탁수리한 것이 공탁서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것이라면, 비록 피공탁자가 병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공탁은 피공탁자를 '갑 또는 병'으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공탁자가 착오기재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병에서 '갑 또는 병'으로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한다면 그러한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실체에 합치되는 것으로서 공탁공무원은 이를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하여야 할 것이며, 갑은 그와 같은 공탁서 정정이 있는 후 위 승소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186호).

(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절대적 불확지공탁이나 사실상 수령불능 사유 중 피공탁자 주소불명의 경우와 같이 공탁서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업무연락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첨부서류

구분			공탁금 출급권자			
			개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관공서
공 탁 금 액	5천만 원 초과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5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1천만 원 이하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삭제

없다(공탁규칙 제33조 제2호).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공탁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후술하는 해당 공탁권에 기하고, 개괄적인 설명만 하기로 한다.

미룬다. ...로 수정

1) 변제공탁

(1) 확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를 특정한 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서나 공탁통지서 자체로 출급청구권자와 출급청구권의 발생 및 그 범위를 알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 상대적 불확제공탁의 경우

①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② 그러나 피공탁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우선

승낙서 또는 허  
발급증 첨부)  
피공탁자 사이  
서 포함)을 첨

이 부분 모두 삭제

③ 동일한 금액 범  
들 중 누구에게  
중 판결 또는

그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제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따라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대판 2007.5.31. 2007다3391 참조)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확인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3) 절대적 불확제공탁의 경우

① 절대적 불확제공탁을 한 경우 공탁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탁자가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자(국가가 아님)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조서·조정조서 등)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

\*\*\* 77 페이지..... 모두 삭제

\*\*\*\* 78 페이지

(3) 납세담보공탁  
공탁자가 담보기간 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탁물로 세금에 충당한다. 이 경우 공탁물로 세금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서면이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3) 집행공탁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공탁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집행법원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을 받을 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물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하면 되고,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4) 물취공탁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의 물취공탁에 대하여 공탁 후 공탁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공탁을 명한 법원의 공탁금 물취결정정본 및 확정증명서(민사소송법 제300조)가, 상호가등기 물취공탁의 경우에는 등기관 작성의 공탁금 출고귀속통지서가 각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된다. 물취한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다.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변제공탁의 경우에 공탁금 수령한 자에 반대급부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공탁자의 서면, 판결문, 공정증서 등 증명하지 아니하면 공탁

**이 부분 까지 삭제**

할 수 없으므로 공탁물 회수청구 시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결 1973.12.22. 73마360). 회수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변제공탁” 이하 해당 공탁권에 미루고 여기서는 개략적인 것만 설명한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른 회수

① 민법 제489조에 따른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의 기재 그 자체에 의하여 회수 청구권이 있음이 명백하고 회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변제자인 공탁자가 당연히 취득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대판 1998.10.13. 98다17046). 피공탁자는 공탁자의 회수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탁을 수락한다는 뜻을 적은 서면 또는 공탁의 유효를 선고한 확정판결의 등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공탁규칙 제49조), 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전세권·저당권이 소멸하는 때에는 그 소멸하는 권리를 공탁서에 기재하도록 되

**이 부분 삭제 후 아래 내용으로 교체**

변제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저당권)등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민법 489조 1항). 민법 489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공탁물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수청구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어 있으므로(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6호), 공탁관은 민법 제489조의 회수요건 충족 여부를 공탁기록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② 또한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금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공탁선례 제2-333호).

③ 다만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토지보상법 제42조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9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민법 제489조에 따른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07.3.30. 2005다11312 등 참조).

2) 착오공탁으로 인한 회수

(1) 의의

공탁이 공탁으로 착오된 경우 회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탁이 아닌 공탁으로 회수된 것으로 하여 공탁물 회수를

이 부분 삭제

(2) 사례

착오로 공탁한 경우의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甲 명의로 공탁하여야 할 것을 乙 명의로 공탁한 경우, ② 변제의 목적물이 아닌 것을 공탁한 경우, ③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던 경우(대결 1995.7.20. 95마190), ④ 선행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후행 채권가압류가 있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공탁선례 제2-307호), ⑤ 변제공탁의 관할공탁소가 아닌 곳에 공탁한 경우, ⑥ 변제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가압류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하여 가압류채무자 또는 가압류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공탁선례 제201211-1호), ⑦ 법원의 담보제공명령도 없이 임의로 담보공탁을 한 경우(대결 2010.8.24. 2010마459), ⑧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

②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자가 공탁원인의 소멸을 이유로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서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해당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4) 몰취공탁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에 의한 몰취공탁의 경우에는 공탁금반환결정정본을, 상업등기법 제41조의 몰취공탁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 제82조 제1항에 의하여 등기관이 교부한 공탁원인소멸 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다.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 관하여는 후술하는 변제공탁의 회수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4. 외국 공문서 등이 제출된 경우

제출된 문서가 외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의 경우 그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탁관은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역사관의 확인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 따라 「행정예규 제10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서인증이나 아포스티유

**이 부분 삭제**

5. 첨부서면의 선택

② 그러나 심사방법은 공탁법규가 규정하는 청구서와 첨부서류만으로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한다. 따라서 공탁관은 청구의 기초가 되는 실제적 법률관계의 존부나 제출된 서류내용의 진부에 대한 실질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한 증인신문·검증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새로운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없다.

**관련판례**

갑이 공탁금 수령권자인 을에게 돈을 빌리는 데 필요하다고 말하여 그로부터 받아둔 인감도장과 이 사건 공탁금 관계에 필요하다고 말하여 을이 직접 발급받아 건네어 준 공탁금 회수용 인감증명 1통을 가지고 공탁금의 출금신청을 하였고 공탁관이 정당한 수령권자인 외관을 갖는 갑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였다면, 을은 비록 그 공탁금을 현실로 수령하여 이들을 본바 없다 하더라도 표현대리의 분인의 지위에서 그 공탁금을 수령한 셈이 된다 할 것이다(대판 1990.5.22. 89다카1121).

**관련선례**

사용자인 법인이 민소 제579조 제4호(민집 제24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이 부분에 아래 공탁선례 추가**

**(관련선례)**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하더라도 그것이 납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강제집행종료의 효력을 가지는 것인 즉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 전부명령의 위법·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으므로 공탁물회수 청구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불수리 한 공탁관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대결 1983. 3. 25. 82마733).

**(관련선례)**

공탁관은 공탁물출급 또는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만으로 공탁당사자의 청구가 공탁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절차적, 실제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지만, 그러한 심사 결과 청구가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만연히 청구를 인가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2017. 4 28. 2016다277798).

도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등의 사유로 이자의 귀속주체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지급청구서에 이자에 관한 지급청구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공탁물보관자(은행)가 공탁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이자의 지급시기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한다. 그러나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는 원금을 지급한 후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공탁규칙 제52조).

(4) 이자의 지급절차

- ① 공탁금의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탁금의 이자는 공탁금 출금·회수청구서에 의하여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하여 지급한다(공탁규칙 제53조 제1항).
- ②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자는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53조 제2항). 이 경우에는 공탁규칙 제35조(일괄청구)와 제37조(인감증명서의 제출), 제38조(자격증명서 등의 첨부·첨부서면의 생략), 제39조(출급·회수의 절차), 제45조·제46조(공탁물보관자의 처리)를 준용한다(공탁규칙 제53조 제3항).

이 부분에 아래 공탁선례 추가

(관련선례)

압류·전부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일로부터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공탁선례 2-301).

02 **필** 신분확인에 의한 출급·회수절차

1. **의의**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에 의하여 본인확인을 한 후 공탁금을 출급·회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탁금액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대법원 행정예규 제1308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업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제1434호  
...로 수정

2. **공탁금액의 적용기준**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가 적용되는 공탁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기준에 의한다.

- ① 출급·회수청구하는 공탁금액(유가증권의 경우 총 액면금액을 말함)이 1,000만 원 이하라 함은 원칙적으로 “공탁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②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출급 또는 회수청구하는 금액이 이자를 포함하여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공탁서상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공탁서상의 전체 공탁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하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서상의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 ④ 배당 등에 따라 공탁금액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권자의 청구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3. **공탁관의 신분확인 시 유의사항**

공탁관은 공탁규칙 제3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탁금액이 1,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부분 삭제 후 아래 내용으로 교체**

홈페이지(<http://www.kca.go.kr>)에 접속하여 “공탁금 출급·회수” 메뉴를 클릭하여 “신분확인” 메뉴를 클릭하여 “신분확인” 화면에서 “신분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신분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① 공탁관이 규칙 제3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탁금의 출급·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고, 그 신분에 관한 증명서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모바일 신분증이 제시되는 경우 공탁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출력한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첨부하여야 하고, 검증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공탁사무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해당 공탁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보증지급이라고 한다(공탁규칙 제41조 제1항).

- ② 보증지급은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가 주소증명서면(또는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와 불일치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데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며(공탁선례 제2-50호), 수용보상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인 소유권 입증서류를 보증서로 갈음할 수도 없다(공탁선례 제1-128호).

▶ 보증인의 자격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공탁사건을 심사하는 해당 공탁관이 공탁규칙 제 41조 소정의 취지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공탁선례 제2-94호). 실무상 보증인들에 대한 자격 심사는 보증인들 소유 부동산을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한 시점에서 담보액을 공제한 금액이 공탁금을 초과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 부동산의 시가(담보액 공제)가 공탁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보증인을 내세우게 하는 경우도 있다.

- ③ 보증지급절차에 의한 때에는 그 뜻을 공탁을 출급·회수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관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그 차관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자필서명한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등)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보증서... 도의 재직증명... (리인)가 대리

**이 부분 삭제**

- ④ 집행법원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권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관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대판 2009. 7.23. 2009다39363; 2018.3.27. 2015다70822 참조).
- ⑤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법 제12조에서 정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16조에서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

**이 부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교체**

④ 집행법원이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송부하고 채권자에게 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사무는 공탁관의 공탁사무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공탁된 배당액의 출급을 위하여 집행절차에 부수하여 행하는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그 사무에 관한 집행법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법 12조에서 정한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민집 16조에서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18. 선고 99마1348 판결 참조).

## 05 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93-94 페이지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교체)

05절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시 유의사항(대법원행정예규 제1436호, 시행 2025. 6. 25.)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기미제 공탁사건, 고액공탁사건 및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이하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탁금의 부실 지급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미제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 후 5년이 지나도록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없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2. "고액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이 10억원 이상인 금전공탁사건을 말한다.
3.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이라 함은 공탁금 이자의 귀속 주체가 달라지는 등의 원인으로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있는 공탁사건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 1. 장기미제 공탁사건

가. 직전 연도말 기준 만 5년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

- ① 예를 들어 2005년에 출급 또는 회수가 있는 경우 1999. 12. 31. 이전에 수리된 공탁사건
- ② 분할지급이나 일부지급이 있더라도 남은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가 공탁 후 5년이 지난 경우

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유가증권 및 물품은 제외)

#### 2.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

공탁 원금 전액이 지급된 채 이자만 남아 있는 공탁사건(공탁유가증권의 이표 제외)

### 제4조 (공탁관의 확인 철저)

①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탁기록, 출급 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상의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정당한 본인 또는 대리인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증명서의 사본을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모바일 신분증이 제시되는 경우 공탁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출력한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하고, 검증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공탁사무 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할 수 있다.

## 제5조 (인가 전 결재)

### 1. 인가 전 결재할 공탁사건 등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중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인 공탁사건(공탁규칙 제43조에 따라 배당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고액공탁사건(지급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하여 출급·회수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인가하기 전에 별지 1 양식에 따라 전자결재의 방식에 의하여 소속과장(시·군법원의 경우 시·군법원 판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소속과장의 부재시에는 사무국장의 결재를, 소속과장과 사무국장의 부재시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서기관이 공탁관 또는 대리공탁관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 「공탁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민원인예의 안내

인가 전에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공탁사건을 접수한 경우에 공탁관은 청구인에게 그러한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5조의2 (인가 후 결재)

공탁관은 일계표 결재시 제5조에 따라 인가 전에 결제한 공탁사건을 포함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하여 별지 2에 의한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 지급내역"을 공탁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후, 출급·회수청구서 또는 이자청구서와 제출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결재를 받고 이를 일계표와 함께 보관한다.

## 제6조 (열람 및 사실증명 청구시 유의사항)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탁에 관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등에 의하여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제7조 (완결된 공탁기록의 보관·관리 철저)

공탁관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지급으로 인하여 완결된 공탁기록이 멸실되거나, 훼손, 일부서류의 누락 등이 없도록 공탁기록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 (감독사무의 철저)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에 대한 지급의 적정 여부와 공탁기록의 보관·관리에 관한 공탁관의 업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적용범위)

제4조 , 제5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제1호((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및 제2호(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공탁한 경우)<sup>1)</sup>에(참고로, 종전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에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음),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1) ▶ 개정 전 제9조(절대적 불확지공탁에의 적용)

제4조 , 제5조, 제6조 내지 제8조는 토지수용보상금을 절대적 불확지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 개정 후 제9조 (적용범위)

제4조 , 제5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토지수용보상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와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의 공탁 당시 공탁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공탁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한 공탁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5. 열람절차 및 증명절차

- ①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신청 등이 있는 경우 공탁관계서류가 공탁소 밖에 반출되지 않아야 하고, 공탁관계서류의 오손 등을 막기 위하여 공탁담당직원의 감독하에 열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 ② 열람신청내역 및 사실증명열람을 완료한 후에는 열람신청서를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신청서를 소송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별도로 신청서철에 철하여 두는 것과는 다르다.
- ③ 시효기간 중에 열람을 허용하거나 공탁사실 증명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그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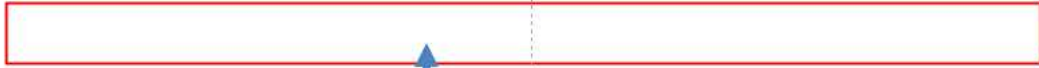


**이 부분에 아래 내용 추가**

④ 형사공탁[공탁법 5조의2의 경우 피공탁자나 그 포괄승계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 이 기재되어 있는 공탁관계 서류 및 전자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사실증명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 후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규칙 87조). 이때 비실명 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하 "비실명처리대상정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형사공탁지침 17조).

1. 성명과 그에 준하는 것(호, 아이디, 닉네임 등)
2. 주소 등 연락처(거주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3. 금융정보(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4. 기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공탁관계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위 비실명처리대상정보에 접착식메모지, 접착식메모테이프, 라벨지 등을 부착하여 복사한 사본 또는 비실명처리 대상정보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검은색으로 칠한 사본을 열람·복사의 청구에 제공한다. 한편, 공탁관은 공탁관계서류 및 전자기록에 나타난 정보에 대하여 사실증명 청구가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대상정보의 내용을 전산 또는 수작업으로 가리거나('o, \*등'처리) 기재하지 않고 제공한다(형사공탁지침 19조).



6. 범죄수사·세무공무원의 열람청구 및 법원의 문서송부촉탁

- 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범죄수사상 필요하다 하여 특정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도 무방하다.
- ②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재산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장부나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이 업무상 공탁관계서류의 열람을 청구해 오는 경우에는 그 대상서류가 특정되어 있는 한 열람을 허용하여도 무방하다.
- ③ 지급이 완결되지 않은 공탁에 관한 서류는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에서 서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무실 밖으로 옮기지 못하므로,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공탁관

이 부분에 아래 내용 추가하고 그 아래 목차 6은 7로 수정

서서는 송부촉탁에 응할 수 없 부촉탁에 응하여도 무방하다.

6.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1447호, 2025. 10. 2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 결정이 있는 사건과 관련하여 공탁신청, 공탁물의 지급청구 및 열람 등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②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로서 해당 소송관계인이 지정하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이 제3자(당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제4항 중 이 항과 관련된 부분에서 같다)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7. 11.>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이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사건을 말한다.
- 2. “본안사건법원”이란 해당 소송이 종료될 당시의 법원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자”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사건의 제한신청인을 말한다.
4. “개인정보 보호조치 취소결정”이란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3조 제2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말한다.
5. “관련사건”이란 공탁신청 또는 공탁물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 제3조(「공탁규칙」의 준용)

제2장 및 제3장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탁신청 및 공탁물 지급절차에 관해서는 「공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 제2장 변제공탁

### 제4조(관할공탁소)

- ①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의 판결 등에 기한 변제공탁(이하 “개인정보 보호 변제공탁”이라 한다)은 본안사건법원 소재지의 관할공탁소에 할 수 있다.
- ② 개인정보 보호 변제공탁은 피공탁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자로서 공탁자가 피공탁자의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 제5조(공탁서의 기재)

- ① 공탁자는 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탁서의 피공탁자 주소란에 본안사건법원 및 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법령조항 에는 「민법」 제487조를 기재한다.
- ③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일반적인 공탁원인사실 이외에 관련사건이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첨부서면 등)

- 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제1호 양식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규칙 제23조 제2항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공탁자는 제5조 제3항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의 재판서·조서 등(이하 “재판서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공탁서에 첨부되는 재판서 등은 규칙 제21조 제3항의 서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제7조(공탁통지서의 발송)

- ① 공탁관은 공탁물의 납입 또는 공탁물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 제1항의 공탁통지서와 별지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의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

### 제8조(공탁물 지급)

개인정보 보호 변제공탁의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규칙 제33

조에 따른 서면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피공탁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 재판서 등의 정보 또는 등본
2. 피공탁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 제9조(변제공탁 이외의 공탁에 준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이외의 공탁신청 및 공탁물의 지급청구에 관해서는 제5조제1항·제3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제3장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 제10조(공탁신청)

- 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에 의하여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공탁신청 시 가압류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가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한다.
- ② 제3채무자는 제1항의 가압류결정문상 채권자의 주소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통지를 위한 규칙 제23조 제2항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③ 공탁관은 제1항의 가압류결정문상 채권자의 주소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의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가압류채권자의 주소지를 조회하여 공탁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공탁사실의 통지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의 별지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 제11조(혼합공탁의 신청 시 준용)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하려는 경우에 그 가압류가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인 경우의 처리에 관해서도 제10조를 준용한다.

### 제4장 열람제한 등

#### 제12조(열람제한신청)

- ① 공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사건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대상자인 경우에는 공탁관계 서류 가운데 개인정보 기재부분을 특정하여 열람의 제한을 신청(이하 “열람제한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열람제한신청이 가능한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소
  2.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4. 팩시밀리번호
  5. 전자우편주소
- ③ 열람제한신청을 할 때에는 공탁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열람제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자격

2. 열람제한신청의 취지
  3. 공탁소, 공탁사건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4. 제한신청 대상문서의 표시(예시: ○○○○. ○○. ○○.자 공탁금 출급청구신청서)
  5. 제한신청 대상정보
- ④ 제3항의 열람제한신청서 제출 시 관련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위임에 따른 대리인이 제1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은 자격자대리인 본인이 열람제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조(열람제한신청의 처리)

공탁관이 열람제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열람제한의 승인)

- ① 공탁관이 열람제한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열람제한신청서에 신청을 승인한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다.
- ② 제1항의 승인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 우측 여백에 별표의 붉은 색 고무인을 찍고 제한신청 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 ③ 제2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열람제한신청서는 공탁관계 서류에 편철한다.
- ⑤ 공탁관은 열람제한신청을 승인한 사건이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한 공탁사건인 경우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열람제한의 방법)

- ① 열람제한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한신청 대상문서의 제한신청 정보 부분을 접착식 테이프 프로 가리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한다.
- ② 열람제한신청이 승인된 공탁관계 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1항의 보호조치 한 서류의 사본을 공탁관계 서류의 해당 부분에 편철하여 열람 등에 제공한다.
- ③ 제14조제1항의 서면과 그 첨부서류에 대한 열람·복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항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제16조(열람제한의 취소신청)

- ① 공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관련사건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열람제한의 취소를 신청(이하 “열람제한 취소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열람제한 취소신청을 할 때에는 공탁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이하 “열람제한 취소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자격
  2. 열람제한 취소신청의 취지
  3. 공탁소, 공탁사건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4. 제한취소신청 대상문서의 표시(예시: ○○○○. ○○. ○○.자 공탁금 출급청구신청서)

5. 제한취소신청 대상정보

③ 제2항의 열람제한 취소신청서 제출 시에는 관련사건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2조 제5항 및 제6항은 열람제한 취소신청에 준용한다.

#### **제17조(열람제한 취소신청의 처리)**

공탁관이 열람제한 취소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열람제한 취소의 승인)**

① 공탁관이 열람제한의 취소신청을 승인할 때에는 열람제한 취소신청서에 신청을 승인한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한다.

② 제1항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14조 제2항의 고무인 하단에 열람제한 취소의 승인 연월일, 취소의 취지를 기재하고 제한 취소신청 승인 내용을 신청인에게 고지한다.

③ 제2항의 고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열람제한 취소신청서는 공탁관계 서류에 편철한다.

#### **제19조(열람제한 취소 처리의 방법)**

열람제한 취소신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한취소신청 대상문서의 접착식 테이프를 제거하고 통상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열람·복사 사무를 처리한다.

#### **제20조(불수리 결정)**

공탁관이 제12조 또는 제16조의 각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는 규칙 제48조에 따른다.

임치물반환의 채무이행지는 그 임치물의 보관장소이다.

- ③ 또한 민법은 위 기준에 의해 채무이행지를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보충적인 규정을 두어 특정물인도채무는 채권이 성립하였을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를 채무이행지로 보고,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는 지참채무, 즉 채권자의 현주소(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를 채무이행지로 보고 있다. 다만, 채권자의 현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 거소지도 모를 경우에는 최후주소지가 채무이행지가 될 것이다.

- ④ 한편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공탁(이하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형사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그리고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는

이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이하 목차번호 수정

④ 예금채무 등은 원칙적으로 추심채무이므로 채무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가 변제장소이다.

④ 한편 형사사건의 피고인(피의자 아님)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개정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그리고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는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 사례

1)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① 동일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 채무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이 부분 삭제하고 아내 내용으로 교체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형사공탁지침 2조).

## 나. 구체적 사례

## 1)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 ① 동일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그 채권이 가분채권이면 각 채권자별로 그 채무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함이 원칙이다. 예컨대, 채권자의 사망으로 수인의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비율로 변제공탁하는 것은 그 채권의 성질이 가분채권이므로 채권자인 상속인들의 주소지가 다를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각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상속인별로 나누어서 공탁하여야 하고,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다수인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 그 손해배상금 등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러나 상속인들 및 피해자의 주소가 같은 공탁소 관할이라면 1건의 공탁사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각 채권자별 공탁금액은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 등에 기재한다.

- ② 공탁의 목적이 되는 채권이 불가분채권이라면 수인의 채권자 중 1인의 채무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 ③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피공탁자들의 주소가 서로 달라 채무이행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들 중 1건의 채무이행지 소재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다음 페이지 내용을 추가

## **(공탁선례)**

###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 시 관할공탁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채권자의 상속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관할 공탁소에 신청한다.

가. 지참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은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고, 수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인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나. 추심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은 공탁자(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으며, 특히 예금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개설(관리) 영업점 소재지 또는 공탁자가 인터넷전문은행인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2025. 9. 23. 사법등기심의관-5198 직권선례]**

**참조조문:** 민법 제467조, 제488조제1항, 제700조, 제100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8353 판결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는 甲 또는 乙이다.

② 피공탁자의 지정과 그 소명은 전적으로 공탁자의 행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형식적 심사권만을 가지는 공탁관으로서 공탁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공탁선례 제2-31호).

③ 한편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이 부분 삭제하고 아내 내용으로 교체

③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③ 한편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피공탁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 제2항).

나. 공탁의 목적물

- ① 변제공탁

이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

무는 그 성질상 변제공탁이 불가능하다.

**(참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5조(공탁서의 기재)**

- ① 공탁자는 규칙 제20조 제2항 제5호에도 불구하고 공탁서의 피공탁자 주소란에 본안사건법원 및 그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법령조항 에는 「민법」 제487조를 기재한다.
- ③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일반적인 공탁원인사실 이외에 관련사건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사건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첨부서면 등)**

- 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수만큼 제1호 양식의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규칙 제23조 제2항의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공탁자는 제5조 제3항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의 재판서·조서 등(이하 "재판서 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공탁서에 첨부되는 재판서 등은 규칙 제21조 제3항의 서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으므로 공탁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④ 한편 형사공탁(개정 공탁법 제5조의2, 시행 2022.12.9.)의 경우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부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다음페이지 내용으로 교체

## (참고) 형사공탁의 공고 및 형사공탁 사실의 통지

### 1) 형사공탁의 공고 등

- ① 형사공탁(개정 공탁법 제5조의2, 시행 2022.12.9.)의 경우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공탁물 수령·회수와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형사공탁은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특칙으로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공고로 갈음하기 때문에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편료도 납입하지 않는다.

### 2) 형사공탁사실의 통지 등

- ① 공탁관은 공탁물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양식의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피공탁자별로 작성하여 규칙 제85조 제1항의 법원 및 검찰에 통지서 원본을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한 후 통지서 사본은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 ② 재판장은 위 형사공탁사실통지 또는 형사공탁정정사실통지를 받은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였고 그 변호사(이하 "피해자 변호사"라 한다)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 경우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받는 데에 동의한 때에는 피해자에게도 형사공탁 사실을 고지한다. 이때의 고지는 서면·전화·전자우편·팩스·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형사공탁지침 별지 제7호 및 제8호 양식 참조). 한편,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와 피해자 변호사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규칙 85조, 형사공탁지침 9조)

공탁자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한다(공탁규칙 제29조 제3항·제4항).

- ⑦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공탁이 이뤄진 경우 공탁관은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제출된 공탁통지서를 출력하여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4)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경우 효과

공탁통지는 공탁이 성립된 경우 공탁자가 피공탁자에게 출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을 알려 주어 피공탁자가 이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 한 것일 뿐 공탁의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공탁통지서에 연한이 있다. 따라서 공탁통지서를

이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

**(참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에 관한 공탁사무처리지침  
제7조(공탁통지서의 발송)**

- ① 공탁관은 공탁물의 납입 또는 공탁물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제6조 제1항의 공탁통지서와 별지를 피공탁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사건의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된 피공탁자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

교부한다. 이때 공탁관은 대리인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위 영수증, 위임장, 인감증명서와 함께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③ “①” 및 “②”는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또는 그 대리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청구를 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④ 위 경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등 사본화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분확인서(「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지 제20호 양식)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6) 공탁통지서의 재송달

공탁통지서가 피공탁자의 **이 부분 삭제하고 아내 내용으로 교체** 에 대한 공탁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공탁통지서 등을 재도 접수하도록 하여 피공탁

④ ① 및 ②의 경우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제시하는 신분에 관한 증명서가 모바일 신분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인 경우 공탁관은 신분증 발급기관이 제공하는 검증시스템을 이용하여 모바일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검증한 후 출력한 신분증 사본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하여야 하고, 검증시스템의 전산 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분확인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한 예규 별지 제 20호 양식)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할 수 있다.

## 1. 채무의 소멸

- ① 변제공탁을 하면 변제가 있었던 것처럼 채무가 소멸되고 그 이자의 발생도 정지된다. 이러한 채무소멸의 효과는 공탁관이 공탁을 수리하고 공탁자가 공탁물보관자에게 공탁물을 납입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지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나 피공탁자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공탁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② 변제공탁의 성립에 의하여 채권은 소멸하지만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면 공탁 시에 소급해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해제조건설(판례)].
- ③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후 채권자인 공탁자가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하였더라도 그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담보의 소멸

변제공탁이 성립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그 채무에 수반된 물적담보(질권, 저당권 등)나 인적담보(보증채무 등)도 변제공탁의 효력으로 소멸한다. 그리고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저당권이 소멸하면 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다음 페이지 내용을 추가

(관련판례)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07672 판결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참고)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관/련/판/례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으로써 비로소 집행채권자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양수인이 기존 집행권원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양도인이 여전히 집행채권자의 지위에서 압류채권을 추심하거나 압류명령 신청을 취할 수 있다(대판 2014.11.13, 2010다63591).


 나. 출급청구권의 행사


## 1) 출급청구

이 부분에 아래의 공탁선례 내용을 추가

① 공탁문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며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공탁서의 기재에 의

**(공탁선례)**

사용자인 법인이 민소 579조 4호(민집 246조 1항 4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2분의 1 상당액을 민법 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원인으로 변제공탁 한 경우, 그 공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집행대상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비록 그 방식이 적법하더라도 그 내용은 무효라 할 것이나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공탁자 또는 전부채권자가 공탁금 출급을 청구하는 어느 경우라도 그 출급을 인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피공탁자인 근로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위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판결(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얻어 이를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2-89).

 관련/판례

1.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 출급청구권 확인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절차 없이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1.11.10, 2011다55405).

2. 변제공탁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자로, 피공탁자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인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2016.3.24, 2014다3122·3139).

**이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이 부분을 다음페이지 내용으로 교체**

- ⑥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의 본안판결을 받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⑦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甲과 乙로 하였는데, 甲이 수용대상토지가 甲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3)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저침 안 스 얻어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하 경우에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

13

**(관련판례 1)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면 채무를 면하고(민법 제487조 후단), 채권자는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때 피공탁자가 된 채권자가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이므로, 그 귀속 주체와 권리 범위는 본래의 채권이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채무자가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알 수 없어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을 하여 피공탁자 중 1인이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자기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경우에, 피공탁자들 사이에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피공탁자들과 공탁자인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2)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관련판례 3)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22, 2014다3139 판결**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는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안판결을 받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⑦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피공탁자를 甲과 乙로 하였는데, 甲이 수용대상토지가 甲의 단독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3)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어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 공탁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게 할 수 있다. 공탁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 조정조서 등)을 받은 자가 그 판결정보 및 확정증명서를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7.10.16, 96다11747 全합)

2)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1) 의미

- ① 이 부분 삭제하고 이 부분을 다음페이지 내용으로 교체 (내용이 많음) 하는 서면을

- ② 부당한 반대급부조거의 분인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무효의 공탁이지만

### (3) 형사공탁

형사공탁[공탁법 5조의2]의 경우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이 필요한데, 이러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에 의한다(공탁법 5조의2 4항). 이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사람이 법원 또는 검찰로부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사실통지를 받은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간소화함에 따라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가 공탁소에 송부된 경우 출급청구인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제출의무가 면제된다(공탁규칙 제33조, 제86조 제1항)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 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 발급담당자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 한다)의 발급 사무는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상소 등으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사건을 의미한다. 이하 "형사본안사건"이라 한다) 담당재판부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발급담당자"라 한다)가 처리한다(형사공탁지침 10조).

## ② 동일인 증명서발급 · 송부 등

공탁관으로부터 형사공탁사실 통지를 받은 발급담당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0호 양식의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증명서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형사본안사건 : 사건번호, 재판부, 사건명
2. 공탁사건정보 : 공탁번호, 공박물. 공탁서 기재 형사사건, 공탁서 기재 피공탁자 성명
3. 피공탁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4. 형사공탁사실통지서에 기재된 문서확인번호

발급담당자는 형사공탁지침 제13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하고 해당 형사사건이 상소되어 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 여부를 확인한다. 해당 형사사건이 확정되어 사건기록이 검찰에 인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형사공탁지침 11조)

## ③ 피공탁자 정보 제공 요구

공탁규칙 제86조 제3항의 경우 발급담당자는 별지 제11호 양식의 피공탁자 정보 제공요구서를 공판검사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송부하고, 그 사본을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공판검사로부터 피공탁자 정보 회신서가 제출된 경우 발급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동일인 증명서 발급 등의 절차를 처리한다(형사공탁지침 12조).

### [공탁규칙 제86조 제3항]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받은 법원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가 검찰로부터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공탁규칙 제86조 제4항]

제8항의 요구를 받은 검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법원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피해자 인적사항이 제공되지 않거나 그 제공이 지체되는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려는 사람은 검찰에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피공탁자 동일인 화인 증명서 발급 요청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송부되지 않은 경우 공탁물을 출급하거나 공탁물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아래 규칙 제86조 제2항의 구분에 따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 전화 등 간이한 방법으로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공탁규칙 86조 5항, 형사공탁지침 13조 1항)

[공탁규칙 제86조 제2항]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는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판결선고 후 기록송부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이 담당한다. 다만,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 및 이미 확정되어 기록이 검찰로 인계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담당한다.

발급담당자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에 송부하여야 한다(공탁규칙86조 6항, 형사공탁지침 13조 2항).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되어 조서 등을 통해 피해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인적사항의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3.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에도 불구하고 피공탁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법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⑤ 동일인 증명서 접수

동일인 증명서를 송부받은 공탁관은 그 서면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수령일자 및 발급기관을 해당 기록표지에 기재한 다음 공탁기록에 편철한다(형사공탁지침 14조).

### ⑥ 피공탁자 개인정보 전산등록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가 접수된 때 그 서면의 기재사항을 피공탁자 개인정보 관리에 전산등록하여, 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 외에 피공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이 제출된 때 입력된 피공탁자 성명을 불러오기 방식으로 전산등록 하고, 나머지 인적사항은 전산등록 하지 아니한다(형사공탁지침 15조)

### ⑦ 동일인 증명서의 진위여부 확인

공탁관은 동일인 증명서와 공탁서 등 공탁기록을 대조하여야 하고, 특히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기재 문서확인번호와 동일인 증명서 기재 문서확인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검찰이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가 송부된 경우 공탁관은 위 방법 및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여 위·변조방지바코드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형사공탁지침 16조).

## (관련선례)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한 형사공탁의 경우.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이하 '동일인 증명서'라고 한다)에 상속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등

1. 일반적으로 공소장 부분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서면이나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비실명 처리되어 기재되고 상속인의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는 점, 동일인 증명서는 비실명 처리된 형사공탁의 피공탁자가 관련형사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점,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동일인 증명서 발급 신청에 따른 신속한 처리가 요청된다는 점, 그리고 상속인에 대한심사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단계 보다는 공탁금 출급단계에서 보다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원 또는 검찰에서 발급한 동일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상속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는 형사공탁 후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같다.
2. 공탁관은 출급청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상속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속관계서류의 제출을 보정권고할 수 있다.
3.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에 의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동일인 증명서가 이미 공탁소에 제출되어 있다면 이후 다른 상속인은 공탁금 출급청구 시 동일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공탁선례 202307-2).

는 데 있으므로,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처럼 토지보상법 제42조에 따라 공탁이 간접 강제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자유로운 회수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회수권의 제한

(1) 공탁금

①

137-138페이지의

2) 회수권 제한파트는 삭제

물을 ... 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 있다.

- ③ 구체적인 방법은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시행 중인 행정예규 제1235호 [제1-9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에는 회수제한신고에 관한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 ④ 위 공탁금회수제한의 신고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압류통지서가 접수된 경우에 준하여 처리한다.

 관련/판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8.9.25, 2008다34668).

라. 회수의 효과

1) 공탁의 소급적 실효

민법 제489조 제1항 단서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때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탁물의 회수에 의하여 공탁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관련/판례

이 부분에 다음 페이지 내용을 추가

변제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 하여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 이와 같이 채권소멸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공탁물의 회수에는 공탁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14.5.29, 2013다212295).

## 라.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한 공탁 (이하, 2025. 8. 16.자 법률신문, 법원공무원 교육원 김재철교수님의 글을 옮김)

### 1) 들어가며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을 공탁을 통하여 지급하려고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주로 양형상의 참작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은 공탁을 하고자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공탁서 기재방식(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서의 피공탁자에 관한 기재 내용, 공탁사유)과 출급방법 등이 달라진다.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최근에 공탁법에서 신설된 공탁물 회수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 가) 공탁서 기재방식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변제공탁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공탁자는 공탁서에 ① 법령조항으로 민법 제487조를 기재하고, ② 피공탁자란에는 피공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며, ③ 공탁원인사실란에는 변제공탁의 사유(수령거절, 수령불능 등)를 기재하여야 한다(이하에서는 이를 '형사변제공탁'이라 한다). 이러한 형사변제공탁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공탁소는 지참채무의 원칙(민법 제467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피해자)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된다.

## 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속인을 찾아 상속인을 상대로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존재하나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이 가능하고, 이때에는 공탁을 신청하면서 상속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 피공탁자의 출급방법

피해자인 피공탁자는 바로 공탁금 출급청구가 가능하다. 공탁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변제공탁한 경우의 상속인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속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탁자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 당시 공탁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공탁한 점과 공탁관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공탁을 그대로 수리한 점을 고려하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상속관계서류의 제출만으로 출급이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은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할 수 있다.

### 3)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의 특례 제도 도입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이하에서는 이를 '형사특례공탁'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란 해당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제1호). 형사변제공탁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가능한데, 형사사건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 나) 공탁서 기재방식

공탁자는 공탁서에 ①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하고, ② 피공탁자란에는 성명(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에 대한 명칭을 그대로 기재), 법원의 명칭과 사건번호 및 사건명, 검찰청의 명칭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③ 공탁원인사실란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형사특례공탁은 형사변제공탁과는 달리 피고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관할공탁소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가 된다(공탁법 제5조의2 제1항).

## 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특례공탁의 경우에는 사망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공탁선례 제202307-2호).

## 라) 피공탁자의 출급방법

형사특례공탁에서는 공탁서 중 피공탁자란의 기재만으로는 출급청구인과 피공탁자와의 동일성 확인이 어려우므로 형사공탁의 원인된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발급하여 공탁관에게 송부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통하여 출급이 이루어진다.

만일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경우이거나 공탁 후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에는 사망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그 상속인의 인적사항까지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는 공탁선례에 따라 피해자의 상속인은 상속관계서류의 제출을 통해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위 다항 기재의 선례).

## 4) 회수청구권의 제한

### 가). 회수청구권의 의의 및 회수사유

회수청구권이란 일정한 요건에 의하여 공탁자가 공탁소로부터 공탁물을 되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탁자는 ①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경우, ②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③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공탁법 제9조 제2항).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물 회수는 변제공탁의 특유한 회수사유이고, 착오나 공탁원인소멸을 원인으로 한 공탁물 회수는 공탁법상의 회수사유로 원칙적으로 모든 공탁의 회수사유이다.

변제공탁자는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저당권 등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 피공탁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로 통고하거나 공탁유효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데(민법 제489조 제1항), 이를 민법상의 회수라 한다.

공탁법상의 회수란 착오로 공탁을 한 때나 공탁 후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를 말하는데, 착오로 공탁한 때란 공탁으로써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변제공탁 관할위반, 제3자에 의한 해방공탁 등)를 말하고, 공탁 후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란 공탁이 유효하게 성립된 이후의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공탁을 지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예컨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취소된 경우 그 차액)를 말한다.

## 나) 회수제한신고

종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공탁할 때 채무자가 공탁사실을 형사 재판에서 양형사유로 이용한 후 민법 제489조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공탁물을 회수함으로써 변제공탁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재판에서 공탁사실을 양형에 참작함에 있어서는 공탁금 회수제한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에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다) 공탁법 제9조의2 (공탁물 회수의 제한) 규정 신설

2024. 10. 16. 신설된 공탁법 제9조의2(2025. 1. 17. 시행)에서는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및 공탁원인소멸에 따른 회수를 하지 못하고, 다만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공탁물 회수동의 또는 수령거절의사 통고는 해당 공탁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9조의2). 공탁법 제9조의2에서는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로 “착오로 공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착오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자의 회수가 가능하다

위 규정의 신설로 이제 형사변제공탁 및 형사특례공탁에서 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공탁서 양식에서도 회수제한 신고 내용이 삭제되는 대신 하단에 회수제한에 대한 안내문구가 추가되었다.

## 5) 마치며

지금까지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공탁을 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공탁서 기재방식 및 그에 따른 출급방법 등의 차이점과 공탁자의 회수청구권 제한에 대한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신설된 위 공탁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자의 회수제한신고가 불필요하고, 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됨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개정전 양식)

[제1-9호 양식]

##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공탁번호		년 금 계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487조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피 공 탁 자	성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		주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한글 숫자	보관은행	은행지점	
형사사건	사건번호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년 제 호 지청 지원	년 형제 호 년 고단(합) 제 호	
	사건명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등)			<input type="checkbox"/> 계좌납입신청 <input type="checkbox"/> 공탁통지 우편료 원		
반대급부 내용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대리인 주소</span> <span style="float: right;">연락 가능한 전화번호</span> 공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span style="float: right;">성명 (서명 또는 날인)</span>					
회수 제한신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span style="float: right;">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span> ※ 회수신고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년    월    일</span>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span style="float: right;">년    월    일</span>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span style="float: right;">(인)</span>					

-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 4.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개정후 양식)**

[제1-9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 청	법령조항	민법487조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탁금액		한글 숫자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형사사건	사건번호	경찰서 지방검찰청 지방법원	년 제 호 지 청 지 원	년 형 제 호 년 고 단(합) 제 호	
	사건명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등)		<input type="checkbox"/> 계좌납입신청 <input type="checkbox"/> 공탁통지 우편료 원			
반대급부 내용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 1. 공탁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탁자는 ①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②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3.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07 절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개정 2024.1.23. [행정예규 제1362호 시행 2024.1.26.] -

## 07절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부터 - 168페이지까지 모두 삭제한 후 다음 페이지 내용 수록

##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법」 제89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공탁신청

## 제2조 (군사법원 사건의 공탁)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형사공탁은 별표 2 기재 군사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제3조 (법령조항의 기재)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한다.

## 07절 형사공탁 관련 참고사항

### 1. 형사공탁의 법령조항 기재

형사공탁의 공탁자는 공탁서에 법령조항으로 공탁법 제5조의2를 기재한다.

### 2. 공탁규칙 86조의2 신설

형사공탁 관련 문서 작성 및 통지, 송부 등 절차는 전자서명정보가 첨부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며,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출력한 서면은 전자문서와 동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제86조의2 신설)

### 3.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지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피내사자나 형사피의자는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4.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공탁이 가능한지?

공탁은 공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채무소멸 등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행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 지정의무를 부담한다(대판 1997. 10. 16. 96다11747 등 참조).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는 형사공탁의 경우도 공탁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피공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공탁법 제5조의2 참조).

공소장 등에 피해자가 "성명불상자"로 기재된 경우 피해자는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서의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고, 관련 형사사건번호와 피해발생사실 등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공탁자 성명란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게 되면 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 받은 법원 또는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동일인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인데, "성명 불상자"의 경우 형사공탁특례의 도입 취지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 5. 주식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형사공탁의 피공탁자가 될 수 있는지?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가 형사공탁 특례의 주된 도입 취지라는 점, 주식회사 등 법인이 피해자인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공탁의 요건인 "법령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주식회사 등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형사공탁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에 대한 합의금 등의 공탁은 민법 제487조의 변제공탁절차에 의할 수 있다.

며, 유가증권인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에 부수하는 인도명령에 관한 기재도 없다면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그중 압류명령 부분의 효력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해서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5.9.10, 2013다216273 참조).

- ⑦ 압류 및 가압류가 있는 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채권(債券)과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인 수용보상금채권이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할 수 있고, 채권(債券)으로 지급하는 수용보상금 부분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 공탁 사유가 있다면 유가증권공탁의 절차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6호).

### 3. 공탁당사자

#### 가. 공탁자

수용보상금 공탁의 공탁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한다. 그러나, 기바기키다

이 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및 민사집행법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으로 할 수 없고,**

권 등은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  
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행정예규 제1061호 2. 다).

4) 반대급부의 기재 여부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고, 또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등기  
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는 없다(행정예규 제1061호 2. 나).

5) 첨부서류

- ①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이 아닌 토지대장, 등기사항증  
명서, 재결서 등은 법정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신청서와 함께 제출받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공  
탁자는 가

이 부분에 다음페이지의  
공탁련선례 추가

## (공탁연선례)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납세증명서 제출을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경우 위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력 유무 (공탁선례 20241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은 토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라는 행정처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손실보상금 청구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 제107조 제1항의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이 되는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 관리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의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한다면 이는 피수용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내지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피수용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미제출을 이유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0조 제2항 및 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보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으로 기재한다(행정예규 제1061호 4. 나).

3)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표시 여부

- ① 민법 제487조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으로 인하여 질권,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질권, 전세권, 저당권을 표시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20조 제2항 제6호).
- ② 그러나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를 기재해야 할 경우는 없다. 수용보상금 공탁으로 인하여 수용대상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이는 수용의 효과, 즉 원시취득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한 소멸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1345호... 로 수정

가 아닌 관계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공탁자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안 된다(행정예규 제1061호 2. 다).

4) 반대급부의 기재 여부

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 없고, 또한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불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할 수는 없다(행정예규 제1061호 2. 나).

5) 첨부서류

- ① 일반 변제공탁과 마찬가지로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이 아닌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공탁자란에 기재하여야 하는 안 된다(행정예규 제1061호 2. 다).

- ② 다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치분이 있는 경우 그 가치분권자는 종전 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있을 뿐 직접 그 소유권이 가치분권자 자신에게 속한다고 다투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가치분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다(대판 2009.11.12, 2007다53785). **그러므로 이 경우 공탁근거법령은 토지보상법 제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는 '부동산 소유자(가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되, 위 가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가치분의 효력은 가치분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만약 약 위와 같이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음에도 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공탁으로 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해행위취소로 인하여 원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되더라도 원권자 명의의 다른 권익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9.24, 2002다33069 참조). 수 없음은 물론이다.

**이 부분 모두 식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더라도, ㉠ 수용대상토지에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등기9)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와 ㉡ 수용대

181 아래부분 부터 다음 187 아래부분까지 모두 삭제하고 그 다음 페이지 내용  
으로 교체

볼 수 있다.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등기사항증명서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관하여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  
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국·도·군·시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  
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甲 또는 乙”로 표시하여야 한다(대판  
1992.10.13, 92누3212).

이하  
삭제

(3) 등기사항증명서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기 고지거나 가시이 고지키전에 레차서 보토이 소유권과 시지적으르 가오 거시서서 보사그오

7. 토지보상법 제39조 제1항(담보공탁)

- ①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로써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고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 ② 이 경우의 공탁은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의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담보공탁의 성질을 갖는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 등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담보공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동법 제4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187 위 부분까지 모두 삭제하고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교체

04 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 ①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한 때에는 수용개시일에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취득된다(토지보상법 제41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 **(2) 수용대상토지에 예고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구 부동산등기법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2011. 4. 12. 개정 부동산등기법에서 폐지되었고, 그 후 9년이 지난 2020. 2. 4. 개정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 시행 2020. 8. 5.) 부칙 3조 2항 "법률 제16912호 부동산등기법 일부 개정법률의 시행일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예고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재 수용대상 토지등기부에 예고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등은 이미 종결되었음에도 수소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말소촉탁이나 등기관에 의한 직권말소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예고등기가 존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유권말소소송 등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공탁원인사실란 기재나 첨부서류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자가 다른 중복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자가 다른 중복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누가 진정한 소유권자인지 확정하는 기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가 디투어지고 있으므로 그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토지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어 상대적 불확지공탁 사유가 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피공탁자는 소유권자 갑 또는 소유권자 을이 될 것이다.

#### **(4) 등기기록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유하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공유지분을 보통의 소유권과 같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수용보상금도 토지공유자의 공유지분별로 지급하여야 하고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정공탁을 공유자별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등기기록상 공동소유자들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사업시행자로서는 보상금을 받을 자인 공동소유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어 개인별보상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피공탁자는 공동소유자 전부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에 위 공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5) 분할전 토지의 토지대장과 분할 이후 토지대장의 소유명의인이 다른 경우**

미등기토지에 대한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공탁에 있어 분할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갑(甲)이 사정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본건 토지로 분할된 이후의 토지대장에는 을(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다면 갑(甲)과 을(乙)중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갑(甲) 또는 을(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건물의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그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과실없이 누가 진정한 수용대상 건물의 소유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또는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 **(6)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보상금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가처분권자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을 다투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부동산 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가처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뿐 채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는 없고, 공탁근거법령을 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 피공탁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되, 위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이 때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채무자의 공탁급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 **2) 상대적불확지공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및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공매공고(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포함) 등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도 현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을 부정하는 물권적 분쟁은 아니므로 현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지급청구권자임에 변함이 없고, 따라서 이 경우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은 물론 다른 공탁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

우리 공탁제도상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지보상법 40조 2항 2호는 예외적으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허용하고 있다.

이하는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1345호)에 따른 구체적인 사례이다.

(1)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② 대장상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 ③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2)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즉 수용대상토지의 등기기록상 소유자의 주소 표시 증 번지가 누락된 경우에는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3) 등기부의 일부인 공동인명부와 토지대장상의 공유자연명부가 멸실된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4)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공탁자는 "망 갑(주소 기재)의 상속인"으로 기재한다.

(5) 피수용자의 등기기록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로 되어 있고, 그와 다른 주소지를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알 수 없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절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

(6) 사업시행자가 과실없이 영업손실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 (관련선례)

1. 사업시행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토지보상법 70조, 71조),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같은 법 75조)뿐 아니라 광업권 등 권리에 대한 보상금(같은 법 76조),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같은 법 77조)도 절대적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27조, 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위하여 영업시설에 출입하여 영업의 현황 및 영업주의 현황을 방문 조사하였으나, 영업주, 종업원

등이 고의적으로 조사를 회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과실 없이 영업주를 전혀 알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물건조서 또는 조사를 담당한 자의 진술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같은 법 77조 소정의 영업손실보상금을 절대적불확지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2-177).

## (관련선례)

1.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28조 이하 환지 방식에 의한 공사완료 후 환지처분 등에 의한 청산금을 산정하고, 같은 법 46조 1항에 따른 청산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니, 같은 법 46조 4항에 따라 청산금을 받을 자가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청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하면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2.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2조 2항)
3. 따라서, 토지대장상 주소의 기재 없이 소유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과실 없이 정산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토지보상법 40조 2항 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절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공탁자란에는 "피수용자 불명"이라고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5-1)

##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토지보상법 40조 2항 3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예컨대, 재결이 있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3천만 원을 협의보상금액으로 제시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하였더니 보상금액이 5천만 원으로 재결되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보상을 받을 자에게 지급하되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하여만 공탁하도록 한 것이다. 물론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보상금(위 예에서 3천만 원)도 토지보상법 40조 2항 1호, 2호, 4호의 사유가 있으면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 4.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가압류 또는 체납처분(강제징수도동일)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및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1345호)]

①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는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행정예규 1018호)"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하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불문)의 공탁절차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60호)"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이 경우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있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및 민집248조 1항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토지보상법 40조 2항 4호, 민집 291조 및 248조 1항을 각 공탁근거법령으로 한다.

③ 민법 489조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는 인정하지 않는다.

④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고, 동법 40조 2항 1호.2호.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토지보상법 84조 2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보상법 83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4조의 재결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상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시행지는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의 재결서 정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법 40조 2항 1호:2호: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동법 84조2항)

그러나 이의신청에 의한 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적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증액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이 없는 경우와는 달리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6.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이 증액되고, 사업시행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토지보상법 8조 1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보상금을 증액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종결시까지 수령할 수 없다(토지보상법 85조 1항).

그러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 7. 재결전 수용대상토지의 사용을 위한 담보공탁(토지보상법 39조 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 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을 기다려서는 재해를 방지하기 곤란하거나 그밖에 공공의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담보로써 토지수용위원회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하고 즉시 해당 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공탁은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채무를 담보한다는 점에서 담보공탁의 성질을 갖는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담보공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다.

③ 그러나 이의신청에 의한 재결절차는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수용재결과는 확정적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 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3.10, 91누8081).

④ 한편 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재결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은 재결실효 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이 이미 재결신청 청구를 한 바가 있을 때에는 재결실효일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겨서 재결신청을 하면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재결실효 후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결신청을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기간 동안은 지연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재결실효 후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협의절차를 다시 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협의가 진행된 기간은 그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대판 2017.4.7, 2016다63361; 2017.4.7, 2017두30825, 2017두30832 참조).

나. 수용보상금 공탁이 무효인 경우

① 사업시행자가 일단 수용재결을 신청한 후 보상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수용재결은 무효(대판 1986.9.20, 95다17373). 위와 같이 실효된 수용재결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서 한 이의재결도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된다(대판 1986.

위 부분 삭제

## 다. 공탁 흠결의 치유

- ① 보상금의 일부만을 공탁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한 공탁은 무효이지만 피공탁자가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고 그 공탁금을 수령하면 무효 원인인 하자가 치유되어 공탁일에 소급하여 그 공탁은 보상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 ② 공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탁이거나 일부 공탁, 조건부 공탁 등 하자 있는 공탁에 대하여 피공탁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그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된 공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 ③ 또한 수용개시일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과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대법원 2014다1548).

위 부분 삭제

05

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 1. 의의

을 정정하고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유보한 채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미 실효된 수용재결이 다시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8.24, 92누9548).

## 05 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

### 1. 의의

- ① 공탁신청이 수... 이선을 해하지 아니하  
는 ...
- ② 공... 정정”에  
서 ... 설명한다.

190-193페이지

05절 수용보상금 공탁서 정정...파트  
모두 삭제

### 2. 공탁자의 공탁서 정정의무(절대적 불확시공탁)

- ①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특정되거나 적어도 채권자가 상대적으로나마 특정되는 상대적 불확지의 공탁만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의 공탁은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 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실체법상의 채권자는 피공탁자로부터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받거나 자발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면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④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채권양도·전부명령 그 밖의 원인으로 승계받은 자는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사례

- ① 수용대상물인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직접 공탁관에게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구태여 피공탁자가 위 소유권 분쟁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공사장)의 직원을 피공탁자로 하

위 부분에 다음 페이지 3개 등기선례 추가

## (관련판례)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어 공탁한 경우 변제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그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판2007. 2. 9. 2006다 68650).

## (관련선례)

등기관이 등기부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등기기록상 종전 소유자 "갑(甲)"을 "을(乙)"로 잘못 이기한 결과.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 성명을 "을(乙)"로 기재하여 공탁한 경우. 위 "갑(甲)"의 상속인은 공탁자인 사업시행자에게 피공탁자 표시를 정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해 줄 것을 촉구할 수 있다. 만일,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194).

## (관련선례)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실명이 아닌 예명인 경우에는 수용대상 토지의 실제소유자가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지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정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첨부하여 한다(공탁선례 2-207).

확정한 우 출급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공유사를 전원의 성냥한 시분을 알 수 없어 공탁한 것이므로 공유자 중 일부가 자기 지분에서 일정부분 차감함으로써 공유지분 합계를 1로 하여 산정된 개인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제2-203호)

④ 불가분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에는 수인의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공탁금을 출급하여야 한다. 합유로登記되어 있는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되기 전에 사망한 5명을 포함한 16명의 합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이후 합유자 중 2명이 공탁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잔존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01006-1호).

⑤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토지의 공유자로 표시된 甲과 乙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甲의 단독 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 하더라도 甲이 단독으로 공탁금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01006-1호)

위 부분을 삭제하고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교체

④ 불가분채권의 목적물이 공탁된 경우에는 수인의 피공탁자 전원이 함께 공탁금을 출급 청구하여야 한다. 조합재산에 대하여 토지수용하고 그 보상금을 합유자 전체명의로 공탁하면서 합유자의 지분을 특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보상금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위 공탁금을 출급 청구함에 있어서는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그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합유자 간의 특약 유무에 대한 소명 없이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 (관련선례)

합유로登記되어 있는 토지를 기업자(공탁자)가 수용하고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서 수용되기 전에 사망한 5명을 포함한 16명의 합유자를 피공탁자로서 공탁한 이후 합유자 중 2명이 공탁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잔존 합유자들은 사망자에 대한 사망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잔존 합유자 전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006-1).

- ⑥ 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어 공탁한 경우, 변제 공탁제도가 본질적으로는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며 공탁관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질 뿐이므로 피공탁자와 정당한 보상금수령권자라고 주장하는 자 사이의 동일성 등에 관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는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나 그에 대한 불복을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점, 누가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인지는 공탁자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 점, 피공탁자 또는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라고 하더라도 직접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공탁금수령권자이면서도 공탁관으로부터 공탁금의 출급을 거부당한 자는 그 법률상 지위의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탁금출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7.2.9, 2006다68650).
- ⑦ 등기부상 소유명의를 예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를 예명으로 하여 공탁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는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3) 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된 경우

(1) 개설

- ① 보상금은 관할 공탁하게 된다

**이 부분 모두 삭제(앞 내용과 중복)**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금 채권자이어야 하나

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탁자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공  
는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7.2.9, 2006다68650).

195 아래부분 부터 다음 202 부분까지 모두 삭제하고 그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교체

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포함)을 받아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3) 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된 경우

(1) 개설

① 보상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서에 기재된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게 된다. 그런데 재결서에 기재된 토지의 소유자가 진실한 보상금 채권자이어야 하나

진실한 재결서에 기

그런데 을 공탁하였으

나 수 은 불가능하므

로 사 지수하게 되면

소급 문제가 발생

한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후 소유권 등의 변동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토지보상법 제40조 제3항), 그 경우에 공탁금을 받을 권리를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21조). 즉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은 피공탁자의 정전 없이도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사항

이 부분 이하 부터 이하  
다음 202 페이지 까지 삭제

공탁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 중 일부가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제2-74호).

- ⑤ 매수인이 매도인인登記부상 소유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登記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사업시행자가 위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 〇〇〇의 상속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개시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 당시의登記부상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登記 확정판결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다. 또한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매수인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판결(화해·조정조서 포함) 역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은 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거나 피공탁자가 임의로 양도하지 아니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238호 참조).

13) 그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에 의하여 직권말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3)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된 경우

#### (1) 의의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의 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가 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하므로(토지보상법 40조 3항 참조), 수용개시일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계 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 그 승계인은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소유권 승계사실 증명서면(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수용재결경정서)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직접 출급 청구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21조 참조).

그러나 수용의 개시일까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승계받지 못한 자는 승계인으로서 공탁물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없고,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서 출급청구하거나, 피공탁자가 임의로 양도해 주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첨부해서 공탁물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결국 승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공탁물 출급절차가 달라지게 되므로 승계인의 인정기준이 문제되는데, 수용개시일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우선 매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이 승계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가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마쳐져야 할 것이고, 상속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소유권의 승계는 그 승계원인사실이 수용개시일 전에 이루어졌을 때만 정당한 승계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용대상토지를 매수하여 그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았다 하더라도, 수용의 개시일 이전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면 186조에 의하여 매수인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결국 그 매수인은 승계인이 될수 없고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야만 가능하다.

### (관련선례)

수용의 시기 전에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보상금이 승지전의 소유자에게 공탁되어 있는 경우 그 승계인(사업인정고시 전의 승계인이 자진하여 출급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피공탁자의 정정 없이도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동본 또는 수용재결정정서)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2-193호).

## (2) 구체적인 사례

### (가) 판결

① 매수인이 매도인(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용의 개시일 이후에 경료한 경우 그 매수인은 피공탁자인 매도인으로부터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한 직접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②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자가 수용의 개시일이 지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을 집행하여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도 없고 피공탁자의 승계인으로서 공탁물을 출급 청구할 수도 없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사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정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성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정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나) 명의신탁

종중이 수용대상토시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의 개시일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면 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취득하는 것이고 종중은 명의수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지 않는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피고로 하여 명의신탁의 해지를 이유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는 없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종중은 그 판결에 기하여 직접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경우 공탁원인 소멸이나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

## (관련선례)

1. 명의수탁자 '망 갑(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망 갑(甲)'의 상속인들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고 공탁관에게 양도통지를 하도록 하거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고(상속인들)는 원고(명의신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소관 공탁관)에게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통지를 하라'는 내용의 집행권원(판결 등)을 얻어야 공탁금 출급정구를 할 수 있다.
2.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원인의 소멸이나 착오공탁을 원인으로 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이 사안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회수할 수 없다(공탁선례 201001-3)

## (다) 경매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매각대금 납부시에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매각부동산이 매각대금 납부 전에 수용완료 되었다면 매수인이 수용완료 후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매각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또한, 수용완료 당시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피공탁자 명의를 정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으로서 매각의 하자에 따르는 청구권에 기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공탁선례 2-218)

## (관련선례)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2006. 8.8.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 개시일인 2006. 8. 9.자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면, 수용개시일 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갑(甲)은 위와 같이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할 수 없고, 피공탁자인 을(乙)로부터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양도받거나, 을(乙)을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228).

## 나. 불확지공탁

### 1) 상대적불확지공탁

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지본인서명화인서의 발급증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 청구할 수 있고,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 전원을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정보 및 확정증명(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또한,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이 필요 없다.

②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은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③ 예고등기를 이유로 "소제기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 공탁이 이루어지고 그 후 예고등기의 원인이 된 소유권등기말소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승소화정되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별도로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

④ 수용대상 건물 등의 보상금에 대하여 피공탁자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어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경우 일방의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소유권확인판결, 수용대상토지에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가처분채권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하는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토지소유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에서 받은 패소확정의 본안판결을 각 공탁금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그러나 위 ③과 ④의 사례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수용대상토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실체적인 판단 없이 단지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원시취득에 따라 말소할 대상이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판결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관련판례)**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이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들의 승낙서나 그들을 상대로 받은 공탁물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되므로 피공탁자가 아닌 재3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판 2008. 10. 23. 2007다35596).

### **(관련선례)**

공탁자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가처분권자가 있어서 그 토지의 합유자들과 위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 합유자들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해서는 공탁 이후에 가처분권자의 가치분취하로 인한 가치분취하증명원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가처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등이 필요하다(공탁선례 2-231).

## 2) 절대적 불확지공탁

① 절대적 불화지 공작의 경우에는 공탁자(사업시행자)가 나중에 피공탁자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먼저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을 한 후 그로 하여금 공탁금을 출급정구하게 할 수 있고,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포함)을 받아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대적 불화지 공탁에 있어서 위의 같은 공탁금 출급절차에 의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출급청구권을 갖는다는 확인증명서(또는 확인서)만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위 확인증명서는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국가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이 아닌 "토지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판결에 의하여 수용 당시의 소유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을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볼 수 있다.

② 토지수용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사망한 등기기록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이 출급청구하거나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나, 상속인들이 공탁금 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 중 일부가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

또한, 공탁자가 공탁 이후에 상속인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여 상속인들이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상속인들이 공탁금출급청구권화인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계적등본 등 별도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③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토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후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그 상속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망인의 재산상속인" 앞으로 공탁한 경우 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 토지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협의분할을 증명하는 서면(그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로된 경우에는 그 등기가 수용등기로 인하여 직권 말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 및 등기필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④ 구 토지보상법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유사실확인서는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에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하므로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정우에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

다카24816).

- ⑤ 근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에 기하여 가압류만 하고 있던 중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공탁관은 압류와 가압류의 경합을 사유로 하여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게 되므로 그 이후에는 근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 행사를 위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배당가입 차단효로 인하여) 근저당권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아닌 단순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탁선례 제2-158호)

3)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시기

-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8.9.22, 98다12812).
- ② 수용보상금에 제3채무자를 사업시행자로, 공(스과 고타과)인 차선 아르차선

이 부분에 아래내용 추가

⑥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에 회생담보권자인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압류는 효력이 있으나, 추심명령은 무효이다.

## 204 - 206 페이지 페이지

다카24816)

**204 아래부분 부터 다음 206 부분까지 모두 삭제하고 그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교체**

를 위한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배당요청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자는 위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아닌 단순한 가압류채권자들과 안분배분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공탁선례 제2-158호).

### 3) 물상대위

- ① 사업인
- 의 재
- ② 수용보
- 탁한 이

이 부분 이하 부터 이하  
다음 207 페이지 까지 삭제

야 할 것이다.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채무를 공탁하게 되면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수용보상금지급채무는 소멸하게 되므로 위 공탁 이후 제3채무자를 “사업시행자”, 피압류채권을 “소유자의 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 등과 같이 기재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에 대한 무효인 압류가 될 수 있다.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 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 보상금 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로 우선한다고 볼 수 없고,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 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민사채권(2002.1.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206 위 부분까지 모두 삭제하고 다음 페이지 내용으로 교체

07 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회수

1.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 불가

- ①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 추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나 인가되기 전까지나 구타당수 취소한 후 이의 시정요청이 구타

### 3) 물상대위권 행사의 시기 및 종기

①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으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이 확실시되므로 토지수용의 재결 이전 단계에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용보상금이 공탁되기 이전에는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사업시행자로, 공탁된 이후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국가(소관 공탁관)로 하여 압류하여야 할 것이다

② 담보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수용보상금의 지급 전에 압류하여야 하는데,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탁금이 출급되기까지는 그 지급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보상금의 변제 효과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담보물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보상금채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기 전에는 여전히 그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추급이 가능하므로, 그 경우에도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다른 일반채권자가 먼저 가압류나 압류의 집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단 사업시행자가 집행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또는 추심채권자가 추심하고 추심신고를 한 때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이므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담보물권자는 제3채무자(추심채권자)가 집행공탁(추심)을 하기 이전에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지급채권을 압류하거나, 제3채무자(추심채권자)가 사유신고(추심신고)를 하기 이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압류만을 이유로 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사유신고로 인하여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여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담보물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관련판례)**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었으나 그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이상, 그 채권을 국세징수법 81조 1항 3호에 규정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0. 10. 28.2010다46756).

### **(관련판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1. 3. 13. 99다26948 참조).

### **(관련판례)**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체납처분으로 압류를 한 체납처분청이 다시 수용보상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하였다고 하여 물상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수용 전 토지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우선권이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종전 순위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고, 압류선착주의는 조세가 체납처분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구 민사소송법(2002 1. 20,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3, 7. 11. 2001다83777).

## (관련판례)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민소 724조 소정의 부동산경매절치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이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민법 370조, 342조 및 민소 73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이 경우 저당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채무명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대결 1995. 9. 18 95마684).

## 3. 출급청구절차

### 가. 이의유보의사표시

- ① 피공탁자가 공탁금 출급청구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되지만,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출급 청구하였다면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공탁자는 이후 위 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토지소유자가 그 공탁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이를 수령한 때에는 종전의 수령거절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고, 공탁금 수령 당시 단순히 그 공탁의 취지에 반하는 소송이나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공탁불수령에 관한 이의를 유보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③ 당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는 이의를 유보하였으나 그 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그 재결에 불복한다는 뜻을 유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볼 수 없다.

모상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사업시행자는 이익신청에 대한 중앙토시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확정된 손실보상금액보다 초과하여 공탁한 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이유로 하여 공탁법상의 회수절차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244호).

③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8. 9.25, 2008다34668).

④ 수용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중 1명만 공탁법 제2-246호).

**위 부분을 삭제하고(변제공탁 부분과 중복되는 내용)  
아래 내용으로 교체**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 40조 2항에 의하여 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사업시행자는 수용한 날에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그 후 사업의 일부가 변경되어 해당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로 인하여 그 제외된 토지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 기본서 209 페이지 처음부터 ... 231 페이지 까지 모두 아래 내용으로 전면교체

## 2.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

재판상 담보공탁의 종류는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압류(가처분)을 위한 담보공탁(민집 280조, 801조)
- ② 가압류(가처분)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집 288조 1항, 307조)
- ③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인가. 변경.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집 286조 5항, 301조)
- ④ 재심의 소 제기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시 강제집행정지, 실시.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소 500조 1항, 502조)
- 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제기시 강제집행정지. 실시.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소 501조, 50조 1항)
- ⑥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시 강제집행정지,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민집 16조 2항, 34조 2항)
- ⑦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 제기시 강제집행정지, 속행, 취소를 위한 담보공탁(민집 46조 2항, 48조 3항)
- ⑧ 소송비용 담보공탁(민소 117조, 122조)
- ⑨ 가집행 담보공탁(민소 213조 1항)
- ⑩ 가집행면제 담보공탁(민소 213조 2항)
- ⑪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시 강제집행정지, 속행을 위한 담보공탁 (민집 196조3항, 16조 2항)
- ⑫ 가압류,가처분의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인한 가집행선고의 효력정지를 위한 담보공탁(민집 289조 1항, 301조)

## 3. 담보제공절차

① 소송비용의 담보에 있어서 피고의 담보제공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의 제공을 명한다(민소 120조 1항). 이와 같이 담보를 제공할 의무는 법원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므로 담보제공명령이 있어야만 공탁할 수 있다. 담보제공명령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며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통상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발령하기에 앞서 일정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라는 결정(담보제공명령)을 발령하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변론 또는 심문절차에 채무자가 참가한 사건 등에서는 통상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보전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② 유가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수량을 명시한다. 여컨데, "장기 신용채권 제0호 액면 00 원권, 00 장" 등과 같다. 담보제공명령에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의 종류, 수량 등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담보제공자는 민소 126조의 담보물변경절차를 유추하여 공탁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등에 신고하여 그 종류 및 수량의 지정을 받아야만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③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민사소송규칙 22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민집 19조 3항, 민소 122조)

④ 공탁관이 공탁신청을 수리하면 공탁자는 공탁관으로부터 공탁서 1통을 교부받은 다음 공탁물을 첨부하여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하며, 공탁물보관자로부터 공탁물을 납입 받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공탁서를 수령하여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이 2013. 9. 16.부터 보전처분 등 신청절차에 관하여 적용됨에 따라 보전처분 신청사건이나 그 부수사건에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재판사무시스템으로 전송된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로써 공탁서 원본 제출에 갈음할 수 있게 되었다(재일 2012-1 110조 2항). 공탁서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담임 법원사무관 등은 그 사본을 받아원본과 대조한 후 그 사본의 여백에 원본과 대조하여 틀림이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 담임 법관의 검열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원본은 제출자에게 반환한다(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13조).

#### 4. 공탁의 신청

##### 가. 관할공탁소

민소 502조 1항. 민집 19조 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원고나 피고 또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 원본을 제출할 법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될 것이다.

##### 나. 공탁당사자

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자는 법령상 담보제공의 의무를 지는 자이나,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에는 담보제공을 당사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제3자가 담보제공을 하는 것을 금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제3자도 담보제공의무자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공탁할 수 있다.

즉 당사자 본인에게 담보제공명령이 나간 경우에도 제3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의 허가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공탁함을 공탁서의 비고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실무상 공탁자가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사본을 첨부한다.

##### (관련판례)

재판상 담보공탁을 강제집행정지 신청인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가 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은 채무자가 아니라 위 제3자가 갖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경우 채권자가 위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채무자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이었던 기본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터잡아 채무자의 국가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담보제공자인 제3자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결 2018. 9. 18. 2018카담10).
--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나 재판상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이다. 따라서 재판상 담보공탁은 공탁신청 당시에 담보권리자가 특정되므로 공탁서에 그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 다. 공탁의 목적물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지만(민소 122조, 민집 19조), 담보는 성질상 종국에는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탁하는 유가증권은 환가가 용이하지 않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실무상 국채나 공채가 주로 지정되고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시세의 변동이 심한 주권과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공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35호) 양식 제1-2호 양식(금전인 경우) 또는 제1-6호 양식(유가증권인 경우)에 의한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한다. 이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사본을 첨부한다.

### 5 담보권의 성질 및 담보권의 범위

#### 가. 담보권의 성질

① 민사소송법은 담보권리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민소 123조), 민사집행법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다(민집 19조)

② 담보권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법정질권설은 담보권리자가 담보의무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 위에 채권질권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고, 우선적 출급청구권설은 담보권리자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우선적 만족을 얻을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적 출급청구권설은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과 같은 의미의 출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공탁소에서 출급한다는 점에서 법정질권설 중 공탁소에 직접출급하는 방법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법정질권설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질권)의 소멸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공탁물 회수청구권 위에 질권이 존재한다고 보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공탁물회수청구권은 담보권의 불발생 또는 소멸을 조건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담보권이 발생하면 공탁물회수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확정되고 따라서 공탁물회수청구권을 담보권의 목적으로 보는 법정질권설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비판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대판 2015. 9. 10. 2014다34126 등)는 법정질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나. 담보권의 범위

##### 1) 가압류(가처분) 관련 담보공탁

① 가압류(가처분)를 위한 담보공탁은 상대방인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인데, 공탁 이후 가압류(가처분)가 부집행,집행불능된 경우라도 그 가압류(가처분)의 존재만으로 피공탁자는 명예훼손 또는 신용저하, 불안 등 정신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가압류(가처분)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의 비용도 담보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③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 (관련판례)

민집 307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고,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를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는 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민집 19조 8항, 민소 123조에 의하여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대판 1998. 5. 15. 97다58316 참조).

④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대결 2013. 2. 7. 2012마2061 참조). 그러나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응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의 본안소송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를 위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결 208. 10.23. 2009마1105, 2013. 5. 16. 2013마454 참조)

#### 2)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

①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한 담보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해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전 및 이에 대한 완제 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한 집행의 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

**(관련판례)**

집행권원상의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이하 '재판상담보공탁'이라고 한다)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피공탁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공탁자로부터 재판상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자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청구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즉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확정판결,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후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받은 압류명령 정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보,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 위와 같은 서면이 확인된 경우에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한다(대판 2017. 4. 28. 2016다277798).

② 제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두 차례에 걸쳐 한 경우, 2차에 걸친 공탁은 각기 해당 심급에 관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제1심에서 제공한 담보에 관하여는 항소심에서 다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당사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그것에 준하는 경우에 비로소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은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이 된다.

**(관련선례)**

1.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라도 공탁관은 이를 알 수 없으므로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보과 그 송달증명원, 담보취소결정정보과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경우 인가할 수 밖에 없다.
2. 강제집행이 정지된 집행권원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는 강제집행정지 서류인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201004-2),

**3) 이자**

담보공탁의 법정과실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담보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공탁법 7조 단서의 취지가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담보공탁의 경우 공탁금의 이지는 공탁자에게 귀속된다.

## 6 담보권리자의 지급청구방법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952호)에 따르면 담보권리자의 담보의 실행방법은 ①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와 ②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하는 경우만을 들고 있지만, 피담보채권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담보취소에 기초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도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4.11.26. 2003다19188. 대판 2019. 12. 12. 2019다256471 참조).

### 가. 공탁금의 직접 출급청구

① 공탁관은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공탁원인사실에 기재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청구서에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출급 청구한 것으로 본다)한 경우에는 공탁금을 피공탁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보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이행판결과 확인판결을 모두 포함), 이에 준하는 서면(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또는 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첨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피담보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은 공탁자의 부당한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정지 등으로 피공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판결을 말한다.

③ 금전 및 이에 대한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건물인도 및 그 인도 시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내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이나 차임 상당의 손해가 포함되므로, 이에 관한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부분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면이 된다(98다24914 판결 참조).

④ 공탁관은 피공탁자가 제출한 서면이 담보공탁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한 금액 중 일부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출급청구를 수리하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 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공탁관은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피담보채권에 터잡아 민집 278조에서 정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을 출급청구(청구서의 표시를 회수청구라고 기재한 때에도 같다)를 한 경우에도 공탁물을 피공탁자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에, 피공탁자는 공탁금출급청구서와 함께 질권(담보권) 실행을 위한 압류명령 정본,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본, 위 명령의 송달증명, 전부명령에 관한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담보권실행의 신청을 할 때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므로 따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회수청구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

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서와 함께 담보취소 결정정보 및 확정증명,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의한 압류명령 정보,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정보, 추심명령의 송달증명 또는 전부명령의 확정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담보권리자가 공탁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실무상 이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때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더라도 이러한 압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담보조건부 강제집행정지설정에 따라 재판상 담보공탁이 된 후, ① '피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A체납압류, ②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B압류 및 추심명령, ③ "피공탁자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하여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C체납압류가 국가(소관 공탁관)에 순차적으로 도달한 사례에서, 판례는 A체납압류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장래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는 주체일 뿐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고, C체납압류와 관련하여, 피공탁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받은 것에 불과할 뿐 그 회수청구권 자체가 피공탁자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피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C체납압류 역시 무효라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대질 2016. 5. 17. 2015마1933 참조).

**(관련판례)**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04. 11. 26. 2003다19183).

**(관련판례)**

갑 주식회사가 을을 상대로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또 다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담보공탁(후행 가압류에 대한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을의 재산세 등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회수, 지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을은 위 각 가압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각 그 취소와 함께 소송비용을 갑 회사가 부담하는 결정을 받고 각각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갑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갑 회사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는데,

정 세무서도 을의 국세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을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자. 공탁관이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함에 따라 배당절차가 개시된 사안에서,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을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후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 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대신 갑 회사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담보취소결정과 함께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더라도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되므로, 그 실질은 공탁금출급청구와 다르지 않고, 따라서 공탁금에 대한 을의 출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병 지방자치단체와 정 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을의 공탁금회수청구 중 선행 채권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압류취소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공탁금이 담보하는 을의 손해에 포함되지 않고,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위 소송비용에 대하여 을은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며, 을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받았을 뿐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회수청구권 자체가 을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므로, 공탁금에 대한 을의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병 지방자치단체와 정 세무서의 압류는 위와 같이 확정된 소송비용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이거나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에 대한 압류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9. 12. 12. 2019다256471).

#### (업무연락)

재판상 담보공탁 회수청구시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증명" 첨부 관련하여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지급청구 시, 스캔하여 첨부한 위 문서의 인정 여부

1.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으로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규칙 69조 및 73조에 의하여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증명"을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므로 위와 같은 전자문서가 제출된 경우, 일반적인 심사방법에 의하여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고, 위·변조에 의심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공탁시스템에서 공탁사건 상세내역(WKT711)에 링크된 "코트넷사건검색"으로 담보취소 사건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전자문서에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1234호 10조 2항 규정에 의한 보정권고)(2014. 8. 5. 업무연락).

#### 라. 압류의 경합 및사유신고 등

- ① 공탁관은 공탁자의 채권자 등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한 압류가 경합된 경우,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담보취소결정정보 및 확정증명)이 제출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 ② 공탁자의 채권자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가)압류하였거나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면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담보취소결정정보 및 확정증명이 이미 제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공탁자의 채권자가 (가)압류한 때에는 {(가)압류 채권목록의 기재를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고 한 때에도 같다}를 하더라도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관련판례)**

재항고인은 피공탁자로서 피담보채권인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장래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 주체일 뿐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표시한 위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결 2016. 5. 17. 2015마1933).

④ 공탁관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담보권의 실행요건을 갖춘 때(즉 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때)에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다.

**마. 가처분채권자가 담보공탁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으로 인하여 가처분채무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으로 일정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 피공탁자로서 담보권리자인 가처분채무자는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한편 가처분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가처분채권자가 제공한 담보공탁금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하므로, 가처분채무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면 이는 별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런데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424조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없다. 그리고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별제권이라 하더라도, 별제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관하여 우선적이고 개별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일 뿐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별제권의 행사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이는 파산절차 외에서 파산채권을 행시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서는 가처분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인판결을 받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한 후, 민법 354조에 의하여 민집 273조에서 정한 담보권 존재 증명 서류로서 위 서면을 제출하여 채권에 대한 질권 실행방법으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공탁금 출급청구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또한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보하여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직접 출급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대판 2015. 9. 10. 2014다34126)

## 7 공탁물의 회수

### 가. 공탁물의 회수청구

#### 1) 보전처분 결정전

보전처분 결정전에 그 신청을 취하하였거나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담보취소절차 없이 결정전 취하증명서 또는 각하결정정보으로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 2) 보전처분 결정후

① 공탁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보 및 그 확정증명으로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고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담보권리자가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담보취소 결정정보 및 확정증명과 압류 및 추심명령정보(송달증명 포함)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보(확정증명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공탁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피담보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이라면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보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③ 2인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공탁을 하면서 각자의 공탁금액을 나누어 기재하지 않고 공동으로 하나의 공탁금액을 기재한 경우 공탁의 내용은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공탁자들은 균등한 비율로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담보취소결정 등으로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 공탁자 중 1인은 공탁금 중 1/2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분담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자들 내부 사이에 별도로 해결할 문제이다. 제3자가 위와 같은 2인의 공동공탁자 중 어느 1인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공탁자가 실제로 담보공탁금을 출연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압류 및 추심명령은 공탁금 중 1/2의 한도 내에서 효력이 있다(2015. 10. 6. 사법등기심의회관-3536 직권선례).

### 나. 담보의 취소

#### 1) 의의

① 담보의 취소란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담보의 필요(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법은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한 때 또는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민소 125조 1항·2항) 반드시 법원의 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②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담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다. 승계인은 포괄승계인은 물론, 담보제공자의 담보물반환청구권(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 및 압류·전부·추심명령을 받은 사람과 같은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역시 담보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 2) 담보취소의 사유

### (1) 담보사유의 소멸

담보제공의 원인이 사실이 부존재하거나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담보제공자(공탁자)가 본안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때가 이에 해당한다.

즉 가압류·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는 담보제공자가 본안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담보의 사유는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가압류집행이 불능인 경우, 가처분명령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집행기간을 도과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도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는 보전처분의 존재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신용훼손이나 정신적 손해를 주었을 수 있고, 또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소심의 소송절차에서 담보제공자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다고 보므로,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야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다. 그러나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다.

### (2) 담보권리자의 동의

① 담보제공자는 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증명하여 담보취소의 신청을 할 수 있다(민소 125조 2항). 담보권리자의 동의는 공탁물에 대한 권리의 포기라고 인정되므로, 동의가 있는 이상 법원은 본안사건 종료 전이라 하더라도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담보취소의 동의는 담보의 전부에 관하여 함이 보통이겠지만, 담보의 일부에 관한 동의도 허용되므로 이 경우엔 담보의 일부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② 보전처분을 위한 담보공탁이 성립된 후 보전처분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 담보취소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리자와 담보취소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별도의 담보권리자의 동의서나 항고권포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3) 권리행사 최고기간의 만료

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한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사유가 된다(민소 125조 3항).

② "소송의 완결"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기, 즉 담보의 피담보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존재와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권리 행사나 금액 산정에 특별한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보전처분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위법 부당한 보전처분 및 그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전처분 신청이 취소되고 그 집행마저 해제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와 범위가 일응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보전처분에 관한 본안소송이 이미 제기되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계속 중인 본안사건까지 확정되어야만 소송 완결로 인정할 수 있다(대결 2010. 5. 20. 2009마 1073 전원합의체).

③ 권리행사최고는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게 한다. 법원은 사건이 완결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완결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최고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데 권리행사기간은 통상 1~2주 정도이다. 담보권리자의 주소불명 등 공시송달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해 공시송달할 수 있다.

④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피담보채권 자체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이어야 한다.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제기, 지급명령, 제소전화해 신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리행사기간 안에 또는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일단 담보권리자에 의한 소제기 등의 권리행사가 있었으나 그 후 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되는 등의 이유로 권리행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때에는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대결 2008. 3. 17. 2008마60).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이미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보아 담보취소를 할 수 없다.

최고에서 정한 권리행사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담보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한 사실을 증명하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없고, 또한 담보취소결정이 있었다라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있으면 담보취소결정은 유지될 수 없다(대결 2018. 10. 2. 2017마6092등).

**(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교재 2025년, 220면, 226면**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 1억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乙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5백만 원을 공탁하였다.

**1. 乙의 지급청구와 관련하여,**

- ① 乙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발생에 관한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 ② 위 ①의 경우 甲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집 273조에 따라 담보권실행을 위한 강제집행(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으로 지급청구할 수 있다.
- ③ 乙은 피담보채권이 아닌 일반채권(예,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서도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지는 않는다.
- ④ 위 ①~③의 경우 선행하는 일반채권자 丁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①②의 경우는 피담보채권의 실행이므로 선행하는 전부권 丁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③의 경우는 일반채권자 지위에 있으므로 전부권자 丁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⑤ 乙의 채권자 A는 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2. 甲의 회수청구와 관련하여,**

- ① 본안에서 승소한 甲은 담보취소결정 및 확정증명을 얻어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甲의 채권자 丙도 집행권원을 얻어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甲을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절차를 밟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03절 영업보증공탁**

## 1. 의의

영업보증공탁은 거래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거래가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행해지므로 영업자의 신용이 사회일반에 대하여 보장되지 않으면 안되는 영업이나, 기업의 규모와 내용이 주위의 토지, 건물 등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불가피한 산업에 관하여, 그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기업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담보공탁제도이다.

## 2 영업보증공탁의 종류

- ①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에 의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불카드대금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잔액을 상환할 수 없게 될 때에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및 미상환선불카드의 소지자에게 배당할 목적으로 하는 공탁(여신전문금융업법 25조 1항)
- ②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의 하나로 하여 하는 공탁(원자력손해배상법 5조 2항)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과실로 인하여 또는 자기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하게 한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공인중개사법 30조 8항)

## 3 공탁의 신청

### 가. 관할공탁소

영업보증공탁의 관할은 각 영업보증공탁의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은 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공탁소(여신전문금융업법 25조 2항),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보증공탁은 원력사업자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공탁소(원자력손해배상법 11조)에 각각 공탁하여야 한다.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그 공탁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공탁소 또는 공탁을 명한 관공서 소재지 공탁소 중 공탁지가 임의로 정하여 공탁하면 된다.

### 나 공탁당사자

- ① 영업보증공탁은 영업자의 신용력 확인이라는 목적이 있으므로,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② 또한, 영업보증공탁의 피공탁자는 영업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업자의 사업 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이므로, 피담보채권이 구체적으로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공탁자를 확정할 수 없고, 따라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공란으로 둔다.

### 다. 공탁의 목적물 등

- ① 영업보증공탁의 공탁물도 각 영업보증공탁의 근거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보증공탁물은 현금,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공채, 사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된 후 3개월이 지난 주권 또는 출자지분이 그 목적물이고(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5조), 원자력손해배상법상의 보증공탁물은 금전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

다(원자력손해배상법 11조).

② 공탁의 목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1235호) 양식 중 제1-4호 양식을, 공탁의 목적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1-7호 양식을 각 사용하여 작성한다.

#### 4. 공탁물의 출급

① 영업보증공탁은 해당 영업거래로 인해서 생기는 채권을 취득한 불특정다수의 거래 상대방이나 기업활동에 의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담보로서 공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공탁자인 사업자와의 거래에 의하여 채권을 취득한 자, 또는 그 기업활동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공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담보권 또는 공탁물출급청구권)를 갖는다.

② 영업보증공탁은 공탁신청 당시에는 아직 피공탁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공탁 후 공탁자와의 영업거래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급청구권의 존재와 그 범위의 확정, 즉 공탁자와의 영업상의 거래 등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공탁물의 출급청구방법에 대하여 각 근거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각 근거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영업거래 등으로부터 입은 손해라는 것을 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 등 포함)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공탁물의 출급청구권 행사에 관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공탁불출급청구를 금융위원회의 배당 등의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여신전문금융업법 26조 참조), 원자력손해배상법이나 구 신탁업법에 의한 보증공탁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5. 공탁물의 회수

① 영업보증공탁은 착오공탁이 아닌 한, 공작의 원인이 소멸되어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영업보증공탁의 종류에 따라 공탁원인의 소멸사유도 일정하지 않으나, 공탁물의 회수청구방법에 대하여 각 근거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각 근거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 등으로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고 공탁물을 회수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공탁을 한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25조 4항), 원자력손해배상법에 의한 공탁은 일정한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원자력손해배상법 13조), 공인중개사법은 공탁물의 회수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는 없으나,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30조 4항). 이와 같이 공탁 근거법령에 공탁물 회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사업폐지 등을 원인으로 한 감독관청의 승인서 등을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 청구하면 될 것이다.

#### (관련선례)

대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는 감독관청의 승인은 있으나 공탁서 원본이 없다면 보증지급의 방법으로 영업보증공탁의 변형물인 대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속공탁금은 공탁원인 소멸과 무관하므로 감독관청의 승인서의 첨부를 요건으로 하지는 않고 기본공탁의 법정과실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업보증공탁의 회수청구권자가 청구권을 가진다(공탁선례 2-270),
--

**(관련선례)**

신택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8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기 전) 107조 1항에 따라 영업보증공탁을 한 후 신택업자의 자기자본 규제와 영업보증공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어 공탁의무가 폐지된 경우, 신택업자인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공탁선례 2-266).

**04절 납세담보공탁**

**1. 의의**

- ① 납세담보공탁이라 함은 국세나 지방세의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그 징수를 유예할 때에 그 납부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한 경우에 그 담보제공의 방법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을 말한다.
- ② 납세담보는 세법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서 납세자가 자금부족 등으로 납세의무를 납부기한까지 이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이행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또는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납세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다릴 경우에는 종국적인 조세징수가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된다.

**2 납세담보공탁의 종류**

- ① 납부기한 등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된 국세의 납세담보공탁(국세징수법 15조)
- ②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 유예된 지방세의 납세담보공탁(지방세징수법 27조, 105조3항, 지방세기본법 67조 1항).
- ③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시 납세담보공탁(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조1항)
- ④ 주세의 납세담보공탁(주세법 21조, 24조)
- ⑤ 개별소비세의 납세담보공탁 (개별소비세법 10조5항)
- ⑥ 관세법에 의한 납세담보공탁(관세법 24조) 등

**3 공탁의 신청 등**

- ① 납세담보공탁의 경우에는 각종 세법에 관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해당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다. 납세담보공탁의 공탁자는 국세나 지방세의 징수유예, 연부연납의 허가 등을 구하려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가 될 것이고, 피공탁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과세관청이 되고, 공탁서에는 국(소관: 00세무서) 등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 ② 납세담보물로 공탁이 가능한 것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다(국세기본법 20조 1항, 지방세기본법 67조 1항).

**4 공탁물의 출급**

- 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지방자치단체

의 징수금)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담보로써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를 징수한다(국세징수법 2조 2항, 지방세기본법 69조 2항).

② 납세담보로 공탁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급청구하려면 국세징수법 22조, 지방세기본법 69조 2항의 담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다시 말하면 공탁자가 의무를 불이행하여 공탁물을 세금에 충당하는 것을 입증하는 서면을 규칙 33조 2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의 입증서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5 공탁물의 회수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납부된 때에는 납세담보된 공탁물에 관하여 지체 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국세징수법 23조, 지방세기본법 70조). 이 경우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시행령 23조 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49조 1항), 공탁자는 이러한 서면을 첨부하여 담보원인이 소멸되었다는 것을 입증한 후 공탁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회수청구한다.

# Chapter 4 집행공탁

## 01절 총설

### 1. 의의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절차나 보전처분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추심채권자 등)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집행공탁은 집행절차의 일환으로서 집행절차를 보조하여 집행절차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2. 집행공탁의 종류

#### 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 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액 공탁(민집 248조)
- ②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 전 압류경합시 추심금의 공탁(민집 236조 2항)

#### 나. 부동산 또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 ① 부동산 매각허가결정의 항고를 위한 보증금 공탁(민집 180조 3항, 268조)
- ②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미확정된 배당금의 공탁(민집 160조 1항)
- ③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금 공탁(민집 160조 2항)
- ④ 선박강제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채권액 등의 공탁(민집 181조 1항)
- ⑤ 부동산인도집행시 강제집행대상 아닌 동산의 매각대금 공탁(민집 258조 6항)

#### 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 ① 집행관의 압류물 매각대금 공탁(민집 198조 4항)
- ② 채권자들의 배당협의 불성립시 집행관의 확정채권 공탁(민집 22초조 1항, 2항)
- ③ 채권만족시 미확정채권의 공탁(민집규 156조 1항)
- ④ 채권불만족시 미확정채권의 공탁(민집규 155조 4항)
- ⑤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대한 이의시의 공탁(민집규 154조)

#### 라. 보전처분관련

- ① 가압류해방금의 공탁(민집 282조)
- ② 가압류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 관리인의 청구채권액 공탁(민집 294조)
- ③ 집행관이 가압류한 금전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제296조 4항)
- ④ 집행관이 가압류물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는 경우(민집 296조 4항 5항)

## 02절 금전채권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 1. 총설

#### 가. 의의

2002. 7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나 압류에 관하여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의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구민소 581조 1항), 압류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금전채권에 관하여 1개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것만으로는 제3채무자는 공탁을 할수 없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서는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권리공탁)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조 1항, 291조),

집행공탁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는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양지는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8채무자가 하는 공탁은 민집 248조 1항에 의한 권리공탁과 동법 동조 2항 또는 3항에 의한 의무공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당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함으로써 자신의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된 것을 말하고, 후자는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의 송달을 받거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한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후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또는 (가)압류 채권자가 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해당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액을 의무적으로 공탁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압류가 결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집 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 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다207774)

#### (관련선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대위채권자에게 직접 이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판결이 확정된 후 피대위권리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순차적으로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공탁선례 202406-3)**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은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또는 변제수령권능에 불과하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공탁근거 법령조항을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으로 기재하여 압류결정문사본을 모두 첨부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고, 공탁

한 제3채무자는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장 먼저 송달받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관할공탁소

민집19조 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어느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다.

#### 다. 공탁의 당사자 및 목적물

① 민집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공탁자는 제3채무자이고, 집행절차에 부수해서 행해지는 집행공탁의 성질상 제3자는 공탁자(제3채무자)에 갈음하여 공탁할 수 없다.

② 민집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의 피공탁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피공탁자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므로 공탁신청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으며,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기재하였더라도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민집 248조 1항에 의하여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액 전액을 권리공탁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 통지서도 발송하도록 하였다. 공탁금 중 압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이기 때문이다.

③ 민집 248조의 집행공탁에 있어서 공탁물은 금전에 한한다.

#### 라. 공탁비용의 지급

① 민집 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공탁신고서 제출비용을 집행법원에 신청하면 공탁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② 공탁자인 제3채무자가 신청한 공탁비용의 우선순위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집행법원이 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금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배당절차 전에도 집행법원의 지급결정에 기초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엄밀하게는 배당금으로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를 배당표에 적는다면 절차비용보다도 우선하는 최우선순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 마. 사유신고

##### 1) 의의

제3채무자가 민집 248조의 집행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금 중에서 압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법률상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시기는 민집 252조에 정해진 시기 즉 공탁한 때가 되겠으나. 배당법원은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때 공탁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 (관련판례)

제3채무자가 압류나 가압류를 이유로 민집 248조 1항이나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은 소멸하고,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

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민집 227조 3항, 291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가압류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그에게 송달된 경우, 압류·가압류명령은 집행공탁으로 이미 소멸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것이어서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된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후에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더라도, 공탁사유신고서에 이에 관한 내용까지 기재되는 등으로 집행법원이 배당요구의 종기인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채권자가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거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라면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되나,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설령 이러한 압류·가압류명령이 공탁사유신고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한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정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판 2015. 7. 23. 2014다87502).

## 2) 사유신고서의 제출등

① 사유신고서에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 등을 기재하고, 공탁자인 제3채무자는 이 사유신고서와 공탁서 등을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할 수 있다. 이는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배당 등의 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유신고할 수 있는 권리를 더불어 인정한 것이다.

③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라면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나(민집규 172조 3항),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서가 제출되거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압류명령이 아닌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 또는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으로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상당하다.

④ 사유신고서를 접수받은 집행법원은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고, 사유신고가 적법하면 이를 수리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한다.

공탁자가 공탁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후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가 공탁관에게 위 불수리결정문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불수리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신고로 인해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이른바 배당가입 차단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 2 권리공탁(민집 248조 1항)

### 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아닌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

#### 1) 의의

원래 제3채무자의 권리에 의한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집행관계에서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압류된 채권액(=압류액)에 한하여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3채무자로서는 채무 중 일부만이 압류된 경우에 압류액은 집행공탁하면서도 압류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액은 따로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어 공탁하여야 하는 등 채무관계의 완전한 청산을 위하여는 압류가 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그 반면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한다고 하여 채무자에게 큰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채권이 압류되면 채권자의 경합이 없더라도 제3채무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압류액 또는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여 채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여 이 문제계 관한 입법적인 해결을 도모하였다(민집 248조 1항).

#### 2)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 가) 법적 성질

금전채권 전부에 대한 압류가 있어 그 전액을 공탁하거나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압류가 있어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집행공탁에 해당되므로, 그 구체적인 공탁절차도 집행공탁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 나) 공탁절차

- ①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집행공탁하는 경우 공탁한 때에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고(민집 252조), 사유신고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어(민집 247조 1항)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 ② 따라서 이 경우 피공탁지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단계에서나 확정되고 공탁 신청 당시에는 피공탁자가 있을 수 없어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으므로 공탁통지서도 첨부할 필요가 없고, 다만 실무상 압류결정문 사본을 첨부하고 있다.
- ③ 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이 필요하고,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집행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집행채권자가 1인일 경우에는 신속한 배당절차를 위하여 재판예규 951호 "채권등에 대한 배당절차사건의 처리기간 및 간이 배당절차에 관한 예규"가 마련되어 있다.

#### 3) 금전채권의 일부가 압류되어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

##### 가) 법적 성질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민집 248조 1항에 의하여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이다.

## 나) 공탁절차

① 제3채무자가 금전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1건의 공탁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공탁신청 절차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규칙 28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 및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에게 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 하여야 한다. 결국 압류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해서만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그 금액에 한해서만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는 것이다.

② 피공탁자가 공탁금 중에서 압류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이 필요하고, 출급청구권 증명서면으로 집행법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그러나 공탁금 중에서 압류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서 대신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민법 489조 1항에 의해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관련판례)

집행공탁과 민법의 규정에 의한 변제공탁이 혼합되어 공탁된 이른바 혼합공탁의 경우에 어떠한 사유로 배당이 실시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한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므로,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배당표에 배당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공탁금에서 적법하게 변제받을 지위에 있는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통하여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배당재단이 될 수 없는 부분을 경정하여 이를 자신에게 배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2006. 2. 9. 2005다28747 등 참조).

다만 이 경우에 집행공탁에 의한 정당한 배당재단 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배당이의의 사유가 없는 한 종전의 배당표에서 정한 집행배당순위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자의 채권이 배당표상의 다른 집행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거나 또는 적어도 동순위이기 때문에 그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더라도 여전히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범위에서는 배당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결국 그 배당액을 넘는 범위에 한하여 배당표의 경정이 허용된다(대판 2014. 11. 18 2012다117461)

## (관련판례)

민집 247조 1항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는 배당을 전제로 한 집행공탁에 대하여만 발생하므로,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이 혼합된 소위 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고 그 공탁사유신고를 한 후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가입차단효로 인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지만,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집행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고,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부터 배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08. 5. 15. 2006다74693).

**(관련판례)**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제3채무자가 민집 248조 1항에 의하여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 차단효과 발생할 여지가 없다(대판 2008. 5. 15. 2006다74693).

**(관련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245 및 247면.**

甲은 乙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丙의 압류·추심명령(압류액 7천만 원)을 송달받고, 甲은 채무 전액(1억 원)을 공탁하는 경우 乙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며, 압류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재단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므로 압류액, 즉 7천만 원만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압류액을 초과하는 3천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乙은 출급청구할 수 있고, 甲은 민법 489조 1항에 의하여 회수청구할 수 있다.

그 후 피공탁자 乙의 공탁금출급청구권(3천만 원)에 대하여 丁의 전부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액 3천만 원)과 戊의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액 3천만 원)이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였다면, 丁과 戊의 압류(압류액의 총액 6천만 원)가 경합하므로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丁의 압류를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민집 248조의 집행공탁을 하거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여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게 되면 배당절차(타배)가 개시된다.

위 사례에서 甲의 집행공탁 및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배당절차사건과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개시되는 배당절차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각자 따로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나.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경합이 있는 경우의 공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금액보다 많은 압류의 경합(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포함)의 경우에도 민집 248조 1항에 의한 공탁이 가능하다. 그 경우의 공탁은 전형적인 집행공탁이므로 그 공탁절차도 전술한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보다 많은 압류의 경합(압류와 가압류의 경합 포함)의 경우에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로 확장되므로, 금전채권 중 일부만 공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관련판례)**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집 235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집 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계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집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다207774).

**(관련판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는 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로 효력(민집 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결 2016. 9. 28. 2016다205915).

**3 의무공탁(민집 248조 2항·3항)**

**가. 의의**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여기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보에 의한 채권자이든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든 묻지 않고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복압류채권자나 교부정구채권자를 포함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경합하는 사정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공탁청구가 없이 단순히 압류가 경합된 상태라면, 제8채무자가 공탁절차에 의하지 않고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인 추심명령권자에게 채무액을 변제하여도 공탁의무위반이 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그 변제의 효력을 다른 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압류가 중복되어

경합하는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 피압류채권액의 총액이 더 많은 때에는 민집 248조 3항에서 말하는 압류의 경합이 아니므로 채권자의 청구가 있더라도 공탁할 의무는 없다.

③ 그리고 추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는 뒤에 중복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의무공탁의 취지는 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임의로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반드시 집행공탁을 하도록 의무화하여 경합하는 채권자들간의 이해관계를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련판례)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 11. 27. 2008다59391).

#### 나. 공탁의무의 성격

① "공탁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는 면책받을 수 없다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지 않고 그 중 1인의 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공탁정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그러한 정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정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이러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파생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이고, 제3채무자의 실제법상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사유(변제기 미도래, 동시이행항변권 등)가 있으면 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어음·수표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가 없다.

③ 채권자의 공탁정구는 일종의 최고로서 집행법원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특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 보통은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④ 제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의 공탁정구에도 불구하고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민집 249조 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는 추심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 추심소송(민집 249조 1항)은 추심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있다. 추심채권자는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게 될 것이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을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된다.

#### (관련판례)

민집 248조 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집 248조 3항에서 정한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제법상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게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 2. 9. 2009다 88129).

#### 다. 공탁하여야 할 금액

① 민집 248조 2항에 따른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자체에 압류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과 없으므로, 압류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공탁의무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갑의 을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갑의 채권자 병이 600만 원의 채권으로써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여 압류한 후에, 갑의 다른 채권자 정이 5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배당요구한 다음 제3채무자 을에게 공탁을 청구하였다면, 을로서는 당초 압류된 금액인 600만 원만 공탁하면 된다. 그런데 만일 병이 6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효력범위를 집행채권액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민집 248조 2항의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집행채권액이 아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액을 의미하므로 제3채무자인 을로서는 위 예에서 1,000만 원 모두를 공탁하여야 한다.

② 민집 248조 3항에 따른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부로 확장되므로,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예컨대 위 예에서 정이 압류채권자이고, 채권 일부(압류액 500만 원)에 대해 압류했다면 병과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어서 병의 600만 원에 대한 압류도 피압류채권 전부로 그 효력이 확장되고, 정의 500만 원에 대한 압류도 채권 전부로 효력이 확장되므로, 채권자 중 1인인 정이 공탁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인 을은 피압류채권 전액인 1,000만 원을 공탁하여야 한다. 일단 압류가 경합하여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된 후 일부의 압류가 취소되거나 취하되어 압류의 경합이 해소되더라도 확장효는 그대로 유지된다.

③ 압류명령의 효력은 압류명령 송달 후에 발생하는 이자, 손해금에 미치므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후의 이자, 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④ 민집 248조 2항 또는 3항에 의한 의무공탁의 법적 성질도 당연히 전형적인 집행공탁이므로, 그 공탁절치는 전술한 "압류된 금전채권액만을 공탁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 (관련판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

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5. 11. 10. 2005다41443 등 참조, 대판 2014. 7. 24. 2012다91385).

#### 4 공탁의 효력과 공탁 후 압류명령의 실효 등

①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집 2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판4, 23, 2013다 207774). 따라서 공탁 이후에는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취하하거나 또는 취소한다고 해도 배당수령권에 관한 문제로만 남게 된다. 구체적으로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는 배당수령권을 포기하는 의사라고 해석할 수 있고, 압류명령의 취소는 배당수령권의 상실로 볼 수 있다.

② 마찬가지로 공탁 이후에 위 압류명령이 취하, 취소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공탁으로 생긴 배당가입차단효가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효과는 다른 채권자들과의 사이에서 엄연히 남아있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③ 민집 248조 1항에 따라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작이 성립되면 공탁이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제3채무지는 바로 채무를 면하게 되고, 공탁금은 이후 배당재단에 포함되어 배당법원의 관리 하에 놓이게 되므로,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이 성립된 후 그 공탁원인이 된 압류명령의 효력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채무자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지급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공탁자로서 공탁금을 출급해 갈 수 있을뿐,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한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 03절 금전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 1. 의의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변제기 도래시 가압류채무자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어 가압류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 경우 이중변제의 위험이 있고, 또한 자신의 채무를 선이행하거나 동시이행을 하여야만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제3채무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입을 수밖에 없으므로, 채권 가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을 인정할 필요성은 크다.

②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민집 248조 1항 291조) 이 경우 그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집 297조).

#### 2. 공탁의 법적 성질

금전채권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집 291조에 의해 준용되는 248조 1항을 근거조항으로 하여 공탁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의 규정 형식으로만 본다면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집행공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민집 297조),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집 248조에 의한 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따라서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이 되더라도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차단효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아니한다(대판 2006. 8. 10.2005다15765).

#### (관련판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따른 공탁은 민집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판 2019. 1. 31. 2015다26009).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해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집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대판 2019. 1. 31. 2015다

26009).

**(관련판례)**

1. 민법 168조에서 가압류를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가압류에 의한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가압류채권자에 의한 권리행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그 부동산에 대한 집행보전의 목적을 다하여 효력을 잃고 말소되며,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집행법원이 그 지위에 상응하는 배당을 하고 배당액을 공탁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가 장차 채무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여 집행권원을 얻었을 때 배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배당절차가 진행되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매각대금 남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 11. 14. 2013다18622).

**(관련판례)**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를 청구한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미치므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서 기재된 액(이하 '가압류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 기준이 되며,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은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채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게 된다(민집 18조1항 2호 161조 1항). 이 경우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 전부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지만, 반대로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이 가압류 청구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그 확정된 피보전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동순위 배당채권자들과 사이에서의 배당비율을 다시 계산하여 배당액을 감액 조정한 후 공탁금 중에서 그 감액 조정된 금액만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배당채권자들에게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대판 2013. 6. 13. 2011다75478).

**(관련판례)**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상 화해·조정이 성립되거나 또는 화해권고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됨에 따라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민집 160조 1항 2호,

161조 1항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판 2014. 9. 4. 2012다65874).

### 3 공탁신청절차 및 사유신고

#### 가. 공탁신청절차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가압류된 채권액 또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민집 29조, 248조 1항), 공탁이후 그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된다(민집 297조). 따라서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과는 달리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채권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나 미치지 않는 부분이나 모두 공탁신청시에 피공탁자가 있으므로,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근거법령조항은 민집 291조 및 248조 1항으로 기재한다. 또한,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에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공탁통지서 및 우편료(공탁통지서와 공탁사실통지서 송부용)를 납입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공탁금(우편료 포함)이 납입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는 공탁통지서를,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통지서를 각 발송하여야 한다.

#### 나. 사유신고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때에도 그 사유를 서면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본압류를 위한 보전처분에 불과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한 공탁 및 사유신고만으로는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아니하며, 단순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 주는 의미밖에 없다.

② 복수의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된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채권 가압류로 인한 공탁 및 사유신고는 배당절차 개시사유가 안되고 배당가입 차단효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건번호는 부여할 필요가 없고, 단지 그 신고서를 문서건명부에 기록한 다음 해당 가압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 촉탁이 있는 경우에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등본을 포함한 가압류사건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한다.

#### (관련판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대판 2006 3. 10. 2005다15765).

### 4 공탁금의 지급절차

**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출급청구**

- ①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만을 공탁한 경우에는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가 실효되지 않는 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제3채무자가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는 가압류발령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공탁선례)**

1.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 등을 받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는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배당채권자에게 공탁금이 지급된다.

2.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출재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주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의 가압류채권으로 배당된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종래 채권자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 채권에 대한 본안소송이나, 종래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그에대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취득하여 위 1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3. 다만, 이때는 집행법원에서 연대보증인에게 교부하는 증명서 및 공탁관에게 송부하는 지급위탁서에 수령인의 표시를 '가압류채권자 000의 승계인 000'으로 기재하면 될 것이다 (공탁선례 201101-1).

**나. 공탁 이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집 291조 및 248조 1항에 따라 공탁한 후에 그 가압류결정이 취소되거나 신청 취하 등으로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에는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선례)**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고, 위 결정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을(乙)의 병(丙)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갑(甲)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에 제3채무자 병(丙)이 민집 291조, 24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을 하였는데,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 을(乙)이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여 민집 2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을(乙)로서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 취소결정 정보 및 그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때 가압류 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공탁선례 2-281).

**(관련선례)**

금전채권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가압류가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민집 291조 및 248조 1항에 의하여 권리공탁을 한 후,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가 그 중 1개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을 하여 그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면,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는 집행공탁금 중 집행취소되지 않은 나머지 가압류사건의 가압류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하여 공탁통지서, 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보,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282).

**(관련판례)**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보가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대판 2001. 10. 12. 20다19373).

**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 ①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집 291조 248조 따른 공탁은 민집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판 2014. 12. 24. 2012다118785 참조)
- ② 민집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판 2015. 4. 283. 2018다2074 참조). 이러한 법리는 민집 241조, 248조 1항에 따른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집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해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집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대판 2019. 1. 31. 2015다26009).
- ③ 다만 가압류채무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없고,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관련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254 및 261면.**

갑이 을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을의 채권자 병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액 및 청구채권액 각 7천만 원)을 송달받고 갑이 채무전액을 공탁(민집 248조 1항, 291조)한 경우,

① 가압류액을 초과하는 3 천만 원 부분은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가압류채무자 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출급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탁 후 가압류가 취소되면 을은 7천만 원에 대하여도 출급청구 할 수 있는데, 가압류취소결정본과 송달증명이 있으면 되고 별도로 확정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공탁선례 2-281).

② 만일 위 공탁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병(가압류액 7천만 원)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액 7천만 원)을 받은 경우,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따른 공탁은 (그 한도에서) 민집 248조 1항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7천만 원)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집 248조 1항에 따른 집행공탁금 7천만 원에 대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만일 위 공탁 후, 을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정의 압류 및 추심명령(집행채권액 1억 원)이 송달된 경우, 병의 가압류액과 정의 압류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되었으므로 공탁관은 정의 압류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원래 변제공탁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자를 압류채무자로 하여 피압류채권을 "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으로 표시한 압류는 추심권능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이다(대결 2016. 5. 17. 2015마1933 참조).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갑이 병의 가압류결정문(가압류액 및 청구채권액 각 7천만 원)을 송달받고 갑이 채무전액을 공탁(민집 248조 1항, 291조)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권자 병(가압류액 7천만 원)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압류액 7천만 원)을 받은 후 병의 채권자 A가 "병이 수령할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압류한 경우에는, 민집 291조 및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은 병의 압류로 인하여 민집 248조 공탁으로 바뀌어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따라서 병은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대판 2019. 1. 31. 2015다26009). 따라서 병의 채권자 A의 압류는 병이 장래 수령할 배당금지급청구권 내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므로, 공탁관은 병의 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할 때 반드시 A의 압류의 내용도 기재하여야 한다.

## 04절 관련문제

### 1. 집행공탁금의 착오 회수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의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법 9조 2항 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집행채권이 소멸되므로, 민집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은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단순히 압류만 있는 경우와 같으므로 제3채무자는 민집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전부명령이 실제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확정을 알 수 없는 제3채무자는 민집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생기지 않지만(민집 229조 5항), 질권 등 우선권을 가진 채권자인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관련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262 및 269면.

1.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 1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체납압류(압류채무자 을, 압류액 5백만 원)를 한 이후에 병의 을에 대한 600만 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었다면, 체납압류는 민집 229조 5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므로 체납압류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이다(다만 압류명령은 유효). 그런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체납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민집 235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체납압류의 효력이 확장되지 않으므로, 체납압류된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전부명령이 무효일 뿐 나머지 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이 유효하다.

2. 하지만 이 경우도 제3채무자 갑은 행정예규 1060호에 따라 대여금채무 전액에 대하여 민집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 확정여부를 조사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 ☞ 참고) 민집 229조 5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관련판례)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민법 370조, 342조 및 민집 273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전세권설정자에 대해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는 저당채권자보다 단순히 먼저 압류나 가압류의 집행을 합에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전은 물론 그 후에도 목적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위와 같이 전세권부 근저당권자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형식상 압류가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그 전부명령은 유효하다(대판 2008. 12. 24. 2008다65396).

(관련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262 및 269면.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1천만 원에 대하여 C의 전부 가압류결정과 D의 질권실행에 의한 전부 압류 및 전부명령이 순차적으로 갑은행에 도달한 경우 갑의 조치는 ?  
 담보권에 기초한 D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그전에 C의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어 있었다라도 제8채무자로서는 전부명령이 확정되기를 기다려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된다. 이 경우는 본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지만 통상 법의 문외한인 제3채무자가 그 우선순위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도록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제3채무자 갑은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민집 248조 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관련판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집 229조 5항). 그리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는 그 각 채권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가려야 하며, 전자가 후자를 초과한다면 전부명령들은 모두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02. 7. 28. 2001다68839 참조, 2014. 8. 28. 2014다23096).

(관련판례)

[1]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절경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보인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2]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의 집행이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후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 10. 12. 2000다19373)  
 위[1]의 법리는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3채무자가 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의 통지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가압류신청 취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8. 1. 17. 2007다73826).

### 3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 가. 의의

① 체납처분은 협의의 체납처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로 나누어진다. 협의의 체납처분은 과세권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것으로부터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는 절차로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총당배분의 각 행정처분으로 이루어진다.

②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집행법원에 체납액의 교부청구를 하거나(국세징수법 59조),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국세징수법 61조)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판 1994. 3. 22. 93다19276).

③ 이러한 체납처분은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한 강제처분으로 국세, 지방세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특별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에도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할 수 있다.

④ 현재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능하다(대판 2015 7, 9 2013다60982 참조). 그러나 압류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는 전부명령은 그렇지 않다.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전부명령은 위 각압류가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이다(대판 1991. 10. 11. 91다12233 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 참조).

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는 후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나(대판 1999 5. 14, 99다3686 참조), 이러한 경우에도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판 2015. 7.9. 2013다60982) 후 관련 행정예규(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060호))가 2015. 12. 9.에 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와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의 집행 선후에 관계없이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 나.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집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관련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262 및 269면.

같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 1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체납압류(압류채무자 을, 압류액 5백만 원)를 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변제공탁이나 민집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체납처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관련판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비록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집 248조 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속적인 민족을 배제하고 배당절차를 거쳐야만 하게 하는 민집 229조 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민집 236조 2항의 '다른 압류'에는 해당한다(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

※ 참고)

☞ 민집 229조 5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민집 236조 2항

② 제1항의 추심신고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행정예규 1060호

1) 변제공탁

제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2) 집행공탁

가) 총칙

① 제3채무자는 민집 248조 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②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압류결정문 사본(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채권압류통지서 사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을 첨부하여야 하고,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사실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 공탁절차 및 공탁관의 처리

- ①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는 압류명령의 채무자를 기재한다.
- ② 제3채무자는 공탁신청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③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 및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탁관은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공탁금 지급절차

- ①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은 미치지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압류채무자)가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탁자(제3채무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공탁자(제3채무자)가 위 회수청구를 할 경우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관련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262 및 269면.

1.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 1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수원시가 체납압류(압류채무자 을, 압류액 5백만 원)를 한 이후에 병의 을에 대한 100만 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다면, 1,000만 원을 집행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피공탁자란에는 압류채무자 을을 기재하고,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위 공탁금 중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100만 원)은 제3채무자의 사유 신고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체납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500만 원)은 공탁관이 체납압류권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체납압류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400만 원)은 변제공탁의 예에 따라 피공탁자가 출급청구할 수 있고, 공탁자도 회수청구할 수 있다.

2. 만일, 위 사례에서 갑이 1천만 원을 민집 248조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한 후 아무런 지급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정의 압류 및 추심명령(5백만 원)이 공탁소에 도달하였다면, 갑의 공탁금(1천만 원) 중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9백만 원)은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이고, 정의 압류로 인하여 정의 압류액

과 수원시의 체납압류액의 총액(1천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이 피압류채권액(900만 원)을 초과하므로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라. 공탁관이 제3채무자인 경우**

-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위 다) 2) (1) ④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정우에 준하는 정우'가 포함된다.

**마.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채권자의 공탁 및 사유신고 의무**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민집 236조 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1] 현행법상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이고 두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선행하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어 서로 경합된다는 사정만을 내세워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또한 민사집행절차에 따른 압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등 채권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내세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도 없다.

[2]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집 248조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는 민집 236조 2항에 따라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대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채권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금등 채권에 의한 가압류라도 제3채무자는 그 가압류를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참고로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집 248조 1항 및 291조에 의하여 집행공탁한 후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져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추심청구를 하면 공탁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공탁관은 법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3채무자와 같이 볼 수 없다.

(관련선례)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가)압류의 경합없이 단일의 가압류로도 가능하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이하 “가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이하 “체납처분압류”라 한다)가 경합하는 경우에 가압류의 존재만으로 공탁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이하 “압류”라 한다)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사인(私人)인 제3채무자는 위 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법률상 차이점, 우선순위 등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을 통하여 제3채무자를 면책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 이후의 배당절차에 체납처분권자가 참여하는 문제도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선후를 불문하고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이 허용되는 이상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의 공탁(이하 “가압류 집행공탁”이라 한다)을 함으로써 강제집행(징수)과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가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하는 경우에도 같다.

2. 제3채무자는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를 원인으로 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 및 체납처분압류 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탁규칙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 공탁통지서의 발송과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 대한 공탁사실 통지를 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3. 공탁신청을 수리한 공탁관은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고, 가압류채권자 및 체납처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4. 한편,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을 갈음하는 권리로서 그권리의 성질과 범위는 본래의 채권과 동일하다는 점, 가압류 집행공탁은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관으로 바뀌게 되는 변제공탁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전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상 부담은 새로운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한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제3채무자가 가압류 집행공탁을 하게 되면 민사집행법 제297조에 따라 그 가압류의 효력이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3채무자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하여도 면책되고 가압류의 효력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도 공탁

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체납처분권자는 배당절차가 개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가)압류금액 및 체납처분압류금액의 총액이 공탁금을 초과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경우]되기 전에는 공탁관에게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02311).

**(관련판례)**

'국세징수법 35조는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체납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가능하나, 체납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를 존중하여야 하므로, 가압류의 효력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지는 않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기해 채권추심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결(전) 1998. 2. 19. 92마908 참조].

**(관련선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기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이 규칙 58조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신고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이로써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거나 그 후의 배당요구를 차단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 4 12. 2004다 20326, 2012. 5. 24. 2009다88112 등).

**4.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

**1) 의의**

공탁관이 배당금수령채권(배당 잔여금수령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가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기타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이하 "압류명령서 등"이라 한다)을 접수한 경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대법원 행정예규가 지정되어 있다.

**2)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공탁관이 민집 160조에 의하여 공탁한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경우나 규칙 58조에 의한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민집 248조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 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공탁사유신고 이후에 접수한 압류명령서 등의 처리**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공탁금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5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

① 민집 160조, 256조, 268조, 민집규 156조 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등의 공탁, 공탁 이후의 업무처리절차 및 잔고현황의 보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대법원행정예규가 제정되어 있다.

②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에서 사건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배당기일에 채권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는 배당액 및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교부되지 아니한 배당잔여액에 관하여 배당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배당 또는 교부받을 자별로 공탁절차를 취하여야 한다(재민 92-2 2조).

#### 6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① 채권자 경합(압류의 경합 등)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배당금지급청구권 등)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민집 291조, 248조 1항)한 후에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③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④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담임법원사무관 등 또는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의 입장에서 보아 그 우선순위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4조 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민집 248조 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4조 1항 본문).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집 160조 1항 각 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한다(동항 단서).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 날(160조 1항각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다음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4조 2항).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사유신고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

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7조 1항).

## 제5절 해방공탁

### 1 의의

①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집 282조)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299조). 이와 같이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금액이 해방금액 또는 해방공탁금이고, 가압류채무자가 그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민집 282조의 가압류해방공탁이다.

② 가압류는 금전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가압류채무자가 집행목적재산 대신 상당한 금전을 공탁하면 채권자로서는 구태여 가압류집행을 할 필요 없이 채권보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므로 채무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집행을 당하지 않도록 마련한 제도가 가압류해방공탁이다.

③ 가처분의 경우에는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집 282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 (관련관례)

가처분을 발령함에 있어 해방금액을 정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금전재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금전재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과 민집 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집 282조의 규정은 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결 2002. 9. 25. 2000마282).

### 2 법적 성질

① 해방공탁금은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취소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의 목적재산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의 담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 그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결국 가압류해방공탁금은 가압류목적물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경우에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게 되는 것이다.

② 또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게 하는 목적은 가압류의 집행과 마찬가지로 피보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가압류해방공탁은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이 아니고, 따라서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 3 공탁신청절차

## 가. 관할공탁소

민집 19조 1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집행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나. 공탁당사자

### 1) 공탁자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 자는 가압류채무자이다. 실무상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가압류를 말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을 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가압류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3자의 해방공탁을 인정한다면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은 공탁한 제3자가 갖게 되어 나중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갖게 되어도 공탁자인 제3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상속·합병 등으로 가압류채무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있다.

### 2) 피공탁자

해방공탁의 경우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기재할 수는 없다.

## 다. 공탁의 목적물

① 가압류해방금액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취지의 이른바 소송상의 담보와는 달리 가압류의 목적물에 발음하는 것으로서 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 하며, 가압류결정에서 정한 금액의 일부만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일부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채무자 "을"과 "병" 및 "정"을 공동채무자로 하여 청구금액 1억 원을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병" 및 "정"이 자신들의 상속채무액만큼만 공탁하여 자신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취소를 구할 수 없다(공탁선례 2-291).

③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한 해방공탁을 하였으나 공탁금액이 가압류명령에 정한 해방금액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에 불과하였다면, 그 공탁은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킬 수 있는 해방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대결 2013. 9. 13. 2013마1949).

④ 해방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통상 청구채권의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

## 라. 신청서

행정예규 1420호 1-3호 양식을 이용한다.

## 마. 가압류 집행취소결정

- ①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가압류 집행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고 이러한 집행취소 신청이 있으면 집행취소의 결정을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99조 3항). 이 취소결정은 확정되지 아니하여도 효력이 생긴다(민집 2 8조 4항).
- ②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가 이루어져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공탁자인 가압류채부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게 된다.
- ③ 가압류가 본집행으로 이행된 경우 해방공탁으로 인한 가압류집행취소를 원인으로 본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관련판례)**

가압류집행이 있는 후 가압류가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하여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에 가압류집행이 본집행에 포섭됨으로써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본집행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상대방은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고 오로지 본집행의 효력에 대하여만 다투어야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이 취소, 실효되지 않는 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그 효력을 발생한 본집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등기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 가압류해방금액 공탁으로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경우, 이를 이유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대결 2002. 3. 15 2001마6620).

※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진 후에 이루어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가압류등기를 말소해서도 안되고(등기예규 592호), 부동산등기법 29조 2호(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을 각하하여야 한다(대결 2012. 5. 10. 2012마180).

**4. 해방공탁금의 지급**

**가.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

- ① 가압류채권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한 권리실행방법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승소의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바로 출급청구할 수 있다는 출급청구권설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미치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받아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현금화명령설을 따르고 있다.
- ②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본안승소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압류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소에 대하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고(전부명령은 확정증명, 추심명령은 송달증명 각 첨부), 그 경우의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은 물론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도 포함된다.
- ③ 그러나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지 않는한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압류채권자는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기 전 까지만 가압류신청서와 소장, 본안판결문 등을 그 동일성을 소명하는 자료로 제출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281 및 285면.

갑은 대여금채권 2천만 원에 기하여 을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고, 이에 을은 해방공탁금 2천만 원을 공탁하였다면, 가압류권자 갑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직접 공탁금을 회수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갑이 물품대금채권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명령을 얻었다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대여금채권)와 압류의 집행채권(물품대금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압류의 경합이므로 공탁관은 갑의 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고,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나. 가압류채무자의 권리행사

- ①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하여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없고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만 있다.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원인의 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청구권이므로 그와 같은 조건이 성취되면 공탁자는 그것을 입증하고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채무자인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양수인이나 전부 또는 추심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 ② 해방공탁금을 가압류채무자인 공탁자가 회수하기 위해서는 해방공탁금 위에 미치고 있는 가압류의 효력을 이의신청 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결정 등으로 깨뜨리거나, 가압류채권자와 합의를 하여 해방공탁금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야 한다. 즉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공탁금을 회수청구하는 경우 그 첨부서면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 가압류취소결정정보 및 송달증명(민집 286조 6항의 효력유예선언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 경과), ㉡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민집 287조 3항의 가압류취소결정정보 및 송달증명, ㉢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 부제기로 인한 민집 288조 1항 3호의 가압류취소결정정보 및 송달증명, ㉣ 가압류취하증명, ㉤ 가압류해제증명 등을 들 수 있다.
- ④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관련선례)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가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본안판결 확정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회수청구할 공탁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채권가압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경우에 공탁자가 가지는 공탁금회수청구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으므로, 공탁자인 가압류채무자가 일반적인 첨부서면 이외에 가압류해방공탁의 원인이 된 그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그 회수청구를 인가하여야 한다(공탁선례 1-225).

**(관련선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하여 집행이 완결된 사건에 있어서는 그 본안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이미 완결된 강제집행을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인 “갑”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아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은 후라면 비록 전부채권자인 “갑”이 해방공탁금을 회수하기 전에 가압류채무자인 “을”이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판결(갑의 청구기각판결)을 받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을”은 이미 집행완료된 해방공탁금을 곧바로 회수할 수는 없으며 “을”은 “갑”으로부터 이미 전부된 회수청구권을 다시 양도(부당이득의 원상회복)받거나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여 별도의 집행권원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300).

**(관련선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민집229조 5항), 가압류집행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게 되므로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개시되는 집행법원의 배당실시절차에서 배당금수령채권자로서 그 지급받을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아야만 공탁금 회수청구를 한 수 있다(공탁선례 2-344).

**다. 공탁관의 사유신고**

- ①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목적물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다른 채권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은 지체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에 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②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가 아닌 별도의 압류명령을 받았는데, 그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③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함에 있어 사유신고서에 민사집행규칙 172조 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해당 가압류사건의 표시 및 가압류채권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자의 귀속문제**

-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당사자의 교체(전부명령 · 양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교체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이자는 구당사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그 이후부터는 신당사자(전부채권자, 양수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

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된 때에 채무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상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공탁일로부터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공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그 이후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②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전부명령과 함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일로부터 압류·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③ 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동시에 받으려고 하는 때는 그 취지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이자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에만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러한 기재가 없으면 공탁물보관자가 공탁금 납입일로부터 공탁금 지급 전일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따라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양도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이자의 귀속주체가 다를 수 있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서에 이자에 관한 지급청구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여 공탁물보관은행이 공탁자에게 귀속될 이자까지 전액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관련선례)

채무자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들이 '가압류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본안재판 판결확정 후 제3채무자인 국가에 대하여 출급청구할 공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순차적으로 받은 경우 공탁관의 사유신고 여부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공탁서의 피공탁자란도 공란으로 둔다) 위의 압류 및 전부명령들은 그 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탁공무원은 압류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하거나 형식상 전부명령이 확정된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297).

## 제6절 그 밖의 집행공탁

### 1.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민집 160조 1항은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배당액을 즉시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배당액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당받을 채권액에 대하여 ①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②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③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본)에 규정된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④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 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⑥ 민법 제340조 제2항 및 제370조에 따른 배당금액의 공탁청구가 있는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에 따른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은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민사집행법 제160조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및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도 준용된다. 다만 위 ④항은 그 성질상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제외된다. 민사집행법 제160조의 공탁 및 공탁금의 지급절차는 법원사무관 등이 실시한다(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한편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이 2015.3.23. 도입됨에 따라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할 수 있게 되었다(재민 92-2 참조).

### 가. 민사집행법 제160조와 관련된 공탁

####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1호)

① 정지조건이 있거나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고,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 즉 조건의 성부나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추가배당하여야 한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보증금도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이를 수령할 수 없으므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3항)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액 교부방법과 마찬가지로 임차물의 인도를 조건으로 배당액을 공탁하고 목적물의 인도를 증명한 때에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재민 84-10). 전세보증금의 반환도 전세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의 경우도 인도확인서가 필요하다.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인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민 84-10). 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고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으므로 배당금 수령 시 인도확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①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공탁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력 있는 종국판결을 획득한 때, 혹은 그에 준하는 화해조서 등 그 밖의

집행권원을 취득한 때에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제출하면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위탁절차에 의해 그 채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할 때에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그 후 그 채권에 관하여 본안판결이 확정되거나 하여 공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배당법원은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은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 등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대판 2014.9.4, 2012다65874; 대판 2015.4.23, 2013다215379 참조).

③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에 수령하더라도 이는 본안판결 확정 시에 이미 가압류채권의 소멸에 충당된 공탁금에 관하여 단지 수령만이 본안판결 확정 이후의 별도의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가 위와 같이 수령한 공탁금은 파산관재인과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파산선고와 무관하게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대판 2018.7.24, 2016다227014; 대판 2018.7.26., 2017다234019).

### 3)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보) 및 제266조 제1항 제5호(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보)의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3호)

① 강제경매의 경우에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배당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배당절차는 정지되므로 배당액의 공탁문제가 일어날 여지가 없으나,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배당채권자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되었거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을 속행하여야 하고, 다만 법원사무관 등은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그 후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소제기증명과 함께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을 제출한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한 재판의 정보가 제출된 경우에도 같다.

② 이와 같이 공탁이 된 후 집행정지를 명한 본안소송 또는 이의의 결과로써 집행불허의 재판의 정보가 제출되면 아직 만족하지 못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추가배당을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반대로 집행정지를 받은 채권자가 본안소송 또는 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사실을 증명하면 그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 4)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4호)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가등기권리자는 후일 본등기를 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가압류의 경우에 준하여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였다고 가정하고 그에게 배당할 금액을 정하여 이를 공탁할 것이다. 가등기권리자가 본등기를 하든가 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을 구비한 때에는 그 가등기권리자에게 그 배당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본등기에 필요한 조건이란 등기의무자의 동의서나 본등기에 필요한 저당권 그 자체의 성립을 인낙하는 등기의무자의 채권확인서 또는 본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 등이 제출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공탁 전이면 공탁을 하지 않고 배당액을 지급하고, 공탁 후라면 배당액 지급절차에 의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5)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 ①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②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그 소가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채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면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거나 추가배당 또는 재배당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법원이 그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 종전의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한다.
- ③ 한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 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82조)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을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대결 2019.3.6, 2017마5292). 따라서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관련배당금을 공탁한 후 배당이의의 소가 완결되기 전에 집행법원에 채무자가 파산한 사실이 기재된 문건이 접수되었다면 법원사무관 등은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위 배당금에 관해 파산관재인에게 지급위탁절차를 취해야 한다.

(관련판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민집 160조 1항 5호),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는다(민집 152조 3항)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민집 161조 1항).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159조 2항, 3항, 민집 규 82조 1항, 규칙 48조 1항).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된다(대판 2018. 3.27. 2015다70822).

(관련판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익이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의 확정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배당표의 확정 전에 어떤 경우로든 채권자가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아 수령하고 그 후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은 시점인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8. 3.27. 2015다70822).

**6)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배당금의 공탁청구(민법 제340조 제2항, 제370조)를 한 때(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6호)**

① 저당권자는 담보권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채권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권원을 가지는 한 저당목적 부동산 이외의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저당권자는 저당목적 부동산에 의하여 먼저 변제를 받고 그 부족액에 한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370조, 제340조 제1항). 그러나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에 앞서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먼저 강제집행을 개시하여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까지만 위와 같이 제한을 한다면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채권변제의 부족이 판명된 때에는 이미 다른 부동산에 대한 집행이 종료되어 부족액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도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채권 전액을 가지고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제340조 제2항 본문). 다만 저당목적 부동산으로써 채무액의 변제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자가 미리 배당액을 수령한다면 결과적으로 민법 제340조 제1항의 취지와 모순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게 되므로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하는 저당권자에게 배당금의 공탁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370조, 제340조 제2항 단서). 이러한 공탁청구가 있으면 법원사무관 등은 그 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후에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때에는 변제받지 못한 부분은 공탁된 배당액에서 저당권자에게 지급하고<sup>1)</sup>, 잔여액에 대하여 추가배당 또는 채무자 등에게 교부절차를 밟는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3호)

**7) 사해행위취소 가처분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고, 그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가배

1) 이때 저당권자가 지급받을 금액에 관하여 저당권자가 그 부족액만을 가지고 앞의 배당에 참가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위 공탁금 중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와 공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부족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견해로 나뉜다.

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대판 2009.5.14, 2007다64310).

위 판례는 경매담당직원이 근저당권자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 지급채권에 관하여 민집 160조에 따라 공탁한 후,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지급채권이 사해행위취소로 채무자에게 양도되고, 피고(=취소채권자 중 1인)가 채무자의 배당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이다.

### (관련판례)

민집 160조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기한 것이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발급한 공탁금 지급위탁서가 공탁공무원에게 접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9. 7. 28. 2009다39368).

### 8)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 공탁(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

① 배당받을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액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하여 배당을 완결한다. 후일 그 채권자가 지급을 청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급위탁서의 송부, 배당액지급증의 교부 등 전술한 공탁된 배당액지급방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채무자 등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할 금원이 있으면 이를 공탁하였다가 채무자 등이 그 지급을 청구하면 앞에서 본 배당액 지급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이다(재민 92-2 참조).

②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즉시 공탁을 할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를 기다렸다가 끝내 그 채권자의 지급청구가 없으면 그때 공탁을 할 것이다(재민 91-5에 의하면 불출석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공탁 또는 계좌입금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위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민집규 82조 2항).

③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공탁금의 수령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추가배당을 실시하거나 또는 채무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민집 161조 3항).

### 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배당금공탁

#### 1) 저당권자의 저당권부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된 것만으로는 그 채권의 권리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압류가 존속하는 한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다. 다만,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불권의 수반성에 의하여 종된 권리인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피담보채권의 압류를 공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2009. 12. 24. 2009다72070 등).

## 2)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등기가 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76조 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13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등기에규 1462호 참조) 채권담보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 3) 저당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경우

저당권에 관하여 일반가처분으로 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금액의 처리에 관하여 견해가 나뉜다.

## 4) 배당금 또는 잉여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처리 방법

### 가) 압류, 가압류된 경우

① 배당받을 채권의 존재 및 수액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어 배당표가 확정되었지만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되어 있는 경우(채무자 등에게 지급될 잉여금채권이 압류된 경우도 같으므로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에는 배당받을 채권자를 배당금수령권자로 기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되 압류가 존속하는 한 해당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한다.

② 민집 160조에 의한 공탁이 아니라 민집 248조의 집행공탁이므로 공탁사유신고(민집 248조 4항, 민집규 172조)도 하여야 한다.

③ 공탁관이 공탁금을 배당재단으로 하는 채권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령채권 또는 민집 160조에 의하여 공탁한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배당금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951호).

④ 가압류·압류채권자는 민집 252조 이하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수령할 수 있다.

### 나) 전부명령,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①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이 발하여진 경우에 이를 송달받은 출납공무원이 해당 경매계에 그 사실을 통지하면(행정예규 951호) 집행법원은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당초 채권자를 기재한 다음 그 옆 괄호 안에 추심권자 000라고 기재하고 이유란에 당초 채권자에 대한 배당사유(예를 들어, 근저당권자)를 기재하며[다만, 배당기일 전에 전부명령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배당표상의 채권자란에 당초의 채권자 000의 전부채권자 000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 괄호 안에 당초의 채권자를 기재하고, 이유란에 당초 채권자에 대한 배당사유(예를 들어, 근저당권자)를 기재하고, 확정전의 전부명령은 무시한다], 출급명령서를 전부채권자 또는 추심권자 앞으로 작성하여 배당액을 지급한다.

② 한편 추심권자나 전부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집 160조 2항에 따

라 공탁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추심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집 160조 2항에 따라 공탁을 한 후 추심채권자가 위 배당금채권을 추심하기 전에 당초 채권자(추심채무지)에 대한 다른 압류 등이 추가로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로서는 후행 압류사실을 알 수가 없어 배당금을 수령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해야 함에도 추심신고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채권자의 배당금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민집 248조의 집행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민집 248조 4항, 민집규172조)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집 160조 2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부명령 이후 다수의 압류채권자가 경합되어 그 우선순위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민집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도 가능할 것이다(대판 1996. 6. 14 96다5179 참조).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배당금출급 전에 확정증명원을 제출받는다.

③ 압류가 경합되거나 의무공탁사유(민집 248조 2항, 3항)가 있는 경우에는 민집 248조의 해당조문에 의하여 공탁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한다.

**5)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또는 지급금지가처분이 된 채권도 공탁의 대상이다(대판 2009.5.14. 2007다64310)**

6)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부기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치는데(민법 348조),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자가 저당권자가 받을 배당금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법원에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민법 353조 1항), 민법 342조에 따라 배당 전에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위 배당금을 압류하여야 그 배당금에 대하여 질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354조), 저당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나 제3자로부터 압류가 없는 한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고 공탁을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자도 등기기록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민집9조 3호)에 해당하므로(대결 1999. 11. 10 99마5901), 질권자가 배당법원에 직접청구하거나 압류가 없는 경우라도 질권자 앞으로 배당하여 유보공탁(민집 160조 2항)을 할 것이고, 저당권자에게 배당할 것은 아니다.

#### 다. 공탁의 방법

① 배당액을 공탁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별표 1-1호 양식에 의하여 공탁서 2통을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공탁한다(규칙 20조). 배당액의 공탁은 배당기일부터 10일 안에 하여야 한다(재민 91-5).

②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에는 그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을 출급한 후 다시 공탁하는 등의 이중의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공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이 경우 종전의 공탁서 원본에(지급위탁서에 이를 붙일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편철되어 있게 된다)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면 된다(재민 92-2).

③ 배당재단이 법원보관금인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하고, 공탁관은 공탁서 1통에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 등을 적은 다음 법원사무관등에게 돌려주며,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에 따라 공탁물보관자로 지정된 은행에 배당액을 공탁한다(법 4조, 규칙 20조, 26조, 27조). 이때 배당금수령권자 명의로 출급하여 공탁하여야 하는데

(재일 97-2) 실무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2통의 공탁서를 작성하여 공탁계에 제출하면 그 중 1 통은 공탁소가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을 반환받아 출납공무원이 교부한 출급지시서와 함께 취급점에 제출하면 취급점에서는 보관금계정에 있는 배당액을 공탁금계정으로 대체시킨 후 공탁서를 법원사무관등에게 반환한다.

**(관련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286 및 298면.**

1. 부동산경매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갑의 배당금(1천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 을 이 배당이익을 하고 배당이익의 소를 제기하여 그 배당금이 민집 160조 1항 5호에 따라 공탁되고 나서, A와 B의 “갑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 압류 및 추심명령이 각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종래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이익의 사유(민집 160조 1항 5호)가 피고 승소 확정으로 해소되었다는 통지가 오면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했지만, 2020. 7. 1.부터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이 시행됨에 따라 공탁관은 압류명령서를 접수한 후 그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면 되고(행정예규 951호 2조 2항), 집행법원의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배당이익의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최초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재민 200-1 4조,5조).
2. 부동산경매 배당절차에서 확정된 병의 배당금지급채권(1천만 원)에 대하여 A가 전부가 압류를 하였고, 배당법원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민집 291조, 248조 1항)을 하였는데, 이후 A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 본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한 경우, 공탁관은 압류명령서를 접수한 후 압류명령서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고(행정예규 951호 2조 유추적용), 담임법원사무관등이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3조, 4조).
3. 부동산경매 배당절차에서 확정된 정의 배당금지급채권(1천만 원)에 관해 정의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여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민집 160조 2항)한 후 정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A와 B의 전부 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소에 각 도달한 경우, 민집 160조 2항의 공탁이 된 후 공탁금출급청구권(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에 종래에는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는 것이 다수의 실무였으나, 2020. 7. 1.부터 재민 2020-1이 시행되면서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집행법원의 담임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의 공탁**

**가. 배당재단이 공탁금인 경우**

민사집행법 제248조 공탁 등 공탁금을 배당재단으로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 결과 배당액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무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각 공탁사유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하여 다시 공탁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의 공탁을 유지한 채 종전의 공탁서에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 공탁서 등 보관책임자에게 인계하고 있다.

#### 나. 배당재단이 보관금인 경우

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관이 인도된 유체동산을 현금화하여 매각대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 ②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하여 매각명령, 관리명령 등으로 현금화된 금전이 법원에 제출된 때, ③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주로 특별현금화방법에 의하여 현금화된 매각대금이나 재산을 관리하여 얻은 수익이 집행법원에 제출된 때 각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이 경우 부동산경매절차와 같이 배당재단이 보관금이므로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0조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공탁하는 것과 동일하게 공탁절차를 취해야 한다.

#### 3. 민사집행법 198조 4항의 집행공탁

①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절차진행 중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기재한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거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 또는 채무이행의 유예를 승낙한 취지를 기재한 증거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민사집행법상의 의무로서 집행관이 공탁한다는 점에서 형식상 집행공탁이나 목적물의 보관만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실질상 보관공탁의 성격을 가진다.

#### 4. 민사집행법 222조의 집행공탁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이나 압류금전으로 배당에 참여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압류금전은 압류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관은 매각대금이나 압류금전을 공탁하고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 5. 민사집행법 236조 2항의 집행공탁

①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탁금은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지급되므로 집행공탁이다.

② 한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도 민집 236조 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 위 조항에 따라 공탁의무가 발생하므로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대판 2015. 7. 9. 2013다60982. 2015. 8. 21, 2013다203833 참조), 이는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에 임의로 응하지 않아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후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하여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결과 취득한 추심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11. 15. 2007다62963).

③ 사유신고는 사건과 당사자의 표시,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날짜, 공탁사유 및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에 공탁서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민집규 162조 2항).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채권자

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가 공탁을 한 때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민집 252조 2호).

#### (관련판례)

만일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마쳤음에도 지체 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5. 7. 28. 2004다8753).

### 6. 민사집행법 130조 3항의 집행공탁(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금 공탁)

#### 가. 의의

①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180조 3항). 이 공탁은 항고인의 남항고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경매절차자연에 따른 채권자 등의 손해담보적 성격도 가지나 항고가 기각된 때 또는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공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배당재단으로 편입되어 집행절차에 따라 채권자 등에게 배당되는 점에서 집행공탁에 속한다고 볼 것이다.

②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나. 지급절차

##### 1) 출급

항고가 기각, 각하, 취하된 경우 항고인이 **채무자 또는 소유자**인 경우는 보증으로 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전액**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고, 항고인이 **그 이외의 자**인 경우는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각하)결정이 확정된 날 등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1할 2푼의 이율에 의한 금액, 그 지연손해금만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다. 집행법원은 보증으로 공탁된 금액을 포함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 2) 회수

① 공탁의 성질이 담보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담보취소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공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해당 보증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 공탁물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항고가 기각되었더라도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경매절차가 취소된 때 항고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항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회수청구

를 할 수 있다.

#### 7. 민사집행법 296조 4항, 5항의 집행공탁

가압류한 금전은 공탁하여야 한다. 또한, 가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공탁도 민사집행법상의 의무로서 집행관이 공탁한다는 점에서 형식상 집행공탁이나 목적물의 보관만이 목적이므로 그 실질은 보관공탁의 성격을 가진다.

####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8조 2항 및 623조 2항의 항고인의 공탁

##### 가. 의의

① 변제계획불인가의 결정 및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항고가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계속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할 수 있다.

②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은 회생채권사와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그 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의결권액)의 총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 나. 공탁물의 지급

##### 1) 출급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거나 파산절차가 속행됨으로써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이 위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한다. 위 증명서면은 파산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 2) 회수

항고가 인용된 경우 또는 항고가 기각되고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서와 항고 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없으며 파산절차가 속행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 위 증명서면은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 9. 회생위원의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한 공탁

①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 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은 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공탁하기 전이 공탁예정통지서를 발송하여 통지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주일 안에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변제액을 공탁한다는 점을 알려주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 변제액을 공탁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84조 2항, 재민 2004-4 11조의5 1항 3항).

② 회생위원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공탁관의 공탁 수리 후 회생위원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법원과 공탁금보관은행 사이에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예정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납입한다(재민 2004-4 11조의5 4항, 5항).

③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 공탁규칙 43조에 따라 회생위원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채권자에게는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동조 7항).

#### 10. 회생위원의 채무자를 위한 공탁

① 현행법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8조 2항의 회생위원의 공탁), 채무자에게 임치된 금원을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채무자가 환급받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7조의2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회생위원은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또는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임치된 금원(이자를 포함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위하여 공탁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7조의2).

예규에 따르면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기재한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전화번호에 오류가 있고,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617조의2에 따라 임치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채무자용 공탁예정통지서[전산양식D5508-1]를 발송할 수 있다.

② 회생위원은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공탁관의 공탁 수리 후 회생위원은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라 법원과 공탁금보관은행 사이에 연계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예정액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공탁금을 납입한다(재민 2004-4 11조의5 4항, 5항). 공탁금을 출급받으려는 채무자가 있는 경우 회생위원은 공탁규칙 4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탁관에게 지급위탁서를 보내고 채무자에게 그 자격에 관한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동조 7항).

#### 11. 민사집행규칙 182조의8 전자등록사채등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

①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에 규정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해 법원은 압류할 수 있고(민집규 182조의2, 전자증권법 68조), 제3채무자로 취급되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이하, '계좌관리기관등')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민집규 182조의9, 민집 227조 2항.3항).

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대한 현금화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에 의한다(민집규 182조의5 1항).

③ 전자등록주식등 중 사채, 국채, 지방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원리금지급청구권이 있는 것(이하 '전자등록사채등')이 압류된 경우 그 원리금지급청구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계좌관리기관등이 만기 도래, 그 밖의 사유로 발행인으로부터 원리금을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원리금 중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위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관리기관등은 원리금수령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에도 원리금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전자등록사채등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

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계좌관리기관등은 수령한 원리금 전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여야 한다.

④ 위와 같은 공탁은 민집 248조의 집행공탁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계좌관리기관 등이 위와 같이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에 시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chapter 05 혼합공탁<sup>2)</sup>

### 01절 총설

① 혼합공탁이란 공탁원인사실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하나의 공탁절차에 의하여 하는 공탁을 말한다<sup>3)</sup>. 예컨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거나 하여 채무자의 입장에서 보아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고, 또한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면 압류경합 등으로 인하여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경합을 원인으로 하는 집행 공탁을 합한 하나의 절차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이러한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만약 혼합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나머지 다른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은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합공탁의 효력은 물론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춘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의 효력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 02절 혼합공탁의 신청

#### 1 관할공탁소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재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가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탁자들 중 어느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sup>4)</sup>.

#### 2. 혼합공탁사유

제3채무자는 아래와 같이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sup>5)</sup>.

1. 선행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2.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3.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
4.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5. 금전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2)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2025년, 307-326면 내용

3) 금전채권의 혼합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1400호, 2024. 8. 1 시행) 제2조

4) 위 지침 제3조

5) 위 지침 제4조

### 3. 공탁서의 기재

- ① 채권양도(효력다툼 있음)가 선행하고 채권가압류가 후행한 경우,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한 경우,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487조 후단, 민집 291조, 248조 1항을 기재한다.
- ② 채권양도(효력다툼 있음)가 선행하고 채권압류가 후행한 경우, 채권양도와 채권압류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귀속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한 다수의 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관계를 알 수 없고 다수의 지분권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의 혼합공탁 공탁근거 법령조항은 민법 487조 후단, 민집 248조 1항을 기재한다.
- ③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혼합공탁사유에 따라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 권리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사람 전부, 지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하지 않는다.
- ④ 공탁서상의 공탁원인사실란에는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나 압류명령 및 그 송달일자, 채권양도와 그 통지일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sup>6)</sup>.

### 4. 첨부서면 등

- ①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탁자는 공탁신청서에 피공탁자의 수 만큼의 공탁규칙 제28조제1항 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우편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또한 공탁자는 혼합공탁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채권양도서류, (가)압류 결정문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별지의 공탁사실통지서와 우편료를 납입해야 한다<sup>7)</sup>. 공탁관은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거나, 채권가압류와 채권양도가 동시에 도달하여 혼합공탁이 된 경우 가압류채권자에게 공탁사실통지를 하여야 한다.

### 5.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가. 채권자 불확지 등 변제공탁사유와 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 ① 제3채무자는 지체 없이 공탁서를 첨부하여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유신고를 접수한 집행법원은 채권 등 집행사건의 배당절차사건으로 수리하게 되지만,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의 유·무효 확정 등 채권자 불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사실상 배당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③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가)압류채권자 등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에서 그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해서 필요한 문서로서 압류의 대상이 된

6) 위 지침 제4조,5조

7) 위 지침 제7조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지침 2조 3호, 8조)를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지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었으므로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사유와 가압류명령이 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 ①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신고하지만, 이 경우의 신고는 배당가입의 차단효과 발생하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사유도 되지 않는다.
- ② 한편, 위와 같은 사유로 혼합공탁이 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생기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더라도 공탁관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된 후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혼합해소문서 사본 첨부)를 하여야 한다<sup>8)</sup>.

**다.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한 경우**

위 나.와 같이 가압류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신고한다. 위와 같은 사유로 혼합공탁이 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지체 없이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련판례)**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공탁을 하면서 피공탁자 내지 채권자 불확지의 취지를 기재하지 않고 공탁근거조문으로 민집 248조 1항만을 기재한 경우 그 공탁은 변제공탁으로서의 효과가 없다(대판 2005. 5. 26. 2003다12311 참조).

**(관련판례)**

법원공무원이 가압류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에 접수일자를 표시하는 접수인을 찍은 경우, 가압류신청서에 찍힌 접수일자는 그 첨부서류인 승낙서에 대하여 확정일자에 해당한다(대판 2004. 7. 8. 2004다17481).

**제3절 혼합공탁의 지급**

**1. 출급**

**가.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 ① 피공탁자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가)압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 정보 및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

8) 위 지침 제7조 2항 본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 정본 포함)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를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sup>9)</sup>.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효력다툼 있음) 이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들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316호 참고).

#### (관련판례)

혼합공탁에 있어서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는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12. 1. 12. 2011다84076).

② 한편,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되거나 도달의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가압류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된 경우에 채권양도와 가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후 가압류가 실효된 경우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와 가압류가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소에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sup>10)</sup>.

#### (관련선례)

1.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甲' 또는 '乙'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乙'을 채무자로 하는 '丙'의 채권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甲'이 '乙'을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丙'을 상대로 제3자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받아 가압류결정의 집행이 모두 해제되었다면, '甲'은 가압류채권자인 '丙'의 승낙서나 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판결 없이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혼합공탁 이후에 '乙'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 등을 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甲'은 위 채권자들의 승낙서나 위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판결을 첨부하지 않고서도 출급청구 할 수 있다.
3. 위 경우, 피공탁자 '甲'은 '乙'을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확인판결과 '丙'의 채권가압류의 효력이 실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가압류집행취소결정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2-1).

#### (관련선례)

채권양도통지(확정일자부 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와 가압류를

9) 위 지침 9조 1항  
10) 위 지침 9조 2항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 방법과 양수인의 공탁금 출급방법**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 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487조 후단, 민집 248조 1항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 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

**나.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는 경우**

- ① 집행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권양도의 통지(효력다툼 있음) 이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명령의 송달이 있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압류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청구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가 무효이므로 양도인(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컨대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 위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 또는 조정조서정본, 위와 동일한 내용을 담은 양수인의 동의서(인감증명서 등 첨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 1. 17. 2006다56015).
- ③ 채권 가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 양도인(=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하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하고,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이 지급될 것이다.

**(관련판례)**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집행권원)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대판 2002. 4. 26. 2001다59033). 절대적 무효는 아니고, 상대적 무효에 불과하다.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현금화절차(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를 게을리하여 공탁을 방치하거나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또는 제소명령신청권이나 제소기간 도과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권을 대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관련판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하였다가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채권자가 당해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

령도 받아 둔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제3채무자의 혼합공탁에 따른 배당절차에서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당해 채권의 양수인의 자격으로는 배당받을 수 없으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배당받는 것은 가능하다(대판 2014. 3. 27. 2011다107818).

(관련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312 및 315면.

甲은 乙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천만 원이 있는데, 위 채권에 대하여 丙의 채권 전부 가압류결정, 丁에게 위 채권 전부를 양도(효력다툼 없음)한다는 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도달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1) 甲이 취할 수 있는 공탁절차를 설명하시오.

丙의 가압류가 선행하고, 丁에게 채권양도가 후행한 경우, 甲은 가압류채무자 乙을 피공탁자로 하여 민집 291조, 248조 1항의 집행공탁만 해두어서는 나중에 가압류가 효력을 상실했을 때 그 집행공탁으로 양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피공탁자(乙)가 아닌 양수인 丁이 공탁금을 출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할 경우 이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물론이므로, 다시 291조,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을 해야 한다. 따라서 甲은 이중지급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혼합공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때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487조와 민집 291조, 248조 1항이고, 양도인 乙 또는 양수인 丁을 피공탁자로 하고, 乙과 丁에 대한 공탁통지서, 丙에 대한 공탁사실통지서를 첨부해서 乙 또는 丁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재 공탁소에 공탁해야 한다. 공탁한 후에는 가압류발령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양수인 丁이 다른 피공탁자인 乙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있는가?

양수인 丁은 가압류가 취하, 취소 등으로 소멸되어야 비로소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丁의 출급청구는 인가할 수 없다.

3) 丙이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어 출급청구하는 경우 공탁관은 이를 인가할 수 있는가?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압류로 이전하게 되면 혼합공탁은 민집 248조의 집행공탁으로 전환(확정)된다.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하고, 丙의 출급청구는 인가될 수 없다

4) 戊가 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압류하면 戊는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혼합공탁을 한 후에 양도인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함이 타당하다(대판 2004. 9. 3. 2003다22561 참고).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가 선행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양도인 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보지 않으면 공탁 전에는 양도인의 채권

에 대해 압류하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었던 채권자가 공탁 후에 돌연 양도인의 채권(=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를 하면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게 되는데, 공탁에 이러한 효과를 부여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 2 회 수

- ① 공탁자는 공탁금 중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공탁서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받아 이를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또한 공탁자는 혼합공탁의 사유가 없음에도 착오로 공탁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각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채무자인 공탁자가 선행된 적법·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는데 이를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된 채 그 이후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이 동시에 도달되었음을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선행된 유효한 채권양도통지가 있었다는 증명과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문'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001-1).

### (관련선례)

甲이 乙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乙이 송달받은 후 甲의 채권자 丁이 위 양도대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乙에게 송달되었는데, 乙이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다고 하여 혼합공탁을 하였고, 丙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乙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에는 공탁자인 乙은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양도인 甲 및 압류채권자 丁의 승낙서와 양수인 丙의 변제확인서(각 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금 전액을 지급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될 것이나, 丁이 공탁자인 乙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丁이 패소한 판결정본은 丁의 승낙서에 갈음할 수 없고, 丁의 승낙서에 갈음하여 丁을 상대로 하여 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이미 압류대상채권이 양도되어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 (관련선례)

乙은 甲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 중 일부를 丙에게 양도(확정일자부 통지) 후 다시 전액을 丁에게 양도(확정일자부 통지)하였고, 그 후 丁의 위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가 이루어져 제3채무자 甲은 “물품대금채무 전액이 채권양도 및 가압류 금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 등으로 인하여 누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乙, 丙, 丁으로 하여 혼합공탁하였고, 乙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송달된 후 제1양수인과 제2양수인 겸 채권가압류권자가 공탁금 출급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1양수인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제2양수인 겸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피공탁자 乙의 지정이 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통이나 의문이 없음에도 乙을 피공탁자로 지정한 것은 착오로 볼 수 있음)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인지 여부는 해당 공탁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제4절 혼합공탁의 구체적 사례

##### 1 채권양도가 선행하고 채권 (가)압류명령이 후행하는 경우

###### 가.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동일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한 자와 양수인 사이의 우열은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 (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양도가 우선하게 되므로 그 채권 (가)압류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채무자(제3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하면 되고 혼합공탁을 할 수는 없다.

###### 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①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명령의 송달이 이루어졌으나,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등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에 따라 변제공탁(채권양도가 유효한 경우) 또는 집행공탁(채권양도가 무효인 경우)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제3채무자)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이와 달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처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수익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공탁자를 가처분권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혼합공탁 역시 불가능하다.

##### (관련선례)

장래 발생할 채권까지 포함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 및 확정일자부 통지가 이루어진 이후 다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을 채무자로 하는 4건의 가압류가 이루어져 채권양도의 효력 및 채권양도와 가압류 간의 우열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487조, 민집 291조 및 248조 1항을 근거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16).

##### (관련선례)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채권에 대하여 甲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후 위 전부금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채권양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경우 그 가처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채권이 가처분권자 자신에게 귀속한다고 다투는 경우가 아니므로 제3채무자는 피공탁자를 '전부권자(甲) 또는 가처분권자'로 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 공탁을 할 수 없다(공탁선례 201010-2).

## 2 채권 (가)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 가. 채권 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채권 압류명령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저촉처분(양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상대적 무효). 따라서 채무자(제3 채무자)는 양도인의 채권에 관해 민집 248조 1항의 집행공탁을 할 수 있을 뿐, 혼합공탁을 할 수는 없다.

### 나. 채권 가압류명령이 선행하고 채권양도가 후행하는 경우

채권가압류명령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압류가 이후에 취소 등의 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으므로, 가압류 중인 상태에서 제3채무자로서는 채권자가 양도인이 될지 양수인이 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한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채권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에 있어서는 가압류의 효력 여하에 따라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어지므로 채권양도 그 자체의 효력 유무는 혼합공탁의 요건이 아니다.

## 3 기타 문제되는 경우

### 가. 채권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채권양도의 통지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 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하지만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 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집 248조 1항(압류의 경우) 또는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집 291조, 248조 1항(가압류의 경우)에 의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한 이후에는 공탁서를 붙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압류의 경우) 또는 가압류발령 법원(가압류의 경우)에 신고하여야 한다.

혼합공탁한 이후에 채권양도 통지 및 (가)압류결정정본 송달의 선후불명 또는 동시로 판명된 때에, 즉, 양수인과 압류채권자(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에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얻은 가압류채권자)가 각각의 정산비율에 의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분할취득을 입증한 때에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의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개시되고 지급위탁에 의하여 공탁금이 지급될 것이다.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혼합공탁을 한 후에 양도인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함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의하여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 공탁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가 그중 어느 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판 2005. 5. 26. 2003다12311등 참조).

다른 한편,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 행위로서는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치므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양도 등 처분을 함으로써 그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이 되고,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그 후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이 전부 양도되었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후행 압류권자 등은 더 이상 그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대판 2013. 4. 26. 2009다89436).

(관련판례)

[1]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도 그 압류채권자와 처분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치므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

[2]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3]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4. 9. 3. 2003다22561).

(관련선례)

채무자 갑이 채권자 을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병, 확정일자부 아닌 통지)가 있는 후,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양수인 정, 확정일자부

통지)와 을을 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결정정본(채권자 병)이 갑에게 같은 날짜에 도달되어 그 도달의 선후를 알 수 없고, 이어서 을을 채무자로 하는 여러 건의 가압류 및 압류가 순차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갑은 민법 제487조 및 민집 제248조 제1항을 공탁근거 법령으로, '양도인 을 또는 양수인 정'을 피공탁자로 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11).

#### 나. 채권의 일부 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채권양도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므로, 양수인에게 변제하면 되고, 양도가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과의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다. 채권전부 가압류, 채권일부 양도, 채권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① 이 경우 양도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는 가압류와 양도 이후의 압류가 경합되고 있으므로 제3채무자는 민집 248조 1항을 근거로 집행공탁을 한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법원은 곧바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양도된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가 취하 또는 취소되거나 본안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면 양수인이 출급청구할 수 있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공탁관의 사유신고로 집행법원 이 배당절차를 진행한다. 이때 양도에 후순위인 압류채권자는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 (관련판례)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채권을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그 채권의 일부가 을에 의하여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채권 전부가 병에게 양도(확정일자부 통지)되었고, 이어서 '정, 무' 등 다른 다수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병에 대한 채권 전액 양도는 채권 양도에 앞서 을이 가압류한 일부분에 대하여는 을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정, 무' 등의 가압류에는 우선하므로 채무자로서는 일단 을이 가압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양수인 병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2-322).

#### 라. 채권일부 가압류, 채권전부 양도, 채권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가압류된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가압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없는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지급하든가, 수령거절 등을 원인으로 변제공탁을 하면 된다. 다만, 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 마.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해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공탁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

(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 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364조, 487조 및 민집 248조 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관련판례)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저당권자의 배당금청구권에 미치므로 가압류가 존속하는 한 당해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저당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근저당권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기 이전에 그 피담보 채권에 관하여 원고 등의 가압류채권자들에 의하여 수 개의 가압류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원고 등의 가압류가 저당권부 채권의 양수인에 우선하게 되므로, 공탁관이 부동산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가 공탁된 각 금원에 관하여 가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혼합공탁으로 공탁원인을 정정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 등은 그 공탁금에 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가압류채권자로서 그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이상,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대판 2013.8.23. 2012다65270).

#### 바. 혼합공탁 후 양수인이 제3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후 채권가압류결정 정보를 송달 받았고, 그 후 채권양도의 효력에 다툼이 있어 제3채무자는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의하여 혼합공탁을 한 후, 양수인이 제3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에서 얻은 집행권원으로 제3채무자의 다른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얻은 경우 제3채무자는 공탁원인 소멸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면 된다. 이러한 경우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양도인의 채권포기서 내지 제3채무자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및 제3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양수금 전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또한 양도인과 가압류권자의 위 서면에 갈음하여 양도인과 가압류권자를 각 피고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대상채권이 부존재 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그 판결서 정보를 첨부할 수도 있다(공탁선례 2-318).

#### 사.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과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14조, 건설산업기본법(=건설법) 35조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건설법상 하수급인)가 하도급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원사업자(건설법상 수급인)가 아닌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하 하도급법을 기준으로 설명한다.

하도급법 14조 1항 1호 및 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 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대판 2007. 6. 28. 2007다17758).

하도급법 14조 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대판 2008. 2. 29. 2007다54108 참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게 되

면 그 금액만큼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이전 하게 되고,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하도급법 14조 2항 참조)

이와 같이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면 원사업자의 채권자는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와 반대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되었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고(대판 2003. 9. 5. 2001다64769 등 참조),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14. 11. 13. 2009다67351 참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과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로서, ① 제3채무자인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 발생여부나 범위,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가)압류 사이에 그 우열을 알 수 없는 경우, ②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과 (가)압류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근거법령은 민법 487조 후단, 민집 248조 제1항(또는 민집 291조, 248조 1항), 하도급법 시행령 9조 2항으로 기재한다.

#### (관련판례)

- |   |
|---|
| <p>[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사업자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인해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연쇄부도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두게 된 것으로, 수급사업자의 자재와 비용으로 완성된 완성품에 대한 궁극적인 이익을 발주자가 보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은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는 반면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들이 원사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러한 관련성이 없다는 것에 근거하여,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도급대금채권 중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일반채권자들보다 수급사업자를 우대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인바, 영세한 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가 파산한 경우에 인정되는 이러한 직접청구제도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여 배제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특히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파산의 경우보다 불리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원사업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고 정한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p> <p>[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이 금지하는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 6. 28. 2007다17758).</p> |
|---|

(관련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317 및 326면.

갑은 을에 대하여 대여금채무 1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병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 정에게 위 채권을 양도한다는 양도통지서가 송달되었음에도 갑은 채권양도 사실을 간과한 채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집행공탁(민집 218조 1항, 291조)을 하였다면, 이후 피공탁자를 '을 또는 정'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에 채권양도로 인한 변제 공탁 사유를 추가하여 혼합공탁으로 하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공탁선례 2-309).

## chapter 06 공탁관의 사유신고<sup>11)</sup>

### 1. 의의

①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할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는 공탁을 지속하고 그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 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제3채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탁은 권리이나, 공탁관은 사유신고의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판례(대판 2002.8.27, 2001다73107)는 공탁규칙 제58조 제1항의 사유신고에 관한 규정을 공탁관이 사유신고할 경우의 세부절차만을 정한 규정이 아니라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경합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공탁관은 반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직무상의 의무규정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225호)”에는 사유신고의 요건, 신고시기, 신고법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관련판례)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따라 공탁을 한 후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집 291조 248조 1항에 따른 공탁은 민집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판 2019 1. 31, 2015다26009).

② 한편, 민사집행사건에서 발생한 배당금지급청구권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한 경우(민집 160조 각 호의 지급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집행법원의 담임법원사무관등이나 공탁서등 보관책임자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 2. 사유신고의 요건

### 가. 일반적인 경우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 경합이 생기고 [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통지를 받은 때, ② 압류(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전부(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 ③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후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 등],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 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동일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압류를 한 후 다시 압류(또는 가압류)를 한 경우에도 채권자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2025년, 374-381면 내용

(관련사례) - 법원공무원교육원 2025년 공탁실무, 376 및 378면.

갑은 을을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번제공탁을 하였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음 각 사례와 같이 (가)압류결정이 공탁소에 도달한 후, 병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관이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병의 전부 압류·추심명령이 도달한 경우 병은 압류·추심권자로서 전액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병의 가압류결정(1억 원)이 도달한 후 병의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추심명령(7천만 원)이 송달된 경우,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압류경합이 아니므로 공탁관은 병의 출급청구를 인가하여야 한다.

**나. 특별한 경우**

- ①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여기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 ③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복수의 압류명령 등이 있더라도 각 압류의 법률적 성질상 압류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본래의 의미에서의 압류의 경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공탁관이 그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등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다. 사유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비록 복수의 압류가 있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 지급청구권) 총액을 초과하더라도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 ①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
- ②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후를 불문한다)
- ③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 ④ 선행의 압류(또는 가압류) 후에 목적채권인 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압류·가압류 등이 경합한 경우
- ⑤ 금전공탁이 아닌 유가증권 또는 물품공탁의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3.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가)압류명령**

-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하나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으나, 공탁관은 압류의 경합이 없는 한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공탁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행정예규 제1018호). 따라서 압류와 동시 또는 압류 이후에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있으면 추심 또는 전부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면 된다.

② 다만 제3채무자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그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으면 공탁관은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 나.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 등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의한 수 개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공탁관에 게 송달된 경우 공탁관은 그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 사이의 우열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아 사유신고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353호 참조).

#### 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

①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는 공탁관은 지체 없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압류가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가)압류의 경합이 없는 때에는 사유신고할 필요가 없다(재민 84-6). 압류명령서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기 때문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 여부를 알 수 있다.

②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별도의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의 집행채권의 동일성 여부가 불명하므로 공탁관은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유신고 이전에 채권자가(추심이나 전부 등 현금화명령까지 받은 경우) 가압류채권의 피보전권리와 압류채권의 동일성을 소명하는 서면(예컨대 가압류신청서, 소장, 판결 등)을 첨부하여 지급청구할 경우 양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라.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①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공탁관은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다른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선행의 전부명령이 실효되지 않는 한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아니하므로 차후에 선행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는 특정승계인으로서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공탁선례 제2-352호), 선행의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대판 1989.1.31, 88다카42 참조).

② 선행의 가압류가 있고 후행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경우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 총액을 초과하여 압류가 경합되었다면 후행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가사 선행의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은 부활되지 않아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사유신고의 시기

#### 가. 일반적인 경우

사유신고를 할 사정이 발생한 때(예컨대, 최후의 압류명령 등이 송달된 날)에는 공탁관은 그 익일부터 3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225호).

#### 나. 예외적인 경우(행정예규 제1225호)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하여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압류경합이 있고 또한 공탁관이 압류채권자의 지급청구에 응하는 것이 가능한 때라야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급요건이 충족된 때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①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원인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법원의 담보취소결정정보 및 확정증명서)이 제출된 때
- ②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실행요건을 갖춘 때(출급청구권 입증서면이 제출되거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및 현금화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때)
- ③ 상대적 불확지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 중 일방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공탁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이 제출된 때

#### (관련판례)

민집 160조에 의하여 배당할 금액이 공탁된 후에는 그 배당액의 지급절차는 공탁금의 출급절차에 의하는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기한 것이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채권자가 배당금 지급청권을 행사하는 수단으로서 그에 관하여 집행법원이 발급한 공탁금 지급위탁서가 공탁공무원에게 접수됨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의 제3채권자가 채권자의 배당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효력은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행사 수단인 위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09. 7. 23. 2009다39363)..

#### 5. 사유신고를 할 법원

경합된 압류명령이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발하여진 경우에는 공탁관은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가압류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6. 사유신고에 첨부할 서면

- ① 공탁관은 사유신고서 2통을 작성하여 그 1통의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사본과 경합된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관할 집행법원에 보내고 다른 1통은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공탁규칙 제58조 제1항).
- ② 공탁관은 재공탁을 하지 않고 공탁을 그대로 지속하면서 사유신고하기 때문에 일반의 제3채무자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한편,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공탁관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사유신고를 할 수도 있다.

#### 7. 사유신고 이후의 절차

① 배당절차는 사유신고가 있는 후에야 사실상 개시될 수 있고(민집 제252조 제2호에 의하면, 제3채무자의 공탁이 있을 때 배당절차가 개시됨), 사유신고에 의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가 확정된다.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으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이후에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더라도 추가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③ 공탁관이 공탁사유신고에 따른 배당요구종기가 도래된 이후에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도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951호 참조).

**(관련판례)**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을 유지한 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지급하거나,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공탁금 출급을 신청한 압류·추심 채권자 1인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채권자 중 1인으로서 공탁금출급청구를 한 채권자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한 것이 적법한 사무처리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탁관의 사무처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판 2002. 8. 27. 2001다73107).

## chapter 07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sup>12)</sup>

### 1. 의의

- ①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란 공탁금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이다.
-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탁유가증권 및 공탁물품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관한 청구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2 소멸시효의 기산일

#### 가. 변제공탁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금회수청구권은 "공탁일"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통지서 수령일"로부터 기산함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에는 기산일에 주의를 요한다.

- ① 공탁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공탁자와 피공탁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금출급 및 회수청구권은 모두 "분쟁이 해결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 (공탁통지서 수령일)"부터 기산한다.
- ③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가진 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된다.
- ④ 공탁에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때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공탁이 정지조건 또는 시기부 공탁인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된 때 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관련선례)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공탁관은 공탁규칙 제64조에 의하여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을 반환받아 공탁절차를 회복하여야 하고, 그 후 공탁자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공탁선례 제2-364호, 행정예규 제948호).

#### 나. 재판상 담보공탁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기산일은 담보제공자가 본안 소송(화해 인낙, 포기 포함)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하고, 본안소송 종국 전에 담보취소결재판(결정)을 집

12)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2025년, 382-392면 내용

행하지 않았거나 집행불능인 경우에는 "담보취소결정확정일"로부터, 재판(결정) 전에 그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 다. 집행공탁

배당 기타 관공서의 결정에 의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 교부일"로부터 기산하고,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민집 160조 2항482에 따라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 라. 기타

- ① 변제공탁, 재판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사건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공탁원인이 소멸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원인이 소멸된 때"로부터 기산하고, 착오공탁의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로부터 기산한다.
- ③ 공탁유가증권의 상환으로 인하여 그 상환금·이자가 대공탁·부속공탁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대공탁·부속공탁일로부터 기산하고,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이 없다.

#### 마. 공탁금 이자

일반적으로 공탁금 이자는 원금과 같이 지급되어 이자청구권 자체의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 바. 지급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

공탁금 지급청구가 이유 있다 하여 지급인가된 동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인가한 날로부터 10년).

### 3.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 해당 여부 등

#### 가.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있는 사유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시효기간 중에 공탁당사자 등 지급청구권자에게 공탁사실증명서를 교부한 경우</li><li>②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 대하여 공탁사건의 완결 여부의 문의서를 발송한 경우</li><li>③ 공탁금 지급청구에 대해 첨부서면의 불비를 이유로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li><li>④ 공탁관이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를 구두로 답한 경우</li><li>⑤ 공탁의 확인을 목적으로 공탁관계서류를 열람시킨 경우</li><li>⑥ 일괄 공탁한 공탁금의 일부에 대해 출급 또는 회수청구를 인가하였다면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도 시효가 중단된다.</li><li>⑦ 불확지공탁을 하였다가 공탁물을 수령할 자를 지정하거나 공탁원인사실을 정정하는 공탁서 정정신청을 인가한 경우,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li></ol> |
|--|

⑧ 행정예규 제1203호(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 공탁자·피공탁자에게 송달된 경우

#### 나. 소멸시효 진행의 중단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

- ① 변제공탁에 대해 피공탁자로부터 제출된 수락서를 공탁관이 받았다 해도 그것만으로 출급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 ②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은 피압류채권, 즉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대판 2018.5.30, 2016다216786). 다만 채권자가 확정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써의 효력은 있다(대판 2003.5.13, 2003다16238).
- ③ 피공탁자가 수인인 경우 그 1인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는 다른 출급청구권자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시효중단은 출급청구권의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 ⑤ 공탁관이 피공탁자의 요구에 대해 지급절차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시효의 중단사유로 되지 않는다.

#### 다. 시효중단 시 공탁관의 처리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 등에 시효중단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 4. 시효이익의 포기 간주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공탁사실증명서의 교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를 교부해서는 아니 되나, 착오로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한다.

#### 5. 공탁금의 편익 시효처리절차 등

##### 가. 시효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변제공탁을 한 후 10년을 경과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 또는 회수청구가 있을 경우 공탁서, 지급청구서, 그 밖의 첨부서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사항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를 인가하여도 무방하다.

##### 나. 편익적 국고귀속조치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미제 공탁사건의 공탁금은 편익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공탁규칙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되, 그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금 지급청구를 한 경우에는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다.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 ①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에도 그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된다.
- ②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 공탁관은 그 시효완성을 이유로 유가증권 보관은행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시효소멸된 해당 유가증권의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보관은행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을 회수한 경우 공탁관은 공탁서 및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전산시스템('사건메모란 등)에 이를 입력하고, 그 사건은 완결된 것으로 처리하며, 해당 유가증권은 공탁기록에 편철하여 5년간 공탁기록과 같이 보관한다.
- ④ 위 ③의 절차를 마친 경우에도 폐기 전에는 해당 공탁유가증권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인정된다.

### 6.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에 대한 국고귀속절차

#### 가. 소멸시효 조사

- ① 공탁관은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취하기 전에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및 그 시기 등을 법원, 그 밖의 관공서에 조회를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금은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도 이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련선례)

1.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예정인 공탁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행정예규 제948호에 따라 공탁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여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국고귀속조치를 취할 예정인 공탁사건도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1월에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다음해 1월에 국고귀속조치를 하고 있다.
2. 국고귀속예정 공탁사건이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공탁사건은 공탁금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공탁관은 인가하여서는 안 되며, 공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전산 입력되어 있는 공탁사건은 경매와 관련된 집행공탁사건도 대법원 홈페이지 '공탁사건 검색'에서 검색할 수 있다(공탁선례 제201001-2호)

#### 나. 공탁금 국고귀속조서의 송부

- ① 공탁관은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이나 이자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한 다음 공탁금 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20일 까지 이를 해당 법원의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보낸다. 출납공무원이 위 조서를 받은 때에는 1월 31일까지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 ② 공탁관은 위 경우 이외의 사유로 국고귀속되는 공탁원금 또는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탁금 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출납공무원은 지체 없이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 7.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절차

① 공탁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관이 착오로 공탁금의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보아 공탁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반대급부의 조건이 있는 변제공탁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함에도 착오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국고귀속된 후 이를 발견한 경우, 공탁관은 규칙 64조에 의하여 착오로 국고귀속된 공탁금을 반환받아 공탁절차를 회복시켜야 한다.

## 8. 소멸시효 완성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

### 가. 목적

① 공탁금 출급청구 안내문 발송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출급되지 아니한 변제공탁, 집행공탁, 재판상 담보공탁, 그 밖의 공탁사건의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 행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전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이에 관해 2019. 6. 4. 법 9조 4항 및 규칙 60조의2(소멸시효 완성 전 안내) 및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1203호)이 제정되어 공탁소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안내문 발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탁소에서 발송하던 안내문 발송 업무를 2020년부터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 나. 담당 및 안내방법

① 안내에 관한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서 처리하며 사법등기심의관이 담당한다.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대한 안내는 1. 우편발송, 2. 앱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전자적 안내"라 한다)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는 공공기관·전기통신사업자 등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아래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성명(상호, 명칭)
2.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3.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주소(본점, 주사무소)
4. 공탁금 출급·회수권자의 전화번호

② 또한 이러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고유식별번호,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고,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안내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규칙 60조의2)

### 다. 우편안내

#### 1) 우편안내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4년, 6년 및 8년 전인 해에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원 이상인 ①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②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③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④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절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사건 또는 대상자의 주소가 불명인 사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안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우편안내 절차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에 관한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 발송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변경 여부 등을 전산시스템 등으로 조회하고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로 발송한다. 안내문 양식은 별지 1~5에 마련되어 있다.

## 3) 안내문 발송사건의 처리방법

- ①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정보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안내문이 송달된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고 송달된 날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다만,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이와 달리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안내문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국고귀속 처리한다.
- ③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은 사건은 안내문의 송달 여부와 관계없이 공탁일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편의적 국고귀속 처리한다.

## 라. 전자적 안내

### 1) 전자적 안내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직전 연도 말 기준 만 2년 전부터 만 8년 전까지 수리된 공탁사건 중 잔액이 10만 원 이상인 ① 변제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② 집행공탁사건의 피공탁자 ③ 재판상 보증공탁사건의 공탁자 ④ 개인회생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한 공탁사건의 피공탁자를 안내 대상으로 한다. 공탁일로부터 만 14년이 경과한 사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도 전자적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 2) 전자적 안내 절차

- ① 전자적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한다.
- ② 전자적 안내 대상사건 중 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사건은 행정자치부 등 주민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안내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위 ① 절차를 진행한다.
- ③ 위 ①, ②에 따라 안내 대상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회신받은 경우 ㉠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 성명 ㉡ 관할 공탁소·공탁종류·공탁사건번호 ㉢ 공탁금액(잔액) ㉣ 공탁유형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절차 ㉤ 그 밖에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적 안내를 한다.

### (관련선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자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공탁사

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안내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 수신내역을 소명한 경우, 공탁관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공탁선례 202406-1)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자가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공탁 사건에 대하여 전자적으로 안내한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안내' 수신내역을 출력하여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소명한 경우 공탁관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출급·회수청구를 인가할 수 있다.

**마. 추가적 안내 대상**

공탁종류, 잔액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안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공탁관이 장기미제 공탁 사건 등 관할 공탁사건에 대하여 안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편안내 및 전자적 안내 대상 사건 및 대상자 이외의 사건 및 대상자에 대하여도 우편안내 또는 전자적 안내를 할 수 있다.

**바. 보고**

매년 1월 31일까지 ①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건수 및 도달 건수, ② 직전 연도의 안내문 발송 후 공탁금을 출급·회수한 사건 수 및 그 지급액, ③ 그 밖에 안내문 발송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사. 유의사항**

안내문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대신하여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시의 첨부서류가 될 수 없다.

## chapter 08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sup>13)</sup>

### 01절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

#### 1. 의의

공탁소에 대한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과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통칭하여 공탁물지급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공탁물 지급청구권은 공탁당사자에게 귀속하는 일종의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지며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고, 양도·질권설정 등의 임의처분은 물론 압류·가압류·가처분·전부·추심명령·체납처분 등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 2.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공탁관은 공탁을 수락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이나 공탁의 유효를 신고한 확정판결의 등본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권에 관한 가처분명령서, 가압류명령서, 전부 또는 추심명령서, 압류취소명령서 그 밖의 이전 또는 처분제한의 서면을 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해당내용을 해당기록표지에 적은 다음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44조).

②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 규칙 44조 소정의 서면이 제출된 경우, 공탁관은 공탁기록 표지를 출력한 후 제출된 서면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별도의 공탁기록으로 관리·보존하고 전산시스템에 그 뜻을 입력하여야 한다(행정예규 제1282호).

③ 공탁관의 공탁사유신고 또는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에 따라 개시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수령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 또는 민사집행법 제160조(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 기한이 붙어 있는 때,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등의 이유로 공탁한 배당액)에 따라 공탁한 배당금 수령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그 서면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기명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배당금 수령채권이 압류된 사실 등을 입력한 후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집행법원에 보내야 한다(행정예규 제951호).

### 02절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상호관계

####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동일한 공탁물에 대한 두 개의 권리인 점에서 각각의 청구자에게 속하는 독립·별개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방에 대한 양도, 질권설정, 압류 그 밖의 처분은 타방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일방의 양도 후에도 타방에 대한 양도·압류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즉, 두 청구권은 별개의 독립된 청구권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공탁물은 하나이므로 출급 또는 회수의 어느 일방의 청구권이 일단 행

13)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2025년, 345-374면 내용

사되어 공탁물이 지급됨으로써 공탁관계가 종료되면 다른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된다. 이 점에서 두 청구권은 전혀 별개의 청구권은 아니고 상호 관련성이 있다.

## 2. 양 권리의 우선적 효력

### 가. 재판상 담보공탁의 우선성

재판상 담보공탁은 담보권리자가 받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 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공탁자는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여 공탁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담보취소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공탁물 회수청구권보다 우선한다. 따라서 재판상 담보공탁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양도·전부 등이 있더라도 담보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양수인 등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으며, 피공탁자는 여전히 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나. 항고보증공탁(집행공탁)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그 항고가 기각된 경우에 배당할 금액에 포함되어 공탁자는 그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경매법원이 배당재단에 귀속된 공탁금을 배당채권자에게 배당하였을 때에는 배당채권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기 전에 항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는 집행채권자에게 그 회수청구권을 이전하게 하는 효과가 발생할 뿐 공탁금 출급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받은 공탁관으로서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대결 1991.11.18, 91마501).

### 다. 변제공탁 출급청구권의 비우선성

① 변제공탁 이외의 공탁은 착오나 공탁무효, 공탁원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회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민법 제489조의 회수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공탁자는 자유롭게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수청구권과 출급청구권은 우열이 없어 먼저 행사한 쪽이 우선한다.

② 다만, 수용보상금 공탁은 토지보상법 제42조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탁이 아니므로 착오나 공탁무효 또는 공탁원인이 소멸되지 않은 한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라. 그 밖의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보관공탁 등과 같이 회수청구권만 있고 출급청구권이 없는 공탁도 있다. 특히 가압류해방공탁은 가압류의 효력이 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존속하므로 공탁자는 가압류가 취하나 취소 등으로 그 효력이 소멸될 때까지는 회수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도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자유로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서로 경합하게 되어 서로 간에 우열은 없다.

#### 마. 선후결정의 기준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 행사의 선후관계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공탁관의 지급 인가의 전후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요건이 충족된 지급청구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선후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03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유형

#### 1. 양도

##### 가. 의의

- ① 채권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채권의 귀속주체를 변경시키는 처분행위이다.
- ② 공탁물 지급청구권도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귀속하는 일종의 지명채권의 성질을 가지며 일신전속권이 아니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거나 양도금지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양도금지특약)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가지며,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 나. 양도통지

- ①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위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② 공탁관이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서면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하며 그 내용을 해당 기록표지에 적은 다음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기관인 공탁소에서 사문서인 양도통지서에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여도 공탁관의 접수시부터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하여야 하며, 양수인 자신이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 다만 양수인은 양도인의 사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으로써 통지할 수는 있을 것이다. 양도통지서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양도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공탁번호, 공탁물의 표시,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주소 등을 기재한다.
- ④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양수인은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법원 공탁관)에 송부하거나 제시하고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다(공탁선례 제2-339호).

#### (관련선례)

피공탁자의 상속인 중의 1인이 다른 상속인들 중 일부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된 경우에는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외에 양도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법원 공탁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탁금 출급청
--

구권을 양도받은 사실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수령권한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것만으로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은 갖추었으나 양도인의 적법한 통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없다(공탁선례 제2-338호).

#### 다. 양수인의 지급청구

- ① 양수인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 및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반대급부가 붙어 있는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그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을 증명하여야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양도통지서에 공탁금뿐만 아니라 그 이자까지 양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 전후의 모든 이자가 양수인에게 귀속되나, 이자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통지서가 도달된 날 이후의 이자만 양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날인된 양도인의 인영에 대하여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인은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 한편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청구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증서를 공중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없이도 양수인은 공탁금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 라. 양도통지서 도달의 선후

양도통지서나 전부명령의 송달을 받은 때에는 접수연월일, 시, 분을 기재하여 공탁관이 기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수의 우편물을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공탁관이 실제로 동시도달된 통지서를 뜯어 본 순서로 접수시분을 기재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렇게 동시에 2개 이상의 통지가 있을 경우 접수순위는 동일하여 선후관계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공탁관은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가 확정판결 등으로 먼저 도달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 마. 양도통지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관에게 도달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489조 1항에 의한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 바. 양도계약의 해제·취소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통지를 양수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대판 1993.8.27. 93다17379 참조), 양도인이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양도인이 다시 일방적으로 양도계약을 해제한 뜻의 통지를 하여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2. 질권설정

### 가. 의의

① 채권에 대한 질권이란 채권자(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담보로써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채권에 질권을 설정받고, 그 채권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공탁물 지급청구권도 지명채권이므로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질권설정자인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 지급청구권을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나. 질권 설정 절차

① 질권의 설정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나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공탁물회수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위 채권증서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349조 제1항). 따라서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도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질권설정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제3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다만 공탁관이 질권설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양도통지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통지서에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무소가 사문서인 질권설정통지서에 기입한 일자이므로 확정일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확정일자 없는 질권설정의 통지라도 공탁관의 접수시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다. 질권의 실행

##### 1) 공탁물의 직접청구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공탁물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여 자기 명의로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질권자는 공탁물이 금전인 때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공탁물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유가증권의 인도를 받아 집행관에게 제출하면 집행관이 강제집행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경매하고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질권자가 공탁물의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채권증서에 준하여 교부받은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강제집행

① 질권자는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 질권자는 집행권원 없이 질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질권의 목적인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얻어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강제집행에 의하여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할 경우에는 공탁서 또는 공탁통지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3. 강제집행

#### 가. 압류명령

##### 1) 의의

① 공탁금지급청구권도 일반 지명채권과 마찬가지로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 채권자가 종국적으로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한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등을 얻어야 하는데,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은 보통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피압류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 압류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표시는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가 되어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면 충분하다. 피압류채권의 선택적 기재는 제3채무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고 집행의 명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신청할 경우에는 집행의 대상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인지 공탁금회수청구권인지 특정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를 명확히 모르는 경우 실무상 피압류채권의 표시를 "공탁금 지급청구권",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으로 기재한 채 압류명령을 발령하기도 한다.

④ 공탁당사자, 공탁원인, 공탁일자 등에 의하여 특정할 수 있다. 이로써 특정이 가능하면 반드시 공탁번호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일한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여러 개의 공탁금이 한 공탁소에 별개의 사건번호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탁번호까지 적어야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특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여러 개의 공탁금을 압류하는 경우 각 공탁사건별로 압류할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되어 공탁된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한 사람의 채권자가 공탁사건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집행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사건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법원에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할 것이다.

#### (관련판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집 225조, 291조),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며,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

아 한다(대판 2014. 5. 16. 2013다52547).

**2) 공탁유가증권 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

공탁유가증권 지급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한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곧바로 인도청구권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여 유체동산의 소유와 점유를 채무자에게 귀속시킨 다음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므로(대판 1984. 8 25. 93다 42757) 공탁유가증권지급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하여 공탁유가증권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압류채권자로부터 집행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공탁관에게 공탁유가증권의 지급청구를 하고 공탁관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인도를 받으면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현금화한 후 현금화된 금전을 제출하면 법원은 배당을 실시한다. 인도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3) 압류명령의 송달**

①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9조를 준용하여 소관청이 아니라 집행법원을 기준으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인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한다.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명령에서 제3채무자 부분에 기재되는 소관부서는 편의상 국가 내부에서 피압류채권을 소관하는 부서를 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것에 의하여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압류명령이 직접 공탁관에게 송달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선례가 있으나, 실무상은 재판예규(재민 81-15, 재일 903-9)에 따라 검찰청을 통하여 압류명령이 송달되고 있다. 통상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검찰청이 그 압류명령서 등의 접수연월일, 시, 분을 전연통신으로 소관 공탁관에게 전화로 미리 알려주고 압류명령서 사본을 팩시밀리로 보낸 후 나중에 압류명령서 정본을 우편으로 송부하고 있다. 전연통신으로 압류사실을 통지받은 공탁관은 그 접수연월일, 시, 분을 공탁기록 표지에 기록한 후 원장에 등록한 후 검찰청으로부터 송부된 압류명령서 정본 등을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있다. 그런데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기준은 실제로 공탁관이 전연통신을 받거나 압류명령서를 송부받은 때가 아니라 압류명령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이므로, 현실적으로 그 시간적 간격 사이에 압류사실을 모르는 공탁관이 지급 인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최소한 공탁관의 입장으로서 검찰청으로부터 전연통신 등으로 압류사실을 통지받으면, 지체하지 않고 원장에 전연통신 내역을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4) 압류명령의 효력**

- ①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으로 집행채무자인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추심 기타 처분이 금지되며,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공탁금의 지급이 금지된다.
- ② 본래의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 경우, 예를 들면, 사용자가 퇴직한 직원의 퇴직금을 민법 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수령거부 또는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변제공탁한 경우 그 공

탁금은 임금채권의 성질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공탁선례 2-89). 따라서 압류금지채권인 본래의 채권과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동일한 채권이기 때문에 그 경우의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이다(공탁선례 2-277).

③ 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공탁원금만을 명시하여 압류명령이 발해진 때에도 원칙적으로 압류의 효력발생 이후의 공탁금의 이자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나,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원본채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있으므로 압류명령에 목적채권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관련판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집 246조 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96. 12. 24. 96마1302, 1303, 1999. 10. 6. 99마4857 등). 채무자가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입금된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다음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집행법원으로서 위와 같은 서면에 즉시항고나 이의신청 등의 다른 제목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민집 246조 2항에 정한 압류명령의 취소 신청으로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대결 2008 12. 122008마1774).

**나. 전부명령**

**1) 의의**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권도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채권이 이전되면 그 현실적인 추심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채권은 그 권면액만큼 소멸되어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은 가져오므로,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 있고 추심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만을 취득하는 추심명령과는 구별된다.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피전부적격**

① 전부명령의 대상인 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므로 금전채권이 아닌 공탁유가증권 지급청구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할 수 없다(민집 245조 참고).

②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권면액(채권의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금전의 확정된 일정액)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상 논란이 있다. 채권은 반드시 권면액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나, 판례와 실무는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 반대급부에 걸린 채권에 관하여도 대체로 전부명령을 허용하고 있다.

**가) 변제공탁의 경우**

① 반대급부 조건이 붙지 않는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은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피전부적격이 있다. 또한 반대급부 조건이 붙은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도 반대급부이행을 증명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피공탁자)의 반대급부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의 위험을 각오하고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민집 246조 1항 5호 소정의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한 때에는 근로자의 출급청구권도 압류금지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그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 할 것이다.

② 공탁자는 민법 489조 1항의 회수청구권 소멸사유가 없는 한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으므로 그 경우의 회수청구권은 피전부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담보공탁의 경우

①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회수청구권은 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로 조건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행사에 기한 전부명령 소급소멸의 위험을 각오하고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으므로 회수청구권의 피전부적격을 인정하고 있다.

②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출급청구권은 담보권자의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권면액이 미확정이므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문제삼지 않고 피전부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 집행공탁의 경우

① 집행법원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집 160조 1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집행공탁의 출급청구권은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피전부적격이 있다. 다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제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② 가압류해방공탁은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은 없고 압류의 효력만 있기 때문에 공탁관은 가압류와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일 경우에는 사유신고를 하지 않으며,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한다.

#### 3) 전부명령의 효력

① 전부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② 전부명령의 기본적인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로서의 이전(권리이전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이다.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시, 즉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에는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한 때,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발생하지만, 그 화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이 점은 피압류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전부명령은 실질적으로 피압류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킴으로써 그에게 독점적인 만

족을 주는 제도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다.

④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압류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채권의 각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더라도 총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는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발령된 전부명령도 유효하다.

⑤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가압류가 집행된 후 가압류신청취하서가 가압류발령법원에 접수되었고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가압류취하통지서가 도달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도달한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이 문제된다. 가압류신청이 취하되면 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하지만,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따라서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공탁관)에 도달하기 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도달한 경우 그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고, 한 번 무효로 된 전부명령은 일단 경합된 가압류 및 압류가 그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여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 10. 12. 2000다19373 참고).

⑥ 채권에 대한 담보권(질권 등)의 실행이나 물상대위권(민법 812조 등)의 행사의 경우에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압류와 일반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에 기초한 압류와의 사이에도 형식면에서는 경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규정들은 경합하는 집행채권자들이 평등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담보권리자가 민법 370조, 34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경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4. 2. 13. 2002다72712 참조).

판례는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인 담보권리자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이상 그에 선행하는 일반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2004. 11. 26. 2003다19183).

⑦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공탁금 지급청구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피전부채권(공탁금 지급청구권)이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합산액보다 적으면 피전부채권 전액이 이전되지만, 피전부채권이합산액보다 많으면 그 합산액을 한도로 이전된다.

⑧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는 피전부채권(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존재하는 한 종전의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게 부담했던 것과 동일한 채무를 전부채권자에게 부담하게 되므로 전부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⑨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 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령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강제집행종료의 효력을 가지므로 형식적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고, 따라서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공탁관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처분은 정당하다(대결 1983. 9. 25. 82마793). 그리고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전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도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공탁선례 2-89).

⑩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전부채권자는 원래의 채권자인 집행채무자에 갈음하여 그의 채권을 취득하며 자기의 채권으로 이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추심하거나 양도·포기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전부채권자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갈음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얻은 전부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권도 있다. 다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전부채권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다.

### (관련판례)

[1]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에 있어서 집행장애사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그 존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집행개시 전부터 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하며, 만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이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별개로서 그 적부는 각각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압류가 집행장애사유가 되는 것은 집행법원이 압류 등의 효력에 반하여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집행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그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행하여지지 않은 이상 집행채권의 채권자는 여전히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채권압류명령은 비록 강제집행절차에 나간 것이기는 하나 채권전부명령과는 달리 집행채권의 환가나 만족적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보전적처분으로서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명령에는 집행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0마522).

### 다. 추심명령

①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를 요하지 않고 집행채무자에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공탁물지급청구권이 추심명령의 대상이 됨은 명백하다.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서 채권이 이전되면 현실적인 추심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채권은 권면액만큼 소멸하지만, 추심명령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로 남아있긴 하지만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는 달리 압류의 경합이 있어도 할 수 있다.

②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압류 및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추심권능은 그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무효이고, 추심권능을 소송상 행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금원을 지급받는 것 역시 추심권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판결에 기하여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민집 291조, 248조 1항)이 있는 후 가압류채무자(A)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민집 291조, 248조 1항 공탁은 민집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게 되어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비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되고(대판 2019. 1. 31. 2015다26009 참조), 이러한 B의 배당금수령청구권은 피압류채권으로서 적격을 갖는다.

④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으로 추심채권자는 집행채무자인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신하여 자기 이름으로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하여 추심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는 추심명령정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확정증명서나 공탁서·공탁통지서는 필요 없다.

⑤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때에는 압류 전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고, 그 이자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 전부명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⑥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체납처분(강제징수 포함)에 의한 압류도 민집 236조 2항의 '다른 압류'에 해당하므로,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경우에 위 조항에 따라 공탁의무가 발생하므로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압류 등의 경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을 완료한 채권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다른 경합채권자는 추심채권자를 상대로 추심한 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관련판례)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한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은 후 공탁 및 사유신고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실제 추심금을 공탁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관한 법정지연손해금 상당의 금원도 공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5. 7. 28. 2004다8753).

#### (관련판례)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면 피압류채권은 소멸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민집 227조 8항, 291조),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번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가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당 채권추심사건에 관한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대판 2008. 11. 27. 2008다59391).

**(관련선례)**

1. 주심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당해 추심권자로서의 지위도 집행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필요는 없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집행채권의 양수인이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압류 및 추심명령)를 속행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민집규 28조 참조).
2. 따라서 집행채권의 양수인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증명서면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정보과 그 송달증명서, 승계집행문부여사실증명서를 각 첨부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것이다(공탁선례 2-835).

**4. 보전처분**

**가. 가압류**

- ① 채권가압류명령이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가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가 제3채무자(공탁관)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공탁물지급청구권)에 관해서 제3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금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한다.
- ② 가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공탁물지급청구권이 가압류되면 가압류채무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는 공탁물의 추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금지되고, 공탁관도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공탁물 지급이 금지된다.

**나. 가처분**

- ①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으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공탁금 지급청구권 등)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계쟁물)이 처분·멸실되는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툼의 대상의 현상을 동결시키는 보전처분이다. 금전채

권에 관하여는 가압류만이 허용되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가처분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금전채권의 귀속을 가처분 채권자가 다투면서 가처분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채권의 처분금지·변제수령금지등의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컨대, 피공탁자 이 출급청구권을 을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통지서가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도달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 양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양수인 을은 양도인 갑을 가처분채무자로 하고 국가(소관 공탁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출급청구권의 추심 등을 금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②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명령은 제3채무자인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이 생기며, 그 이후에는 가처분채무자인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지급청구나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공탁관의 공탁물지급이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된 후 그 본안소송에서 그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피공탁자는 그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관련판례)**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4. 6. 26 2012다116260).

**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가. 개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라 함은 납세자가 임의로 납세의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해 납세자의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것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로 두기위한 강제행위를 말한다. 국제나 지방세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의 특별법에 의해 건강보험료 등의 징수에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다.

**나. 효력**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탁물지급청구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일반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와 마찬가지로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체납자(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물의 지급을 금지시키고, 체납자에게는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처분 및 공탁금 수령을 금지시키는 효력이 있음은 물론,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자에 대위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②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를 대위한다. 여기서 대위라 함은 세무서장이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제3채무자인 공탁관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국세징수법 31조 2항 지방세징수법 33조 2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확정 전의 압류로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가 확정되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대판 1997. 4. 22. 95다41611).

③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있어서는 압류경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압류채권의 일부를 특정하여 압류한 경우 그 특정한 채권 부분에 한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며, 그 후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있고 그 압류된 금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의 총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에 전부명령이 발령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미치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 또한 체납처분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법정과실에도 미치므로 체납처분압류의 통지를 받은 날 이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다. 타처분과의 관계

##### 1) 선행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

금전채권 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집 248조 1항 및 291조에 따라 집행공탁한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없는데, 위의 채권가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피압류채권을 추심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배분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가압류채권자는 그 절차에서 피보전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을 받을 수 있다(대판 2015.7., 9 2013다60982. 국세징수법 76조 1항 6호 참고).

##### 2) 선행가처분과 체납처분압류의 효력

선행 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체납처분압류에 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이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 3)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선후 불문)

①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피압류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후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집 229조 5

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되므로 그러한 전부명령은 압류가 중첩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이지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의 전액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유효하다(대판 2015. 8. 21. 2018다2083).

**라. 공탁물지급절차**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공탁법이 정하는 첨부서류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교부를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가 공탁물의출급 또는 회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 0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 1. 양도와 타처분과의 관계

① 공탁물 지급청구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 간의 우연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 이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양수인과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보의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양도통지, (가)압류 등이 공탁관에게 동시에 도달되어 그들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양수인,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인 공탁관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탁금 전액에 대하여 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정구를 하여 적법하게 이를 지급받을 수 있고, 공탁관으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공탁금 전액을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공탁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 간에는 법률상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대판(전) 1994. 4. 26. 93다24223 참조].

그러나 이 경우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공탁관은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공탁관은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지급청구권 증명서면(확정판결 등)을 첨부하여 지급청구하는 경우에만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보가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대판(전) 1994. 4. 26. 93다24228].

### 가. 양도와 양도

유효한 양도통지가 접수된 이후에 다시 송달된 이중 양도는 효력이 없다. 동일한 공탁물지급청구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그 양도통지서를 공탁관이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정당한 양수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청구한 자에 한하여 지급인가를 하여야 한다.

### 나. 양도와 압류 및 전부명령

① 양도 후에 압류·전부가 된 경우에는 그 압류·전부는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행해진 무효인 것으로 양도가 유효하다.

②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해당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제권양도통지가 그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정보와 함께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채권양수인과 전부채권자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2. 7. 26. 2001다68839).

#### 다. 양도와 압류 및 추심명령

선행하는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면 후행하는 압류·추심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 라. 양도와 가압류

① 채권이 양도되고 가압류도 된 경우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보의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국가(소관 공탁관)에 도달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그 후에 압류나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이 전부 양도되었음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후행 압류권자 등은 더 이상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대만 2013. 4. 26. 2009다 89436 참고)..

### 2 질권 설정과 타처분과의 관계

#### 가. 질권 설정과 질권설정

수 개의 질권이 경합했을 그 우열은 대항요건 구비의 선후에 의한다.

#### 나. 질권 설정과 압류및 전부명령

입질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후일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면 질권자의 채권액을 제한 잔여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3 가압류와 타처분과의 관계

#### 가. 가압류와 가압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이종의 가압류가 가능하며 양 가압류 간에는 우열이 없다(원칙). 이후 일방이 본집행으로 이행되면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하게 된다.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민집 160조의 집행공탁을 하여야 한다(원칙).

#### 나. 가압류와 압류

공탁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을 하게된다. 다만 가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민집 160조의 집행공탁을 하여야 한다(원칙).

#### 다. 가압류와 전부명령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가압류된 지급청구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은 유효하나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일 가압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 라. 가압류와 추심명령

일반적으로 보면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해서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추심명령은 유효하므로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가압류가 있으므로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없이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가압류와 압류 추심명령의 경합이 있으면 공탁관은 반드시 사유신고를 해야 하고, 추심채권자에게 공탁금 전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

#### 4. 압류와 타처분과의 관계

##### 가. 압류와 가압류

압류된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기 전까지는 제3자는 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나. 압류와 압류

압류된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이중의 압류도 허용된다.

##### 다. 압류와 전부명령

압류된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압류명령까지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결국 두 개의 압류가 경합하게 된다.

##### 라. 압류와 추심명령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 때에는 공탁관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반드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225호 참조).

##### 마.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① 체납처분의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가능하다. 그러나 전부명령은 그렇지 않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민집 229조 5항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대판 2015. 8. 27. 2013다203833).

②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및 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선후 불문),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행정예규 1225호 참조).

③ 또한 민사집행법상의 채권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국세징수법 59조, 지방세징수법 66조), 또는 교부청구를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집행법원에 송달함으로써 참가압류를 할 수도 있다(국세징수법 61조 지방세징수법 67조). 이러한 교부청구나 참가압류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대판 1884. 3. 22. 93다19276).

④ 체납처분에 의하여 선행 압류가 되어 있는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체납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방식으로 선행의 체납처분 절차에 참가할 수 있을뿐이고, 이 중으로 압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의 효력밖에는 없다(대판 2008. 10. 23. 2008다47732 참고).

#### 바. 압류와 양도

압류 후의 채권양도는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 무효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해서는 유효하고, 압류가 해제되면 전면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사. 압류와 가처분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 동일채권에 타인이 다시 처분금지가처분을 했다 하여도 선행 압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압류채권자가 얻은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5. 전부명령과 타처분과의 관계

#### 가. 전부명령과 전부명령

① 제1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된 다음 제2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고 그 후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전부명령이 우선하여 제2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게 된다. 채무변제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공탁관이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압류가 경합된 것으로 보고 법원에 사유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②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해당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2 7 26. 2001다68839).

#### 나. 전부 명령과 양도

전부명령 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는 전부명령이 우선한다.

## 01절 보관공탁

### 1. 의의

보관공탁이란 목적물 그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이다.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은 궁극적으로 청구권의 만족을 위한 제도이나, 보관공탁은 그와 같은 목적이 없고 단순히 목적물 자체의 보관을 위한 공탁으로서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없고, 회수청구권만 존재한다. 순수한 보관만을 목적으로 하는 보관공탁을 형식적 공탁이라 하고, 변제공탁이나 담보공탁과 같이 보관 이상의 법률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는 공탁을 실질적 공탁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 2. 보관공탁의 종류

#### 가. 상법 제491조 제4항에 의한 보관공탁

① 사채권자집회는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및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상법 제490조). 이 사채권자집회는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가 소집해야 하고(상법 제491조 제1항), 처음부터 사채권자가 직접 소집할 수는 없다.

② 사채의 종류별로 해당 종류의 사채 총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를 가진 사채권자는 회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사채를 발행한 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에 제출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소집청구를 받은 회사가 그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채권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비로소 자신이 소집을 할 수 있게 된다(상법 제491조 제2항·제3항).

③ 하지만 무기명식 사채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채권자가 위 집회소집권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청구를 할 때에는 그 사채권을 사전에 공탁하여야만 위 ②의 소집청구를 할 수 있다(상법 제491조 제4항). 이 공탁은 사채권자집회 소집청구권자의 확인과 소집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상법 제492조 제2항에 의한 보관공탁

위 사채권자집회에서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해당 종류의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상법 제492조 제1항). 이때에도 무기명식 사채권을 소지한 자는 집회일로부터 1주간 전까지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므로(상법 제492조 제2항)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공탁하여야만 한다. 이는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자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의결권의 개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다.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보관공탁

① 사채는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언제든지 그 가치가 액면가액 이하로 하락될 수 있으므로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경영상태가 고르지 못할 경우 사채의 발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는 원활한 사채발행을 위해 회사의 경영상태와는 관계없이 사채권자가 언제나

14) 법원공무원교육원 공탁실무 2025년, 3274-341면 내용

액면가액의 상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발행하는 사채에 별도의 물상담보를 제공하게 되며, 제공된 물상담보는 별도의 신탁업자가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사채에 물상담보가 있는 것을 담보부사채라고 한다.

② 담보부사채는 물상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는 것 외에는 일반사채(회사의 신용만으로 발행한 사채)와 다를 바 없다.

③ 신탁업자 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는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고(동법 제41조), 위탁회사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집회의 목적과 집회 소집 이유를 적은 문서를 신탁업자 또는 동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채의 총액을 인수한 자에게 제출하여 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④ 그런데 위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절차 또는 그 결의방법이 담보부사채신탁법 또는 위탁회사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의 조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회사, 신탁업자 또는 각 사채권자는 위 결의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법원에 결의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50조 제1항·제2항). 이때 사채권자가 결의무효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소지한 사채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 제3항). 이 공탁은 사채권자집회결의무효청구권자의 확인과 결의무효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⑤ 상법 제491조 제4항과 제492조 제2항에 의한 공탁은 사채권자가 집회소집청구를 회사에 대하여 하기 때문에 회사는 기명식 사채권자를 이미 알고 있어 무기명식 사채권 소지자만 공탁하지만, 담보부사채신탁법 제50조 제3항에 의한 공탁은 결의무효청구를 법원에 대하여 하므로 법원으로서의 청구자가 기명식 사채권 소지자인지, 무기명식 사채권 소지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무기명식 사채권 소지자는 물론이고 기명식 사채권 소지자도 공탁하여야 한다.

#### 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보관공탁

담보부사채를 발행할 때는 위탁회사가 신탁업자에게 물상담보물의 권리를 맡겨야 하므로 신탁업자가 그 권리를 소홀히 한다면 위 물상담보가 소멸하거나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위탁회사, 사채권자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자 또는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84조 제1항). 이때 무기명식 사채권을 소지한 사채권자는 신탁업자에게 사채권을 공탁하여야 한다(동법 제84조 제2항). 이 공탁은 사채권자가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신이 담보물 보관상태 검사권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 3. 공탁의 신청

#### 가. 관할공탁소

①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으며, 공탁의 근거법령에서 관할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 공탁소는 직무관할 및 공탁물에 의한 관할 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 따라서 상법 제492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식 사채권을 공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군법원 공탁소를 제외한 모든 공탁소에서 공탁할 수 있다.

② 다만 1962.1.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된 상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상법 제491조 제4항, 제492조 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의하여야 할 공탁은 공탁관에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여야 하므로 대법원장에게 공탁기관의 지정을 구

하여 그 지정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공탁할 수도 있다(공탁선례 제2-327호). 이와 같이 상법 제491조 제4항, 제492조 제2항에 의한 공탁은 공탁관에게 공탁을 하든지 아니면 대법원장이 정하는 은행 또는 신탁회사에 하든지 공탁자가 임의로 공탁할 공탁소를 정할 수 있다. 지정된 은행 또는 신탁회사는 특별공탁 기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사채총액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중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는 그 채권을 신탁업자에게 공탁하여야만 신탁업자의 담보물 보관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한 공탁은 법원의 공탁소에 공탁하지 아니하고 신탁업자에게 하여야 한다.

#### 나. 신청서 작성 등

① 보관공탁에 관하여는 특별히 따로 서식을 정한 바가 없어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에는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1-1호 서식을,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1-5호 서식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② 피공탁자는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재하지 않는다.

#### 다. 공탁의 목적물

상법상의 공탁 및 담보부사채신탁법 84조 2항의 공탁은 "무기명식 사채권", 담보부사채신탁법 50조 3항의 공탁은 "사채권"으로 법정되어 있다.

#### 4. 공탁물의 지급

① 피공탁자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출급청구란 있을 수 없다.

② 회수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정된 바 없으므로 각 절차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증명하여 사채권자 등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 02절 몰취공탁

### 1. 의의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함으로써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 등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이와 같이 몰취공탁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신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로부터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뜻에서 제공하는 징벌적 성질을 가진 공탁이라 볼 수 있다.

### 2. 종류

#### 가.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

법원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여 이로써 소명에 갈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이는 재판상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담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감수한다는 의미에서 제공하는 제재적 성질을 가진 공탁이다.

#### 나. 상호가등기 공탁

①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은 상호가등기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상호가등기의 신청 또는 예정기간을 연장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정기한 내에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몰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이를 감수한다는 뜻에서 제공하는 제재적 성질을 가진 공탁이다.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②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가 있고,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상법 제22조의2 제3항).

### 3. 공탁의 신청

#### 가. 관할공탁소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 나. 공탁서의 작성

몰취공탁에 관하여는 그 서식이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1235) 1-1호 양식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 다. 공탁당사자

① 몰취공탁에서의 공탁자는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민소 299조 2항) 또는 등기신청인(상업등기법 41 조) 등으로 법정되어 있다. 제3자에 의한 몰취공탁이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지만 몰취공탁은 국가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이 허위인 때, 또는 약정기한 내 등기절차를 불이행한 때

에는 물취의 제재를 당하여도 감수한다는 취지의 공탁이므로, 그 성질상 제3자에 의한 공탁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물취공탁에서의 피공탁자는 국가이므로,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대한민국 또는 “국”이라고 기재한다.

#### 라 공탁의 목적물

소명에 갈음하는 물취공탁의 공탁물은 금전이다. 상호가등기 물취공탁도 금전만이 허용될 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보증보험증권)를 제출할 수는 없다. 상호가등기를 위한 물취공탁은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

### 4. 공탁물의 지급

#### 가. 소명에 갈음하는 물취공탁(민소 299조 2항)

##### 1) 출급(물취로 인한 국고귀속)

① 보증금을 공탁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물취하고, 이러한 물취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소 302조).

② 공탁금의 물취절차를 정한 규정은 없으나 공탁금의 국고귀속 규정인 규칙 62조 3항이 적용된다. 즉 물취결정이 확정되면 수소법원은 보증금물취결정정보와 확정증명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공탁관은 그때마다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며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규칙 62조 3항). 수입징수관은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조사한 후 총색에 대한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 2통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규칙 68조 1항),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중 1통을 철부하여 해당 공탁관에게 하나의 청구서로 한꺼번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규칙 63조 2항 참조). 공탁관이 국고귀속공탁금의 지급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규칙 35조 및 39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규칙 63조 3항 참조),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금액을 해당 수입징수관 앞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규칙 63조 4항 참조).

##### 2) 회수

보증금을 물취할 것이 아닌 때에는 사건완결 후 공탁을 명한 법원은 공탁금환부결정을 하고 공탁자는 공탁금환부결정정보 및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하게 된다.

#### 나. 상호가등기를 위한 물취공탁(상업등기법 41조)

##### 1) 출급(물취로 인한 국고귀속)

①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상업등기법 43조 2호), 이와 같이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또한, 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가등기의 경우에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 ②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 변경에 관련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한때 때,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하고(상업등기법 42조 1항), 위 신청에 의하여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때에도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상업등기법 44조 2항).

②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등기관은 공탁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별지 양식의한 공탁금 국고귀속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공탁관은 등기관으로부터 공탁금국고귀속통지가 있는 때에는 국고귀속되는 공탁금에 관한 규정인 규칙 62조 3항에 따라 그 때마다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하여 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출납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국고귀속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후 총액에 대한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 2통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보내고, 출납공무원은 지체없이 그 .중 1통을 첨부하여 해당 공탁관에게 하나의 청구서로 한꺼번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 2) 회수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은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고 오로지 이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은 등기관으로서 교부받은 “공탁원인소멸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 03절 몰수보전, 추징보전 관련 공탁

### 1. 의의

특정공무원범죄를 통한 불법수익 또는 마약관련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 환수하기 위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몰수보전 및 추징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추징 보전에 관한 규정과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이 될 경우에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공탁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밖에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도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몰수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공탁절차를 살펴보기로 한다.

### 2. 몰수보전공탁

#### 가. 의의

- ① 몰수보전이란 특례법 등에 의하여 몰수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 ② 몰수보전은 민사집행법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제도를 형사절차에 차용한 것으로 그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이라도 몰수의 재판이 있기까지 채권자는 양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고 그 처분행위는 당사자 간에서는 유효하나, 다만 그 후 몰수의 재판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부정된다.

#### 나. 몰수보전된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공무원범죄몰수법 80조 4항)

- ① 채권이 몰수보전되면, 채권자는 채권의 처분과 수령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동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채무자는 민집 248조 1항 및 4항에 따라 몰수보전과 관련된 금전채권액을 공탁할 수 있다(공무원범죄몰수법 30조 4항)
- ② 공탁한 후 공탁자(=채무자)는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한 후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공무원범죄몰수규칙 9조).

#### 다. 몰수보전과 (가)압류가 결합된 경우의 제3채무자의 공탁(공무원범죄몰수법 36조)

- ① 금전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이 된 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보전명령과 관련된 금전채권을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지만, 허위의 압류채권이거나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것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압류채권자가 범인인 때는 예외적으로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강제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고, 검사가 결정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sup>15)</sup>.

② 제3채무자는 이 공탁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아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원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 배당절차를 개시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 라. 몰수보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제한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공무원범죄몰수법 35조 2항).

### 3. 추정보전공탁

#### 가. 의의

① 추정보전이란 법률에 의하여 추징재판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② 몰수대상재산의 몰수가 불가능한 때 또는 재산의 성질, 사용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추징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정보전이 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가 된 경우와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 나. 추정보전해방공탁(공무원범죄몰수법 42조 3항)

① 추정보전명령에는 추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추징보전해방금)을 정하여야 한다(공무원범죄몰수법 42조 8항). 추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의 범위 안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는 것으로 본다(공무원범죄몰수법 46조 1항). 이 경우 국가는 형사사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추징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한편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공무원범죄몰수법 46조 2항). 추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추정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은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을 환부하여야 한다(공무원범죄몰수규칙 24조). 피고인은 공탁된 금액 중 추징금액을 넘는 초과액에 대하여 별도의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받지 않더라도 추징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직접 회수할 수 있다(대결 2010. 4. 29. 2010초기282 참고).

#### (관련판례)

추정보전명령에 따른 검사의 집행명령으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자 피고인은 추징보전해방금 7,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에 따라 가압류집행의 취소로 위 가

15) 공무원범죄몰수법 87조 1항

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이후 1,000만 원만 추징선고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1심 추징금 1,000만 원 선고, 항소기각, 상고기각), 피고인은 공탁된 금액 중 추징금액을 넘는 초과액에 대하여 별도의 추징보전명령의 취소를 받지 않더라도 공탁서 등 일반적인 첨부서류 외에 공탁원인 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회수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추징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결 2010. 4. 29. 2010초기282).

#### 다. 추징보전된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

추징보전명령에 기하여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공무원범죄몰수법 45조). 이러한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추징보전명령을 발한법원 및 검사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공무원범죄몰수규칙 28조). 공탁신청 및 지급에 관한 절차는 몰수보전된 금전채권 채무자의 공탁절차(공무원범죄몰수법 30조 4항)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 0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 관련공탁

### 1. 총설

선박소유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및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후자는 선박책임제한 절차와 관련하여 전자의 규정을 준용(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등)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전자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 2. 공탁절차

① 신청인은 법원의 공탁명령(선박책임제한법 11조 1항)에 따라 공탁지정일에 공탁해야 한다. 이 경우 공탁금액은 상법 규정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하여 사고발생일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선박책임제한법 11조 1항 참조). 공탁을 한 후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선박책임제한법 12조).

② 공탁보증인은 법원의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지정일에 공탁해야 한다(선박책임제한법 14조 1항 참조). 이 경우 공탁금액은 책임한도액에 상당하는 금전과 이에 대한 공탁보증의 허가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기산일부터 공탁지정일까지 연 6%의 비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다(선박책임제한법 14조 1항 참조). 공탁을 한 후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선박책임제한법 14조 4항, 12조). 공탁보증인이 한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선박책임제한법 14조 5항, 12조).

③ 관리인이 법원의 공탁금 지급명령에 따라 공탁보증인으로부터 금전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공탁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관리인의 공탁은 신청인이 공탁자로서 한 공탁으로 본다(선박책임제한법 15조 1항, 5항, 6항).

### 3. 공탁금의 출급 및 회수

#### 가. 공탁금 출급청구

① 책임제한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절차가 취소나 폐지되지 않는 한 제한채권자는 이 법에 따라 공탁된 금전과 이에 대한 이자의 합계액(=기금)에서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다(선박책임제한법 27조 참조).

② 배당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인이 공탁관에게 기금으로부터의 지급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한다(선박책임제한법 69조 3항, 규칙 43조).

#### 나. 공탁금 회수청구

신청인은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공탁금을 회수하거나 그 회수청구권을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제한채권자 모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선박책임제한법 26조).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선박책임제한법 87조).